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7호

2017. 7. 6.(목)

함께
서울



목 차

◆ 고 시

제2017-230호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4
제2017-231호 여의천 하천구역 변경 고시	7
제2017-232호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17
제2017-233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제2017-234호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고시	32
제2017-2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등) 실시계획 고시	48
제2017-236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1
제2017-237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6
제2017-2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가톨릭대학교)	74
제2017-239호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79
제2017-240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90
제2017-24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금천소방서)	91
제2017-242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3
제2017-243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121

◆ 공 고

제2017-149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27
제2017-15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27
제2017-15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한국성서대학교)	134
제2017-1531호 도시·건축 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공고	135
제2017-15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41
제2017-154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43
제2017-1543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144
제2017-1544호 공인 등록 공고	192
제2017-1546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	192
제2017-1547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93

제2017-1549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93
제2017-15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94
제2017-1557호 측량업 등록 공고	195
제2017-1561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96
제2017-156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97
제2017-1571호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00
제2017-1572호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06
제2017-1581호 동대문구 신설동 98-18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13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7-9호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고시	216
--	-----

◆ 구 고 시

제2017-93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218
제2017-51호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중구)	219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배봉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동대문구)	221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노원구)	222
제2017-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은평구)	255
제2017-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인가 고시(마포구)	256
제2017-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항공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구로구)	257
제2017-58호 가산동 148-9,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및 고시(금천구)	259
제2017-5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	260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261

◆ 구 공 고

제2017-50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구)	266
제2017-5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구)	266
제2017-846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주차장)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성북구)	267
제2017-8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268
제2017-6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269

제2017-9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관악구)	271
제2017-8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273
제2017-8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변경(폐지)결정(안) 열람 공고(서초구)	275

◆ 사업소고시

제2017-1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8
제2017-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8
제2017-1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9
제2017-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79
제2017-1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0
제2017-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0
제2017-1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1
제2017-1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1

◆ 사업소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282
--------------------------------------	-----

◆ 기 타

제2017-12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3
제2017-12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3
제2017-12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4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0호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축사업
2. 사업주체 :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김 성 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1-9
4. 사업기간 : 2014. 11. ~ 2017. 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56) 및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전화번호 : 02-2116-39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9번지		
② 대 지 면 적 (㎡)	11,344.8		
③ 건 축 면 적 (㎡)	3,389.69	3,301.63	
④ 건 축 연면적 (㎡)	17,728.00	17,652.27	
⑤ 건 폐 율 (%)	29.88	29.10	
⑥ 용 적 률 (%)	98.96	98.42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⑦ 주 택 규 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3동 106세대 / 연립주택 1동 9세대 / 단독주택 4동 6세대 (지하2층, 지상 2~7층)	아파트 3동 104세대 / 연립주택 1동 8세대 / 단독주택 3동 5세대 (지하2층, 지상 2~7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용 39㎡A : 24세대 전용 39㎡A-1 : 12세대 전용 49㎡A : 28세대 전용 49㎡A-1 : 14세대 전용 49㎡B : 3세대 전용 49㎡B-1 : 3세대 전용 49㎡B-2 : 3세대 전용 59㎡A : 14세대 전용 59㎡A-1 : 14세대 전용 59㎡B : 6세대	전용 39㎡A : 24세대 전용 39㎡A-1 : 12세대 전용 49㎡A : 28세대 전용 49㎡A-1 : 14세대 전용 49㎡B : 3세대 전용 49㎡B-1 : 2세대 전용 49㎡B-2 : 3세대 전용 59㎡A : 14세대 전용 59㎡A-1 : 12세대 전용 59㎡B : 5세대	
			계	총 121세대	총 117세대
⑧ 부대복리 시설현황	관리사무소		37.11㎡	40.36㎡	
	경 로 당		116.54㎡	58.59㎡	
	방 재 실		65.86㎡	66.96㎡	
	MDF 실		19.92㎡		
	다 목 적 실		54.34㎡	113.70㎡	
	게 스톨 룸		—	277.24㎡	
	경 비 실		55.66㎡	—	
	어린이 놀이터		242.27㎡	226.49㎡	
	기계/전기/발전기실		1,003.47㎡	1,000.62㎡	
	주 차 장		125대 (지하 125대) 면적 : 4,758.87㎡	128대 (지하 128대) 면적 : 4,682.40㎡	
⑧ 부대복리 시설현황	근린생활시설-1 (상가)		699.99㎡	692.72㎡	
	근린생활시설-2 (주민커뮤니티시설)		924.74㎡	939.45㎡	
⑨ 공 동 저 수 시 설(ton)			149톤(비상급수시설)	126톤(비상급수시설)	
⑩ 사 업 기 간			2015.11. ~ 2017.06.	2015.11. ~ 2017.08.	
⑪ 사 업 비			36,066,128천원	37,099,214천원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당초)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㉔ 단 위 세 대 면 적	국 민 임 대 주 택	39㎡A	24	39.96	27.83	67.79	40.14	107.93	
		39㎡A-1	12	39.96	28.32	68.28	40.14	108.42	
		49㎡A	28	49.66	26.72	76.38	49.89	126.27	
		49㎡A-1	14	49.66	27.32	76.98	49.89	126.88	
		49㎡B	3	49.81	40.17	89.98	50.05	140.03	
		49㎡B-1	3	49.81	40.46	90.27	50.05	140.32	
		49㎡B-2	3	49.81	40.54	90.35	50.05	140.40	
		59㎡A	14	59.54	38.89	98.43	59.82	158.25	
		59㎡A-1	14	59.54	39.23	98.77	59.82	158.59	
		59㎡B	6	59.71	5.60	65.31	59.99	125.30	
		소 계	121	5,998.45	3,629.46	9,627.92	6,025.99	15,653.91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변경)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㉔ 단 위 세 대 면 적	행 복 주 택	39㎡A	24	39.96	27.80	67.76	42.75	110.51	
		39㎡A-1	12	39.96	28.29	68.25	42.75	111.00	
		49㎡A	28	49.66	26.69	76.35	53.13	129.48	
		49㎡A-1	14	49.66	27.29	76.95	53.13	130.08	
		49㎡B	2	49.81	44.71	94.52	53.29	147.81	
		49㎡B-1	3	49.81	45.00	94.81	53.29	148.10	
		49㎡B-2	3	49.81	45.08	94.89	53.29	148.18	
		59㎡A	14	59.54	41.48	101.02	63.70	164.72	
		59㎡A-1	12	59.54	41.83	101.37	63.70	165.07	
		59㎡B	5	59.78	5.53	65.31	63.96	129.27	
		소 계	117	5,769.69	3,605.71	9,375.40	6,172.91	15,548.3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1호

여의천 하천구역 변경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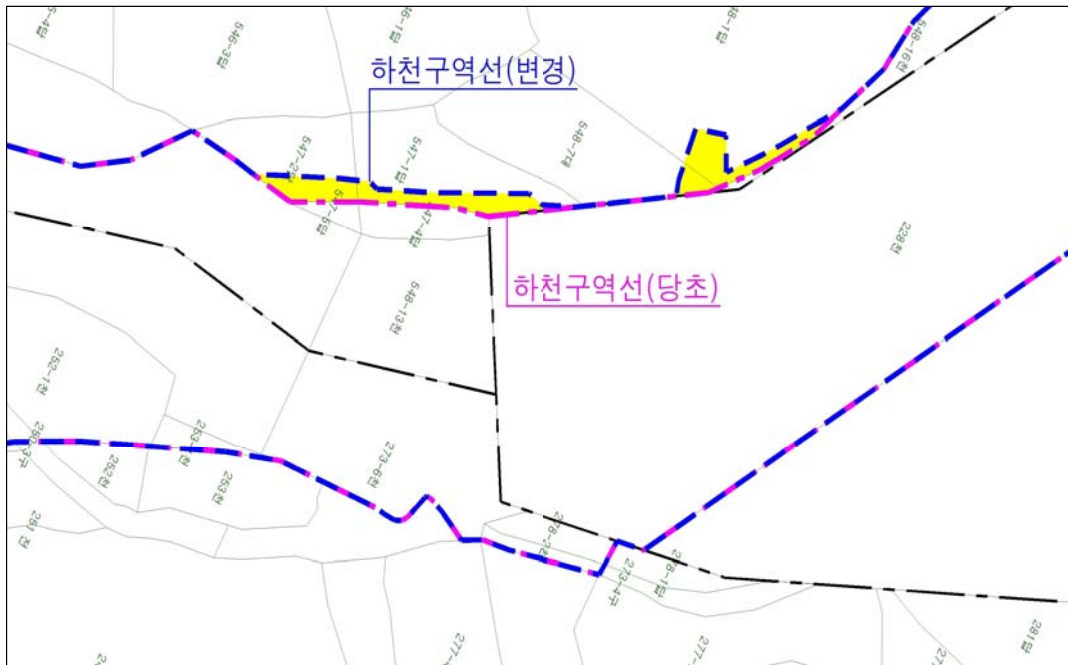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하천구역의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여의천 제방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한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구역 변경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시 하천관리과(02-2133-3886) 및 서초구 물관리과(02-2155-7156)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업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보충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공부	현실	공부	계	포락	비포락						
계		33필지			52,841㎡	20,789㎡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1	천		2,276.0	2.0			공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	천		3,089.0	1,964.0			공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2	답		391.0	86.0			성남시분당구분당동39 셋별마을403-801	이용숙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안양시동안구계동1055 무궁화아파트104-901	소병윤	
											근저당권	서울강남구대치동985 대치차우성아파트203-1205호	최동희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5	답		39.0	39.0			성남시분당구분당동39 셋별마을403-801	이용숙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안양시동안구계동1055 무궁화아파트104-901	소병윤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공부	현실	공부	계	포락	비포락					
											서울강남구대치동985 대치차우성아파트203-1205 호	최동희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3	천		829.0	829.0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	답		164.0	164.0			서울송파구잠실동860아시아 선수촌아파트13동603호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1	답		576.0	576.0			서울송파구잠실동860아시아 선수촌아파트13동603호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7	대		864.0	864.0			서울특별시 성북구 1170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	남서울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종구세종대로67 (태평로2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	답		2,992.0	11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9길 4-20(길음동)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	남서울 농업협동조합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공부	현실	공부	계	포락	비포락					
											서울특별시 중구세 종대로67 (태평로2가)	삼성카드주식회사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6	천		472.0	218.0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4	도		40.0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9길 4-20(길음동)	임병무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	남서울 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세 종대로67 (태평로2가)	삼성카드주식회사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51-2	전		18.0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8-1	김정귀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51-6	도		15.0	1.0			공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5	천		90.0	2.7			공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1	천		7,875.0	1,321.0			공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10	도		118.0	114.6			공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2	천		791.0	787.4			공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공부	현실	공부	계	포락	비포락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2	도		335.0	126.0			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6	천		8.0	8.0			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5	전		1.0	1.0			서울특별시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9	천		106.0	106.0			서울특별시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4	전		110.0	91.7			서울특별시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5	천		608.0	603.7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3	전		25.0	4.0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8	천		422.0	261.8			서울특별시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4	천		1,154.0	1,132.0			부산시남구광안동 502-2 동원 에이동 106호	전영기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	천		3,611.0	3,552.0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3	구		460.0	197.0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공부	현실	공부	계	포락	비포락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52-1	천		996.0	86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8	이일청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73-6	천		1,569.0	676.0			공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73-4	구		230.0	14.0			공	서울특별시				
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78-2	천		94.0	94.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1-101	박혜숙 외 3인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서초구동신로6길3 (양재동)	영동농업협동조합	
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	천		22,472.8	7,243.2			공	서울특별시				

물 전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업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화장) 보충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m ²)	주소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1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6.5	평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1.9	평	서울특별시	
3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7.3	평	서울특별시	
4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55.3	평	서울특별시	
5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12.2	평	서울특별시	
6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14.8	평	서울특별시	
7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9.3	평	서울특별시	
8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1	평	서울특별시	
9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4.2	평	서울특별시	
10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13.0	평	서울특별시	
11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30.1	평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2-2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9.8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셋별마을 403-801	이용숙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27.8	서울송파구잠실동860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동 603호	최석우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1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13.3	서울송파구잠실동860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동 603호	최석우	
15			공작물	비닐하우스	평	1	33.4	서울송파구잠실동860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동 603호	최석우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	주소	성명	비고
16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16.3	서울송파구잠실동86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동 603호	최석우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삼양로9길 4-20(길음동)	임병무	
18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삼양로9길 4-21(길음동)	임병무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6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9.1	공	서울특별시	
20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9.9	공	서울특별시	
21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14.8	공	서울특별시	
22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22.1	공	서울특별시	
23			공작물	비닐하우스	통	1	65.2	공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	공공시설물	환기구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5	공공시설물	가로등제어기	식	1		공	서울특별시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전력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통신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통신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9	서울특별시서초구 영곡동	243-1천	공공시설물	통신맨홀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맨홀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맨홀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2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맨홀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3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맨홀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	주소	성명	비고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맨홀	개소	1		궤도	서울특별시	
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2천	공공시설물	도로 반사경	개소	1		궤도	서울특별시	
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50-4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50-4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548-1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73-6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보	1		궤도	서울특별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	주소	성명	비고
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답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	1		궤	서울특별시	
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휴대전화 중계기	개소	1		궤	서울특별시	
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50-3구	공공시설물	휴대전화 중계기	개소	1		궤	서울특별시	
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조 지지주	개소	1		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2호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결정·고시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입정동 237일대	12,316.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 (2010. 08. 26)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입정동 237일대	12,316.6	2017. 02. 01
변경 (연장)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입정동 237일대	12,316.6	2019. 01. 31

※ 권고사항 :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연접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3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2016.8.25.)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공무원8단지-강남구 개포동 611-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1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공무원8)은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매각된 공무원아파트단지에 민간분양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72	50	주간선	1,120 (293)	광장86 (대치동514)	광로 1-28 (일원1동68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동대로
변경	광로	1	72	50	주간선	1,120 (293)	광장86 (대치동514)	광로 1-28 (일원1동688)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기정	대로	2	68	30	보조 간선	2,050 (301)	광로1-72 (일원1동611-1)	광로1-73 (일원1동 615)	일반 도로	-	건고시481호 (81.12.24)	개포로
변경	대로	2	68	30	보조 간선	2,050 (301)	광로1-72 (일원1동611-1)	광로1-73 (일원1동 615)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국지 도로	620 (308)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변경	중로	1	404	15~ 22.5	국지 도로	620 (308)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류별 및 번호변경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해당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폭원 3m)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 가감속차로 확보
대로 2-68	대로 2-68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폭원 3m)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 가감속차로 확보
중로 2-407	중로 1-404	●도로확폭(폭15m→폭22.5m)	●동서축 커뮤니티생활가로 계획에 따른 도로확폭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교통시설은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㉔	개포개나리 (일원1)	어린이공원	일원동 612	1,500.6	감) 1,500.6	-	건고시388호 (84.9.28)	
신설	㉕	공원 (일원20)	소공원	일원동 611-1	-	증) 1,861.9	1,861.9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개포개나리(일원1)	● 공원폐지	● 단지내부에 위치하여 이용접근성이 열악한 어린이공원 폐지
㉕	공원(일원20)	● 공원신설 - 면적:1,861.9㎡	● 단지내부에 위치하여 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이용접근성이 편리하며 주생활가로(개원길변)와 연계한 위치에 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원시설은 변경없음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⑩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1-1일대	-	증)4,126.1	4,126.1		영동대로, 폭15m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⑩	연결녹지	• 신설 : 4,126.1㎡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상징·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연결녹지 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녹지시설은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 시장 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시장	-	일원동 613	2,000.1	감)2,000.1	-	건고시388호 (84.9.28)	

■ 시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	• 폐지	• 주변 상권범위 및 소비수요 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시설 폐지하고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내 수용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은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

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2)용적률계획

구 분		기정			변경(안)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19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230% 이하	280% 이하	280% 이상	
기타 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	180% 이하	2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	220% 이하	250% 이하	-
	상업지역	삼성로 · 개포동길변	600% 이하	800% 이하	-	600% 이하	800% 이하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400% 이하	500% 이하	-

※ 특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10의 상한용적률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2-3-3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3) 높이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1 ~ 특별계획구역9, 별계획구역11 ~ 특별계획구역32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0(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10	강남구 일원2동	73,447.4	-	73,447.4	공무원8단지	공동개발관장(시장)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특별계획구역 10	•면적 : 변경없음 •구역계 변경 : 일원동 613번지 포함	•기 결정시 일원동 613번지(시장)는 구역면적에는 포함 되었으나 구역계에서 제척되어 있어, 금회 구역계 정정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내 613번지 포함	공무원 8단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10 - 공무원8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 정	변 경	
위 치			강남구 일원동 611-1		
특별계획구역 면적			73,447.4㎡	73,447.4㎡	
획지(계획대지) 면적			65,171.4㎡	64,598.4㎡	
공공시설 면적			8,276.0㎡	11,446.4㎡	
공공시설 비율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13.5% 내외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 3,501㎡ - 시장(2,000㎡) 및 공원(1,501㎡-연결녹지대체)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775㎡ - 연결녹지 폭12m(영동대로변)(면적 : 1,188㎡) 계획 - 광장 1개소(대모산입구역)(면적 : 726㎡) 계획 - 폭7.5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개포동길·영동대로변 가감속 차로 설치(면적 : 2,861㎡)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500.6㎡ - 공원(1,501㎡-소공원 대체)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7,348.4㎡ - 연결녹지 폭15m(영동대로변)(면적 : 4,126.1㎡) 계획 - 소공원 1개소(개원길변) 면적 : 361.3㎡) 계획 - 폭7.5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개포동길·영동대로변 가감속 차로 설치(면적 : 2,861㎡) - 시설기부채납 환산 면적 : 2,597.4㎡ - 공공청사(창업지원센터), 체육시설(실내체육관) : 연면적 6,630.9㎡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시장 폐지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도 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공공청사, 체육시설)	
	용적률(%)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210% 이하	230% 이하	
		허용용적률	230% 이하	28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280% 이상	
	높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우성7차 단지변 폭30m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우성7차 단지변 폭30m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 우성 7차단지 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기타에 관한 사항	경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대모산입구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대모산입구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영동대로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 개원길, 개포동길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폭 1.5m이상)	- 영동대로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 개원길, 개포동길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폭 1.5m이상)	
	근린광장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주1)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의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4항에 의거 용적률을 별도 적용함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보행동선·근린광장·섬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특별계획구역(기정)

항 목		완 화 내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합계		20%	
A. 서울시 기준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10%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5%	

※ 단, 인센티브 범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 속 가능형 건축 구조	라멘 구조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분야	세부평가기준		비고	
	무량판 구조	건축 구조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측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 체 설치 허용			
		공용 설비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 우수수 등 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 특별계획구역10(변경)

항 목		완 화 내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A.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장기전세주택	50%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필수 이행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공기여방안, 역사문화 보전 中 1가지 선택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분	완화항목	완화 조건	완화기준
패키지 인센 티브	장기전세 주택공급	필수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이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필수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 지원시설	필수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300세대 이상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 -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 등 - 사업시행인가 전 시설의 종류, 운영 및 관리 등을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에너지 효율 건축물	필수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86점 이상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필수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 평지붕 등으로 옥상 녹화 가능한 부분은 전면 녹화할 수 있도록 계획 • 전이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 설치 • 환경친화적인 외부 창호계획 •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의 설계기준 충족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충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선택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공공시설물 설치	선택	• 공공기여방안 반영 -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시설 (연결통로, 출입구, 환기시설 등) 등 -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사문화 보전계획	선택	• 사업대상지 내 역사문화 보전 계획 준수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역사문화 보전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10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변경없음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특별계획구역10	강남구 일원동 611-1 일원	73,447.4	-	73,447.4	구역계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10	• 면적 : 변경없음 • 구역계 변경 : 일원동 613번지 포함	기 결정시 일원동 613번지(시장)는 구역면적에 는 포함되었으나 구역계에서 제척되어 있어, 금 회 구역계 변경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내 613번 지 포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3,447.4	-	73,447.4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3,447.4	-	73,447.4	100.0%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72	50	주간선	1,120 (293)	광장86 (대치동514)	광로 1-28 (일원1동68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동대로
변경	광로	1	72	50	주간선	1,120 (293)	광장86 (대치동514)	광로 1-28 (일원1동688)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기정	대로	2	68	30	보조 간선	2,050 (301)	광로1-72 (일원1동611-1)	광로1-73 (일원1동 615)	일반 도로	-	건고시481호 (81.12.24)	개포로
변경	대로	2	68	30	보조 간선	2,050 (301)	광로1-72 (일원1동611-1)	광로1-73 (일원1동 615)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국지 도로	620 (308)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변경	중로	1	404	15~ 22.5	국지 도로	620 (308)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류별 및 번호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폭원 3m)	•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 가감속차로 확보
대로 2-68	대로 2-68	•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폭원 3m)	•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 가감속차로 확보
중로 2-407	중로 1-404	• 도로확폭(폭15m→폭22.5m)	• 동서축 커뮤니티생활가로 계획에 따른 도로확폭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㉔	개포개나리 (일원1)	어린이공원	일원동 612	1,500.6	감) 1,500.6	-	건고시388호 (84.9.28)	
신설	㉕	공원 (일원20)	소공원	일원동 611-1	-	증) 1,861.9	1,861.9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개포개나리(일원1)	• 공원폐지	• 단지내부에 위치하여 이용접근성이 열악한 어린이공원 폐지
㉕	공원(일원20)	• 공원신설 - 면적:1,861.9㎡	• 단지내부에 위치하여 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이용접근성이 편리하며 주생활가로(개원길변)와 연계한 위치에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㉖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1-1일대	-	증)4,126.1	4,126.1		영동대로, 폭15m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㉖	연결녹지	• 신설 : 4,126.1㎡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상징·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연결녹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시장	-	일원동 613	2,000.1	감)2,000.1	-	건고시388호 (84.9.28)	

■ 시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	• 폐지	• 주변 상권범위 및 소비수요 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시설 폐지하고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내 수용

③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건축물의 용도밀도 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 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 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허용 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공공청사, 체육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공공청사, 체육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용적 률 주1)	기준 용적률	• 230% 이하	• 230%
		허용 용적률	• 280% 이하	• 280%
		상한 용적률	• 280% 이상	• 337% 이하 • 기부채납(순부담) : 9,945.8㎡ - 공원,연결녹지,도로 : 8,849.0㎡ - 시설기부채납환산부지주2) : 2,597.4㎡ - 기존국공유지 : 1,500.6㎡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저층구간(10층 이하) : 우성7차 단지 변 폭30m	좌동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 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 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 복리시설 등)인 경우: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름 :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계획 결정
	부대복리시설	-	• 커뮤니티지원시설 : 개포로11로변 우 선설치 권장구간 계획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좌동	
	보행동선	•대모산입구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좌동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좌동	
	자전거도로	•영동대로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폭3m 이상) •개원길, 개포동길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 1.5m이상)	좌동	
	근린광장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좌동	

주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2-3-1.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변경없음) 용적률 체계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주2) 시설기부채납환산부지는 추후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연면적 조정에 따른 부속토지지분 변경 등)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2.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안)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특별계획구역 10 허용용적률

항 목		완 화 내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A.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장기전세주택	50%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필수 이행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공기여방안, 역사문화 보존 中 1가지 선택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안)
패키지 인센 티브	장기전세 주택공급	필수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이상	30.14% (계획지침 25% + 위원회심의의견 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필수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건축계획시 반영
	커뮤니티 지원시설	필수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300세대 이상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 -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 등 - 사업시행인가 전 시설의 종류, 운영 및 관리 등을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설치규모 - 연면적 6,630.89㎡ (기준 : 6,444.21㎡ 이상) •시설종류 - 공공청사(창업지원센터),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운영방식 - 부속토지지분을 포함하여 강남구 제공
	에너지 효율 건축물	필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86점 이상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인증	건축계획시 반영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안)
패키지 인센 티브	친환경 건축물	필수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 평지붕 등으로 옥상 녹화 가능한 부분은 전면 녹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전이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 설치 • 환경친화적인 외부 창호계획 •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의 설계기준 충족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충족	건축계획시 반영
	신재생 에너지사용	선택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건축계획시 반영

■ 특별계획구역 10 상한용적률

기 준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시설기부채납 시 공공시설부지는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환산 부지면적
세부개발 계획(안)	337%이하 280% × (1+1.3×1×(9,945.8㎡/63,501.6㎡))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니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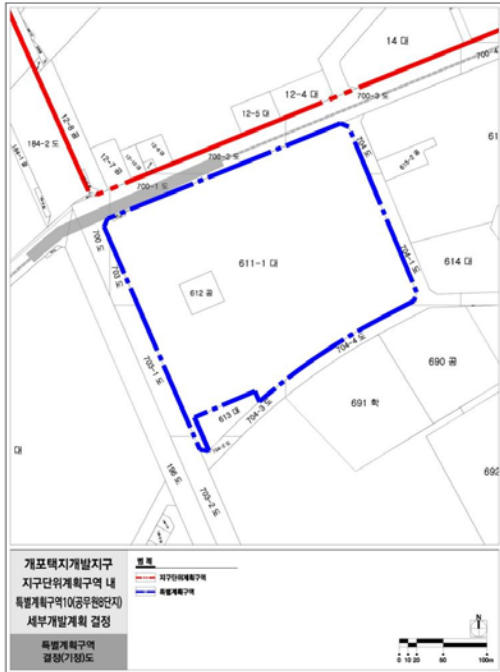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VI.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69) 및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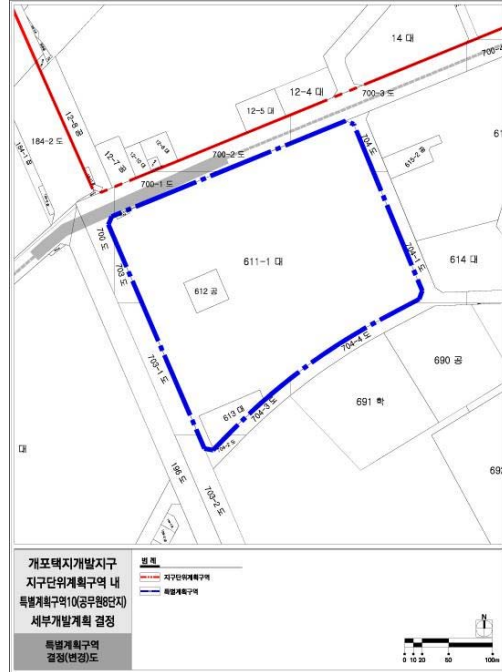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4호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2017. 6. 29)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산개황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0,604,138,879,842원(전년도 이월금 781,763,091,842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89,978,439,277원이고
지출액은	28,751,388,422,665이며
차입잔액은	3,838,590,016,61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3,838,590,016,612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9,622,808,884원
사고이월	404,674,695,677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31,660,162,4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2,632,349,565원이다.

2016회계연도 성과결과는 42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2건, 달성 322건, 미달성 43건이다.

2.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입액			미수입액 ㉕=㉓-③	미수입액처리		비율(%)	
					수입총액 ①	과오납 변환액②	실제수입액 ③=①-②		결산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㉓	③/㉔
합 계	29,822,375,788,000	781,763,091,842	30,604,138,879,842	34,329,520,678,478	33,570,455,825,063	980,477,385,786	32,589,978,439,277	1,739,542,239,201	298,175,516,611	1,441,366,722,590	106.5 %	94.9 %
일 반 회 계	20,984,104,086,000	314,923,023,182	21,299,027,109,182	24,647,021,608,252	23,995,201,594,538	975,955,321,426	23,019,246,273,112	1,627,775,335,140	296,523,364,300	1,331,251,970,840	108.1 %	93.4 %
지방세수입	14,125,773,000,000		14,125,773,000,000	18,092,118,253,239	17,538,506,284,990	969,188,654,111	16,569,317,630,879	1,522,800,622,360	292,810,296,750	1,229,990,325,610	117.3 %	91.6 %
보통세	12,500,921,000,000		12,500,921,000,000	14,975,897,379,049	15,625,458,639,050	957,810,406,671	14,667,648,232,379	308,249,146,670	55,922,246,270	252,326,900,400	117.3 %	97.9 %
목적세	1,399,604,000,000		1,399,604,000,000	1,699,478,898,340	1,673,572,210,710	9,259,287,510	1,664,312,923,200	35,165,975,140	2,077,220,440	33,088,754,700	118.9 %	97.9 %
지나년도수입	225,248,000,000		225,248,000,000	1,416,741,975,850	239,475,435,230	2,118,959,930	237,356,475,300	1,179,385,500,550	234,810,830,040	944,574,670,510	105.4 %	16.8 %
세외수입	1,565,371,378,000		1,565,371,378,000	986,926,567,729	898,729,045,264	6,722,190,315	892,006,854,949	104,919,712,780	3,713,067,550	101,206,645,230	57.0 %	89.5 %
경상적세외수입	750,999,054,000		750,999,054,000	518,916,104,884	513,239,454,284	1,776,831,400	511,462,622,884	7,453,482,000	268,510	7,453,213,490	68.1 %	98.6 %
임시적세외수입	814,372,324,000		814,372,324,000	478,010,462,845	385,489,590,980	4,945,358,915	380,544,232,065	97,466,230,780	3,712,799,040	93,753,431,740	46.7 %	79.6 %
지방교부세	131,042,077,000		131,042,077,000	135,677,077,000	135,677,077,000		135,677,077,000				103.5 %	100.0 %
지방교부세	131,042,077,000		131,042,077,000	135,677,077,000	135,677,077,000		135,677,077,000				103.5 %	100.0 %
보조금	3,051,720,683,000		3,051,720,683,000	3,005,527,199,360	3,005,571,676,360	44,477,000	3,005,527,199,360				98.5 %	100.0 %
국고보조금등	3,051,720,683,000		3,051,720,683,000	3,005,527,199,360	3,005,571,676,360	44,477,000	3,005,527,199,360				98.5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10,196,948,000	314,923,023,182	2,425,119,971,182	2,416,772,510,924	2,416,717,510,924		2,416,717,510,924	55,000,000		55,000,000	99.7 %	100.0 %
보전수입등	1,721,274,629,000	314,923,023,182	2,036,197,652,182	2,043,063,710,304	2,043,008,710,304		2,043,008,710,304	55,000,000		55,000,000	100.3 %	100.0 %
내부거래	388,922,319,000		388,922,319,000	373,708,800,620	373,708,800,620		373,708,800,620				96.1 %	100.0 %

(단위:원)

구 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㉔)	예산현액 ㉑=㉑+㉔	징수 결정액(㉒)	수납액			미수납액 ㉑=㉑-㉓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㉑	③/㉒
특 별 회 계	8,838,271,702,000	466,840,068,660	9,305,111,770,660	9,682,499,070,226	9,575,254,230,525	4,522,064,360	9,570,732,166,165	111,766,904,061	1,652,152,311	110,114,751,750	102.9 %	98.8 %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000	37,294,639,000	809,610,639,000	886,007,581,482	855,121,382,231	1,837,985,040	853,283,397,191	32,724,184,291	761,670,261	31,962,514,030	105.4 %	96.3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000,000		316,000,000	744,237,615	744,237,615		744,237,615				235.5 %	1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000	37,294,639,000	809,294,639,000	885,263,343,867	854,377,144,616	1,837,985,040	852,539,159,576	32,724,184,291	761,670,261	31,962,514,030	105.3 %	96.3 %
기타특별회계	8,065,955,702,000	429,545,429,660	8,495,501,131,660	8,796,491,488,744	8,720,132,848,294	2,684,079,320	8,717,448,768,974	79,042,719,770	890,482,050	78,152,237,720	102.6 %	99.1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8,099,000,000	50,926,884,870	1,319,025,884,870	1,255,039,585,758	1,255,039,585,758		1,255,039,585,758				95.1 %	1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000	114,788,299,852	1,342,322,962,852	1,355,623,658,108	1,315,882,594,943	513,979,350	1,315,368,615,593	40,255,042,515	599,483,330	39,655,559,185	98.0 %	97.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879,000,000	62,484,422,397	155,363,422,397	226,937,209,043	210,877,604,493	1,091,155,770	209,786,448,723	17,150,760,320		17,150,760,320	135.0 %	92.4 %
주택사업특별회계	1,392,577,437,000	20,406,588,960	1,412,984,025,960	1,650,303,130,377	1,646,384,418,092	44,749,770	1,646,339,668,322	3,953,462,055		3,963,462,055	116.5 %	99.8 %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000	130,966,604,591	1,492,174,874,591	1,535,356,055,586	1,534,563,056,184	1,334,370	1,534,561,721,814	794,333,772		794,333,772	102.8 %	99.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1,882,000,000	49,739,628,990	831,625,628,990	892,204,409,598	876,442,625,390	1,030,857,630	875,411,767,760	16,792,641,838	288,236,320	16,504,405,518	105.3 %	98.1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384,000	179,000,000	255,129,384,000	189,605,605,207	189,566,141,197		189,566,141,197	39,464,010		39,464,010	74.3 %	1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048,000		934,190,048,000	938,682,887,192	938,682,887,192		938,682,887,192				100.5 %	10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0,900,000		30,900,900,000	30,812,560,205	30,812,560,205		30,812,560,205				99.7 %	100.0 %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000		721,734,000,000	721,916,387,670	721,871,374,840	2,002,430	721,869,372,410	47,015,260	2,762,400	44,252,860	10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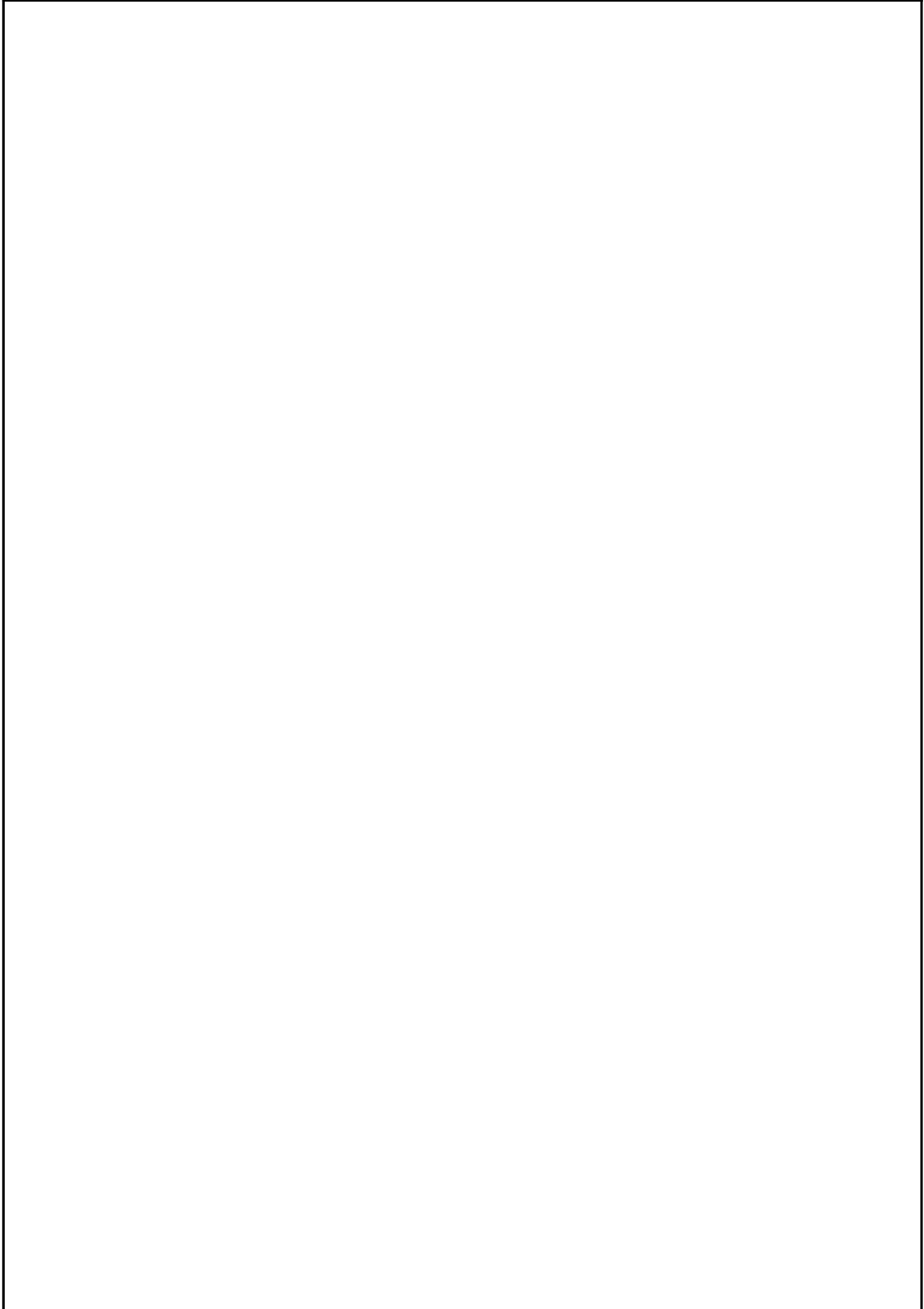
나. 세출결산

(단위:원)

과 목	예산액 ㉑	예산영입후 증감액(나)	예산액 (㉑=㉑+㉒)	지출액인 행위액(㉑)	지출액 ㉑	다음연도 이월액(㉑)				잔액 (㉑-㉒-㉓)
						계	영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9,822,375,788,000	781,763,091,842	30,604,138,879,842	29,290,614,551,841	28,751,388,422,665	934,297,504,561	529,622,808,884	404,674,695,677		918,452,952,616
일 반 회 계	20,984,104,086,000	314,923,023,182	21,299,027,109,182	20,817,825,974,520	20,683,816,825,500	246,230,508,487	161,020,300,926	85,210,207,561		363,979,775,195
일반공공행정	5,388,991,351,000	36,105,421,534	5,425,096,772,534	5,378,185,822,215	5,372,074,964,019	19,032,855,220	16,316,367,710	2,716,487,510		33,988,963,295
공공질서및안전	754,223,966,000	20,727,237,700	774,951,203,700	772,914,893,769	771,665,866,899	2,092,173,880	1,527,000,000	565,173,880		1,193,162,921
교육	3,053,137,770,000	514,315,000	3,053,652,085,000	3,044,516,864,548	3,041,300,066,058	3,215,745,000		3,215,745,000		9,136,273,942
문화및관광	533,076,476,000	73,376,166,178	606,452,642,178	563,879,709,504	548,368,660,454	28,496,410,910	15,575,649,370	12,920,761,540		29,587,570,814
환경보호	474,279,760,000	52,707,350,388	526,987,110,388	452,210,326,464	420,961,748,977	72,135,935,520	50,981,661,610	21,154,273,910		33,889,425,891
사회복지	6,713,780,019,000	20,079,824,689	6,733,859,843,689	6,565,654,692,328	6,555,928,350,843	31,593,967,980	23,033,231,000	8,560,736,980		146,337,524,866
보건	391,742,998,000	5,264,410,730	397,007,408,730	386,835,844,979	376,715,110,905	10,185,803,194	6,122,345,231	4,063,457,963		10,106,494,631
농림해양수산	16,824,944,000	100,000,000	16,924,944,000	14,181,308,325	14,181,308,325	1,400,000,000	1,400,000,000			1,343,635,675
산업·중소기업	273,434,723,000	28,962,354,820	302,397,077,820	285,527,434,558	278,957,325,889	12,417,162,819	9,562,850,600	2,854,312,219		11,022,589,112
수송및교통	1,130,037,971,000	95,150,030,510	1,225,188,001,510	1,218,945,816,022	1,214,767,154,952	4,839,947,530	4,453,110,590	386,836,940		5,580,899,028
국토및지역개발	1,305,778,570,000	105,190,075,633	1,410,968,645,633	1,375,173,657,055	1,329,097,424,426	60,820,506,434	32,048,084,815	28,772,421,619		21,050,714,773
과학기술	1,599,019,000		1,599,019,000	1,378,578,560	1,378,578,560					220,440,440
예비비	152,029,999,000	△129,230,205,000	22,799,794,000							22,799,794,000
기타	795,166,520,000	5,976,041,000	801,142,561,000	758,421,026,193	758,420,265,193					42,722,295,807
특 별 회 계	8,838,271,702,000	466,840,068,660	9,305,111,770,660	8,472,788,577,321	8,067,571,597,165	688,066,996,074	368,602,507,958	319,464,488,116		549,473,177,421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000	37,294,639,000	809,610,639,000	739,364,299,685	711,506,566,995	28,209,127,000		28,209,127,000		69,894,945,005

(단위:원)

과 목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나)	예산결액 (다)=(가)+(나)	지출원인 행위액(라)	지출액 (마)	다음연도 이월액(매)				집행잔액 (바)=(라)-(매)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000,000		316,000,000	3,198,780	3,198,780					312,801,220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000	37,294,639,000	809,294,639,000	739,361,100,905	711,503,368,215	28,209,127,000		28,209,127,000		69,582,143,785
기타특별회계	8,065,955,702,000	429,545,429,660	8,495,501,131,660	7,733,424,277,636	7,356,065,030,170	659,857,869,074	368,602,507,958	291,255,361,116		479,578,232,41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8,099,000,000	50,926,884,870	1,319,025,884,870	1,167,018,560,930	1,134,364,812,210	94,029,060,330	66,240,861,370	27,788,198,960		90,632,012,330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000	114,788,299,852	1,342,322,962,852	1,199,244,621,300	1,162,511,821,780	92,871,830,750	60,896,366,770	31,975,463,980		86,939,310,32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879,000,000	62,484,422,397	155,363,422,397	131,438,164,927	90,805,598,307	48,685,117,200	20,535,152,880	28,149,964,320		15,972,706,890
주택사업특별회계	1,392,577,437,000	20,406,588,960	1,412,984,025,960	1,339,369,393,646	1,314,277,255,316	50,069,385,770	25,701,472,000	24,367,913,770		48,637,384,874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000	130,966,604,591	1,492,174,874,591	1,281,884,892,426	1,097,291,333,330	271,500,317,258	124,529,348,928	146,970,968,330		123,383,224,0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1,882,000,000	49,793,628,990	831,675,628,990	758,937,743,840	722,575,909,950	73,804,208,070	47,214,439,010	26,589,769,060		35,295,510,970
진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384,000	179,000,000	255,129,384,000	181,465,749,650	181,465,749,650					73,643,634,3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048,000		934,190,048,000	934,186,211,280	934,186,211,280					3,836,72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0,900,000		30,900,900,000	28,295,986,058	27,282,652,158	1,151,491,040	140,000,000	1,011,491,040		2,466,756,802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000		721,734,000,000	711,562,953,579	691,283,686,189	27,746,458,656	23,344,867,000	4,401,591,656		2,703,855,155



3. 재무제표

재 정 상 태 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산 총계)		126,711,657,848,081	91,257,377,896,200
자 산	I. 유동자산	6,674,044,326,164	3,807,252,252,131
	현금및현금성자산	2,682,539,820,165	939,929,447,617
	단기금융상품	2,150,963,110,600	1,395,500,000,000
	미수세금	1,229,990,325,610	1,229,990,325,610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92,275,594,285)	(192,275,594,285)
	미수세외수입금	171,276,007,741	75,970,046,620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5,895,977,701)	(3,669,608,970)
	미수정부간이전수익	49,547,463,500	49,502,540,020
	단기대여금	228,107,000,000	5,225,724,49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060,073,840)	(52,257,245)
	재고자산	49,904,756,173	33,397,961,575
	기타유동자산	310,947,488,201	273,733,666,699
	II. 투자자산	15,586,490,001,718	4,092,437,040,778
	장기대여금	817,574,153,216	117,213,565,293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441,562,584)	(185,886,705)
	장기투자증권	14,764,989,614,286	3,569,659,756,301
	기타투자자산	10,367,796,800	405,749,605,889
	III. 일반유형자산	9,331,427,158,519	7,500,717,991,113
	토지	8,136,857,510,434	6,429,351,640,155
	입목	3,047,336,180	3,047,336,180
	건물	1,246,952,360,905	1,181,839,874,76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23,941,102,661)	(312,683,456,611)
	구축물	180,222,049,898	171,788,626,76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45,951,377,284)	(140,775,967,888)
	기계장치	9,272,035,994	7,261,613,954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7,335,925,279)	(5,447,499,344)
	차량운반구	179,609,716,536	152,067,625,394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32,935,614,677)	(120,814,389,751)
	집기비품	638,767,029,235	539,741,324,427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505,643,481,482)	(446,073,505,220)
	임차개량자산	1,237,314,267	1,237,314,267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88,091,108)	(88,091,108)
	기타일반유형자산	34,150,000	34,150,00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6,047,395)	(6,047,39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1,329,294,956	40,237,442,526
	IV. 주민편의시설	22,859,698,966,109	16,449,167,471,059
	도서관	43,806,968,609	43,104,338,659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9,376,123,542)	(8,788,281,162)
	주차장	1,614,407,517,763	173,973,367,546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47,352,146,750)	(2,206,149,171)
	공원	10,158,106,576,807	9,235,641,895,031
	공원감가상각누계액	(185,412,646,222)	(169,101,159,970)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8,096,501,159,014	6,256,346,549,795	5,366,328,738,759	(4,264,896,495,687)
1,484,828,112,334	1,722,583,639,641	199,970,137,233	(540,589,815,175)
1,194,383,738,804	477,141,910,672	71,084,723,072	
167,000,000,000	517,771,003,476	70,692,107,124	
78,152,237,720		17,153,723,401	
(1,411,075,441)		(815,293,290)	
44,923,480			
35,169,275,510	728,173,091,000		(540,461,091,000)
(17,696,595)	(990,120,000)		
310,578,662		16,196,215,936	
11,196,130,194	487,754,493	25,658,660,990	(128,724,175)
10,684,216,578,266	4,526,025,965,886	8,117,097,300	(3,724,306,680,512)
992,453,879,430	3,027,915,359,386	4,900,000,000	(3,324,908,650,893)
(1,256,565,598)	(4,999,110,281)		
9,692,220,141,204	1,503,109,716,781		
799,123,230		3,217,097,300	(399,398,029,619)
1,788,526,168,054	2,143,694,742	40,039,304,610	
1,668,329,352,304		39,176,517,975	
64,880,813,330		231,672,814	
(11,117,923,772)		(139,722,278)	
2,595,393,910	497,708,790	5,340,320,432	
(434,929,084)	(159,301,164)	(4,581,179,148)	
171,718,790	1,401,362,450	437,340,800	
(79,243,615)	(1,383,536,335)	(425,645,985)	
26,117,107,442	1,424,983,700		
(10,939,435,879)	(1,181,789,047)		
92,020,446,144	7,001,127,625	4,131,039	
(54,108,983,946)	(5,456,861,277)	(4,131,039)	
11,091,852,430			
6,409,429,748,886	1,101,746,164		
702,629,950			
(587,842,380)			
1,440,381,002,217	53,148,000		
(145,133,596,379)	(12,401,200)		
922,257,541,776	207,140,000		
(16,277,203,756)	(34,282,496)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 산	박물관및미술관	258,447,739,513	227,557,550,195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49,477,442,889)	(45,452,700,014)
	동물원	1,086,366,876	1,086,366,876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1,085,670,876)	(1,085,670,876)
	수목원및휴양림	1,111,141,340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261,544,878)	
	문화및관광시설	3,179,454,354,365	3,162,729,967,849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89,826,396,222)	(89,629,446,146)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55,315,816,667)	(55,315,816,667)
	체육시설	1,402,919,618,530	1,368,910,461,260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31,231,179,021)	(131,039,711,843)
	사회복지시설	1,412,587,457,918	1,410,245,410,798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180,663,912,317)	(180,663,912,317)
	의료시설	656,797,488,916	404,479,530,948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7,195,751,637)	(115,938,367,961)
	교육시설	837,579,382,928	798,913,556,628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22,257,977,751)	(122,107,630,835)
	기타주민편의시설	3,979,164,345,619	269,251,285,578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714,271,573,740)	(25,524,614,434)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147,958,189,437	300,127,201,087
	V.사회기반시설	71,511,335,329,850	58,866,926,872,496
	도로	56,494,602,458,303	54,776,579,792,507
	도로사용수익권	(254,261,372,977)	(254,261,372,977)
	도시철도	2,223,252,941,171	110,596,914,685
	도시철도사용수익권	(618,665,274,514)	
	상수도시설	7,627,899,488,785	1,773,064,916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2,609,642,301,821)	(1,145,363,904)
	수질정화시설	984,949,832,649	44,987,443,196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63,281,760,472)	(1,104,678,277)
	하천부속시설	3,475,109,009,640	3,469,196,802,301
	폐기물처리시설	165,292,949,814	165,292,949,814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2,743,766,954)	(2,743,766,954)
	재활용시설	232,136,934,890	232,136,934,890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76,049,447,574)	(76,049,447,574)
	농수산기반시설	157,862,415,300	157,862,415,300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7,480,760,452)	(7,480,760,452)
	기타사회기반시설	57,572,073,262	57,419,839,286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5,257,734,747)	(25,130,638,571)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750,039,645,547	218,996,744,310
	VI.기타비유동자산	748,662,065,721	540,876,268,623
	보증금	259,146,552,799	250,247,024,209
	무형자산	93,449,961,036	59,016,796,557
	기타비유동자산	396,065,551,886	231,612,447,857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30,890,189,318			
(4,024,742,875)			
1,111,141,340			
(261,544,878)			
16,724,386,516			
(196,950,076)			
33,240,984,430	768,172,840		
(113,538,713)	(77,928,465)		
2,342,047,120			
252,292,011,458	25,946,510		
(31,249,906,567)	(7,477,109)		
38,358,235,300	307,591,000		
(22,184,000)	(128,162,916)		
3,709,913,060,041			
(688,746,959,306)			
847,830,988,350			
7,527,711,371,753	1,575,250,250	5,115,121,835,351	
1,718,017,979,796	4,686,000		
2,112,656,026,486			
(618,665,274,514)			
1,257,608,870		7,624,868,814,999	
(2,360,376)		(2,608,494,577,541)	
939,306,389,453	656,000,000		
(61,521,087,195)	(655,995,000)		
4,341,649,089	1,570,558,250		
54,166,976	98,067,000		
(29,030,176)	(98,066,000)		
3,432,295,303,344		98,747,597,893	
201,789,179,721	2,916,253,112	3,080,364,265	
6,291,704,190	2,607,824,400		
32,474,353,590	308,428,712	1,650,382,177	
163,023,121,941		1,429,982,088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부채와 순자산 총계)		126,711,657,848,081	91,257,377,896,200
(부채 총계)		7,700,450,900,843	1,953,581,035,075
부 채	I.유동부채	2,420,625,124,622	1,314,739,319,032
	단기차입금	7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63,075,604,470	
	기타유동부채	1,787,549,520,152	1,314,739,319,032
	II.장기차입부채	2,843,900,027,980	520,000,000,630
	장기차입금	803,043,287,350	
	지방채증권	2,040,856,740,630	520,000,000,630
	III.기타비유동부채	2,435,925,748,241	118,841,715,413
	퇴직급여충당부채	19,148,820,349	15,406,459,688
	기타비유동부채	2,416,776,927,892	103,435,255,725
(순자산 총계)		119,011,206,947,238	89,303,796,861,125
순자산	I.고정순자산	98,644,440,722,864	82,355,793,649,395
	II.특정순자산	6,038,065,656,089	1,679,736,927,307
	III.일반순자산	14,328,700,568,285	5,268,266,284,423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8,096,501,159,014	6,256,346,549,795	5,366,328,738,759	(4,264,896,495,687)
7,136,717,877,638	2,190,923,359,048	284,727,095,150	(3,865,498,466,068)
1,119,752,870,195	438,650,671,155	88,072,079,415	(540,589,815,175)
70,000,000,000			
596,475,220,470	438,637,475,000	68,424,000,000	(540,461,091,000)
453,277,649,725	13,196,155	19,648,079,415	(128,724,175)
3,703,094,990,350	1,752,272,687,893	193,441,000,000	(3,324,908,650,893)
2,182,238,250,350	1,752,272,687,893	193,441,000,000	(3,324,908,650,893)
1,520,856,740,000			
2,313,870,017,093		3,214,015,735	
1,958,327,014		1,784,033,647	
2,311,911,690,079		1,429,982,088	
20,959,783,281,376	4,065,423,190,747	5,081,601,643,609	(399,398,029,619)
11,388,571,431,463	5,129,119,868	4,894,946,522,138	
251,390,487,414	4,060,294,070,879	46,644,170,489	
9,319,821,362,499		140,010,950,982	(399,398,029,619)

재정운영표(기능별)

당해연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I. 사업순원가	19,929,174,224,831	6,125,410,624,505	13,803,763,600,326	-	13,803,763,600,326
일반공공행정	4,988,206,139,448	33,535,723,210	4,954,670,416,238		4,954,670,416,238
공공질서및안전	86,101,497,272	18,673,612,909	67,427,884,363		67,427,884,363
교육	3,041,043,386,278	762,747,540	3,040,280,638,738		3,040,280,638,738
문화및관광	509,272,321,908	218,419,725,789	290,852,596,119		290,852,596,119
환경보호	1,584,532,085,332	1,678,290,164,991	(93,758,079,659)		(93,758,079,659)
사회복지	7,052,210,299,884	3,364,289,718,185	3,687,920,581,699		3,687,920,581,699
보건	365,870,173,968	135,906,399,877	229,963,774,091		229,963,774,091
농림해양수산	15,928,333,395	2,981,465,124	12,946,868,271		12,946,868,271
산업·중소기업	249,378,515,262	107,937,170,957	141,441,344,305		141,441,344,305
수송및교통	1,598,971,518,153	294,101,093,626	1,304,870,424,527		1,304,870,424,527
국토및지역개발	436,821,316,660	270,512,802,297	166,308,514,363		166,308,514,363
과학기술	838,637,271		838,637,271		838,637,271
II. 관리운영비			6,231,864,810,902	(4,409,372,784,383)	1,822,492,026,519
1. 인건비			1,565,830,075,560		1,565,830,075,560
급여			1,210,806,848,341		1,210,806,848,341
복리후생비			278,977,370,992		278,977,370,992
기타인건비			66,270,516,280		66,270,516,280
퇴직급여			9,775,339,947		9,775,339,947
2. 경비			136,989,170,370		136,989,170,370
도서구입및인쇄비			1,962,333,040		1,962,333,040
소모품비			5,130,594,383		5,130,594,383
홍보및광고비			253,186,150		253,186,150
지급수수료			5,638,727,143		5,638,727,143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08,843,463		508,843,463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426,805,100		426,805,10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6,618,664,180		6,618,664,180
기타자산수선유지비			8,101,500		8,101,500
교육훈련비			95,946,930		95,946,930
제세공과금			17,849,031,585		17,849,031,585
보험료및공제료			2,794,178,446		2,794,178,446
임차료			(39,313,371)		(39,313,371)
출장비			13,786,366,357		13,786,366,357
업무추진비			4,831,315,883		4,831,315,883
행사비			47,052,300		47,052,300
위탁대행사업비			802,710,191		802,710,191
연료비			3,627,022,878		3,627,022,878
원·정수구입비			1,669,452,890		1,669,452,890
기타운영비			70,978,151,322		70,978,151,322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3.정부간이전비용			230,137,406,552		230,137,406,552
시도비보조금			(9,003,395,448)		(9,003,395,44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9,140,802,000		239,140,802,000
4.민간등이전비용			4,298,908,158,420	(4,409,372,784,383)	(110,464,625,963)
민간보조금			255,522,800		255,522,800
전출금비용			4,298,619,182,320	(4,409,372,784,383)	(110,753,602,063)
Ⅲ.비배분비용			1,325,690,799,730	(42,213,561,700)	1,283,477,238,030
1.운영비			139,177,918,711	(42,213,561,700)	96,964,357,011
이자비용			139,177,918,711	(42,213,561,700)	96,964,357,011
2.기타비용			1,186,512,881,019		1,186,512,881,019
자산처분손실			8,742,275,405		8,742,275,405
자산손상차손			413,585,731,564		413,585,731,564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43,388,388,715		143,388,388,715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226,698,776,522		226,698,776,522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22,667,022,159		22,667,022,159
무형자산상각비			15,420,226,428		15,420,226,428
대손상각비			322,097,153,128		322,097,153,128
기타비용			33,913,307,098		33,913,307,098
Ⅳ.비배분수익			1,026,517,523,332	(42,213,561,700)	984,303,961,632
1.자체조달수익			842,162,331,041	(42,213,561,700)	799,948,769,341
경상세외수익			135,259,788,065	(42,213,561,700)	93,046,226,365
임시세외수익			706,902,542,976		706,902,542,976
2.기타수익			184,355,192,291		184,355,192,291
전입금수익			364,847,617,000		364,847,617,000
대손충당금환입			1,185,255,208		1,185,255,208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81,175,327		281,175,327
기타비배분수익			(181,958,855,244)		(181,958,855,244)
V.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0,334,801,687,626	(4,409,372,784,383)	15,925,428,903,243
Ⅵ.일반수익			21,848,379,537,490	(4,409,372,784,383)	17,439,006,753,107
1.자체조달수익			17,118,202,710,352		17,118,202,710,352
지방세수익			16,789,588,906,908		16,789,588,906,908
경상세외수익			11,555,816,300		11,555,816,300
임시세외수익			317,057,987,144		317,057,987,144
2.정부간이전수익			301,822,952,558		301,822,952,558
지방교부세수익			135,677,077,000		135,677,077,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166,145,875,558		166,145,875,558
3.기타수익			4,428,353,874,580	(4,409,372,784,383)	18,981,090,197
전입금수익			4,422,376,970,213	(4,409,372,784,383)	13,004,185,830
기타일반수익			5,976,904,367		5,976,904,367
Ⅶ.재정운영결과(V-Ⅵ)			(1,513,577,849,864)		(1,513,577,849,864)

순자산변동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I. 기초순자산	116,830,486,106,661	88,942,862,202,123
II.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513,577,849,864)	43,630,848,321
III. 순자산의 증가	1,037,508,195,719	406,476,405,490
1. 전기오류수정이익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9,653,468,375	79,130,900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77,375,739,151	38,614,400,818
5. 기타순자산의증가	950,478,988,193	367,782,873,772
IV. 순자산의 감소	370,365,205,006	1,910,898,167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9,653,468,375	79,130,900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83,457	82,457
5. 기타순자산의감소	360,711,653,174	1,831,684,81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19,011,206,947,238	89,303,796,861,125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19,538,126,637,577	3,627,125,321,225	5,121,769,975,355	(399,398,029,619)
(1,124,316,990,049)	(458,030,899,619)	25,139,191,483	
581,114,590,582	343,110,587	49,574,089,060	
9,574,337,475			
38,761,338,333			
532,778,914,774	343,110,587	49,574,089,060	
283,774,936,832	20,076,140,684	64,603,229,323	
9,574,337,475			
1,000			
274,200,598,357	20,076,140,684	64,603,229,323	
20,959,783,281,376	4,065,423,190,747	5,081,601,643,609	(399,398,029,61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등)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4호(2016.12.8)로 변경결정된 우리시 중구 예장동 4-1번지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공공재생과(2133-8705)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주차장, 도로)
- 명 칭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의 60필지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사업기간 : 2017. 7. ~ 2018. 8. 31.

마.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경관광장 : 13,201.8㎡
 - 전체 경관광장 면적(14,803.4㎡) 중 설계 진행중인 남산연결교량 부분(1,601.6㎡)는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주 차 장 : 5,434.1㎡

○ 도 로

- 대로 1-4(보조간선도로) : 폭 4m, 연장 68m
- 대로 1-9(보조간선도로) : 폭 4m, 연장 123m
- 중로 1-38(국지도로) : 폭 8~15m, 연장 166m
- 중로 1-A(집산도로) : 폭 22m, 연장 99m
- 중로 1-B(국지도로) : 폭 24.5m, 연장 118m
- 소로 2-A(특수도로) : 폭 7~10m, 연장 32m
- 소로 2-B(국지도로) : 폭 5~9m, 연장 76m

바.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사업면적 (㎡)	시 설 계 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총 수 (지하/지상)	
18,054.20	329.20㎡ (2.49%)	9,513.82㎡ (1.07%)	1 / 1	경관광장, 도로, 관광버스주차장(버스39면+일반2면), 관리실, 남여 화장실, 근린생활시설, 메모리얼 광장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46,025.7	18,054.2		
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	대지	9,005.5	131.6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23	대지	277.6	277.6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26	대지	29.8	29.8	기획재정부	
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51	대지	455.2	455.2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56	대지	160.0	157.4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58	도로	167.3	114.7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02	도로	1,467.1	824.7	국토교통부	
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98	대지	407.9	10.2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26	대지	8.6	1.3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41	도로	937.2	51.3	국토교통부	
1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	대지	32.4	32.4	중구청	
1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	대지	27.1	27.1	기획재정부	
13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5	대지	224.8	224.8	기획재정부	
1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6	도로	1.6	1.6	국토교통부	
15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7	도로	2.3	2.3	국토교통부	
1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	대지	1,962.2	1,962.2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9	대지	1.3	1.3	기획재정부	
1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10	대지	3.0	3.0	기획재정부	
19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11	대지	6.0	6.0	기획재정부	
2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16	도로	23.1	18.8	기획재정부	
2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18	도로	12.9	12.9	기획재정부	
2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19	도로	1.6	1.6	국토교통부	
23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0	도로	1.6	1.6	국토교통부	
2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2	도로	60.5	60.5	국토교통부	
25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3	도로	10.6	3.9	국토교통부	
2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4	도로	180.5	93.0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5	도로	201.3	200.9	기획재정부	
2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7	도로	73.1	73.1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29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8	도로	38.0	38.0	국토교통부	
3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29	도로	274.4	77.1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0	도로	27.1	27.1	중구청	
3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1	도로	2.7	2.7	기획재정부	
33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2	도로	0.8	0.8	국토교통부	
3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3	도로	176.6	176.6	서울특별시	
35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5	도로	100.3	89.9	국토교통부	
3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36	구거	48.1	48.1	국토교통부	
37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	대지	2,449.6	2,449.6	서울특별시	
3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4	도로	23.1	6.7	국토교통부	
39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대지	537.2	276.5	서울특별시	
4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7	도로	2,448.3	1,758.9	서울특별시	
4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2	도로	7.3	0.1	중구청	
4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4	도로	142.1	142.1	서울특별시	
43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5-0	대지	297.5	297.5	서울특별시	
4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0	대지	2,592.4	1,092.4	서울특별시	
45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15	도로	1,481.4	266.7	국토교통부	
4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31	도로	17.5	17.5	국토교통부	
47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35	도로	33.1	33.1	중구청	
48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38	도로	106.3	79.2	중구청	
49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0	대지	20.8	18.1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24	대지	210.9	138.3	서울특별시	
5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2	도로	81.7	4.9	국토교통부	
5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58	대지	14.2	13.8	서울특별시	
53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5-1	도로	6,990.6	3,951.1	서울특별시	
54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5-5	도로	629.8	629.8	기획재정부	
55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6-13	도로	129.0	83.1	국토교통부	
56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21-0	도로	3,714.4	480.4	국토교통부	
57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21-2	도로	965.3	618.0	서울특별시	
58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47-1	도로	3,253.7	216.7	서울특별시	
59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49-25	도로	116.0	8.2	서울특별시	
60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5-9	도로	2,283.6	90.2	서울특별시	
61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6-3	도로	1,069.80	140.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체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천호재정비촉진계획(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96.3	-	409,096.3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100.0
획 지	소 계	282,862.9	-	282,862.9	69.1
	공동주택용지	45,688.7	-	45,688.7	11.1
	근린생활시설용지	33,348.3	-	33,348.3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0	-	453.0	0.1
	존 치	175,862.9	-	175,862.9	43.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26,233.4	-	126,233.4	30.9
	유 수 지	10,626.6	-	10,626.6	2.6
	녹 지	2,306.0	-	2,306.0	0.6
	공공청사	1,406.2	-	1,406.2	0.3
	공 원	33,101.7	-	33,101.7	8.1
	도 로	78,792.9	-	78,792.9	19.3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20,110인 / 8,490세대)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61	증) 29	8,490	20,037	증) 73	20,110	-
촉진 구역	소 계	1,695	증) 29	1,724	4,238	증) 73	4,311	세대당 약2.5인
	40㎡ 이하	23	증) 27	50	57	증) 68	125	
	40㎡~60㎡	773	감) 84	689	1,933	감) 210	1,723	
	60㎡~85㎡	714	증) 101	815	1,785	증) 253	2,038	
	85㎡ 초과	185	감) 15	170	463	감) 38	425	
존치관리구역		6,766	-	6,766	15,799	-	15,799	현황인구 및 세대

※ 천호3구역 계획용적을 증가(233.29%→248.45%)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23세대→50세대, 증:27세대)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07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2,306.0	－	2,306.0	13.12.12	천호3구역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38,508.2	－	38,508.2	－	
	천호2구역	10,106.8	－	10,106.8	－	
	천호3구역	23,087.6	－	23,087.6	－	
존치 지역	존치 관리 구역	천호4구역	15,503.7	－	15,503.7	－
		천호5구역	50,792.3	－	50,792.3	－
		천호6구역	40,201.3	－	40,201.3	－
		천호7구역	117,313.2	－	117,313.2	－
		천호11구역	10,840.9	－	10,840.9	－
		천호12구역	6,402.2	－	6,402.2	－
		천호13구역	24,682.2	－	24,682.2	－
		천호14구역	13,980.4	－	13,980.4	－
	존치시설 등		57,677.5	－	57,677.5	올림픽로, 천호공원 등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 3)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 : 도서참조

자. 용도지역·지구계획

- 1)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508.2	-	38,508.2	100.0
주거지역	소 계	31,925.2	-	31,925.2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4,521.2	11.7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71.2
상업지역	소 계	6,583.0	-	6,583.0	17.1
	일반상업지역	6,583.0	-	6,583.0	17.1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0,106.8	-	10,106.8	100.0
주거지역	소 계	10,106.8	-	10,106.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06.8	-	10,106.8	100.0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3,087.6	-	23,087.6	100.0
주거지역	소 계	23,087.6	-	23,087.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4.8	-	1,914.8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72.8	-	21,172.8	91.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 분	구역명	주 된 용 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공동주택, 판매·업무	50%이하	350	518	- / 40	135
	천호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0	300	- / 23	70
	천호3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18 / 21	66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 / 25	78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 고
총 계	71,702.6	22,660.1	1,299.0	6,705.4	-	14,655.7 (20.40%)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38,058.2	15,186.5	-	4,969.2	-	10,217.3 (26.50%)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10,106.8	3,492.8	1,223.7	184.0	-	2,085.1 (20.60%)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23,087.6	3,980.8	75.3	1,552.2	-	2,353.3 (10.19%)	-

※ 계획기반시설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천호3)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분담		비 고
				소 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구)	민간	
도로	촉진 구역	천호1구역	6,477.0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3,492.8	21,869	20,788	1,081	-	●	
		천호3구역	427.1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4,195.4	8,809	8,514	295	-	●	천호3구역 부담
	소 계		14,592.3	81,156	77,053	4,103	-	-	-
공원 녹지	촉진 구역	천호1구역	3,115.0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2,306.0	20,359	19,931	428	-	●	
	소 계		5,421.0	39,495	38,621	874	-	-	-
공공 청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전 해당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계획 승인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가능

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분 양				임 대				
			소 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695	1,523	624	714	185	172	23	119	30	-
	변경	1,724	1,525	540	815	170	199	50	119	3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 촉진구역	기정	502	479	237	224	18	23	23	-	-	-
	변경	531	481	153	325	3	50	50	-	-	-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기	대상지역	비 고
1단계	2005~201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천호3구역	구역별 촉진사업 시행 소로2-16호선 조성
2단계	2009~2022	천호4구역, 천호5구역, 천호6구역, 천호7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기타	2005~2022	기타 존치구역(천호11~14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 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 시기를 맞추어 다음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평균			최고높이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 촉진 구역	천호1	38,508.2	50이하	50이하	518이하	518.98	514.98	-	-	-	-	40층(135m)이하
	천호2	10,106.8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4.96	299.56	-	-	-	-	23층(70m)이하
	천호3	기정	23,087.6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33.29	-	-	18층이하	21층(66m)이하
		변경	23,087.6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48.45	-	-	-	25층(78m)이하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695	1,523	624	714	185	172	23	119	30	-
	변경	1,724	1,525	540	815	170	199	50	119	3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 촉진구역	기정	502	479	237	224	18	23	23	-	-	-
	변경	531	481	153	325	3	50	50	-	-	-

3) 정비계획

가)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천호3구역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23,087.6	-	23,087.6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087.6	－	23,087.6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733.1	－	2,733.1	11.84%	－
	도 로	427.1	－	427.1	1.85%	－
	녹 지	2,306.0	－	2,306.0	9.99%	－
택지 (획지)	소 계	20,354.5	－	20,354.5	88.16%	－
	획지1	19,901.5	－	19,901.5	86.20%	공동주택부지
	획지2	453.0	－	453.0	1.96%	종교부지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2009.11.26	-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423-96번지 일원	2,306.0	-	2,306.0	2013.12.12 (서고2013-421)	-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㉞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3재정비 촉진구역	23,087.6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139	-	-	139	-	-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㉟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용적률	계획 용적률	
기정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087.6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46,428.6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51	233.29	최고66m (21층)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	종교시설	50 이하	200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02 (100.0%)		479		23			
			전용 60㎡이하		260 (51.8%)		237		23			
			전용 60㎡~85㎡이하		224 (44.6%)		224		-			
			전용 85㎡초과		18 (3.6%)		18		-			
심의 완화사항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 18층 이하 적용 - 최고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반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변경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	23,087.6	획지1	19,901.5	천호동 423-76번지 일원	49,445.9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이하	221.51	248.45	최고78m (25층)이하
			획지2	453.0	천호동 359-5번지 일원	-	종교시설	50 이하	200이하			최고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합계(비율)		분양	소형주택(장기전세)				
			합계		531 (100.0%)		481		50			
			전용 60㎡이하		203 (38.2%)		153		50			
			전용 60㎡~85㎡이하		325 (61.2%)		325		-			
			전용 85㎡초과		3 (0.6%)		3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2선변(3m)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명칭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23,087.6	획지1	천호동 423-76번지일원	19,901.5	주택용지
			획지2	천호동 359-5번지일원	453.0	종교용지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구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기정	계획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172.43	1,206.81	23	전용면적 60㎡이하
	변경	2,681.08	2,832.50	50	전용면적 60㎡이하

나)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 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올림픽로	-	2009.11.30. (서고2009-472)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 도로		2009.11.26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2006.2.8 (서고제2006-49) 2009.1.2 (서고제2008-508)	천호1·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 도로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 도로		2005.10.13 (강고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 도로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 도로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 도로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73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 도로		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 도로		90.11.12	천호6구역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4,521.2	-	4,521.2	-	천호1구역

나) 공간시설

① 공원·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16.09.08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2,306.0	－	2,306.0	13.12.12	천호3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라) 방재시설

①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7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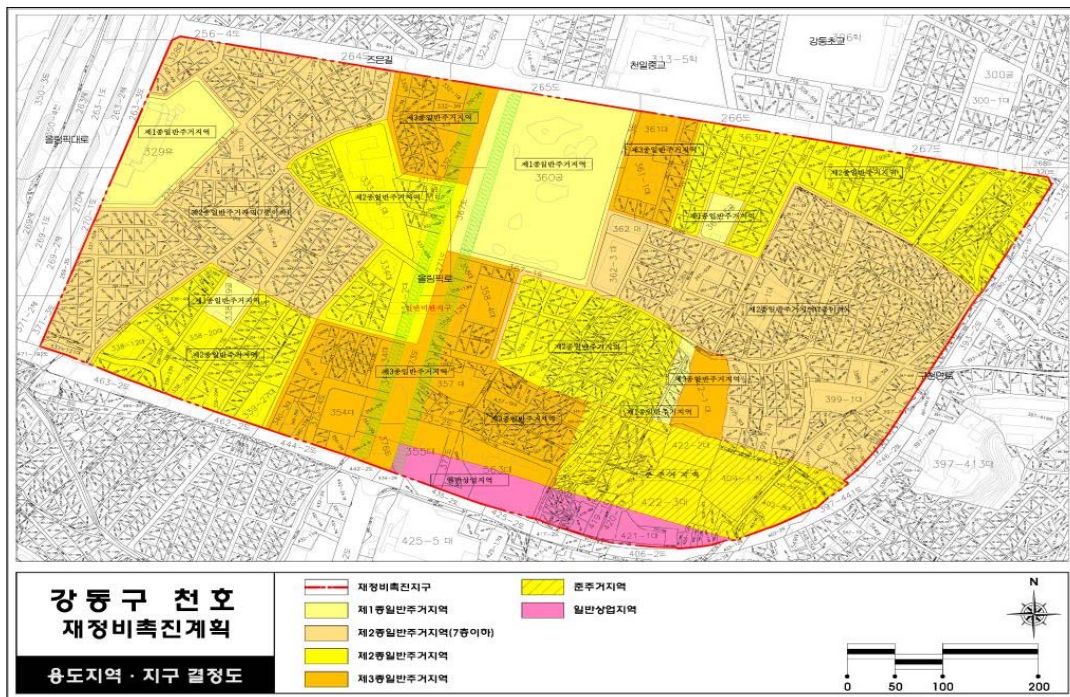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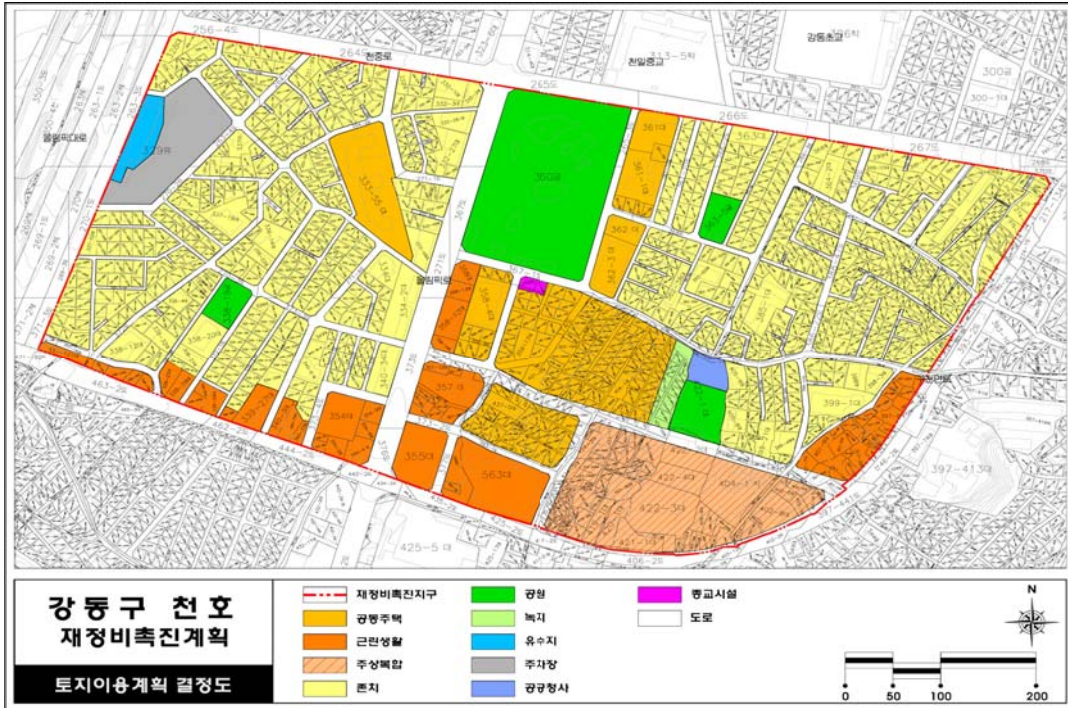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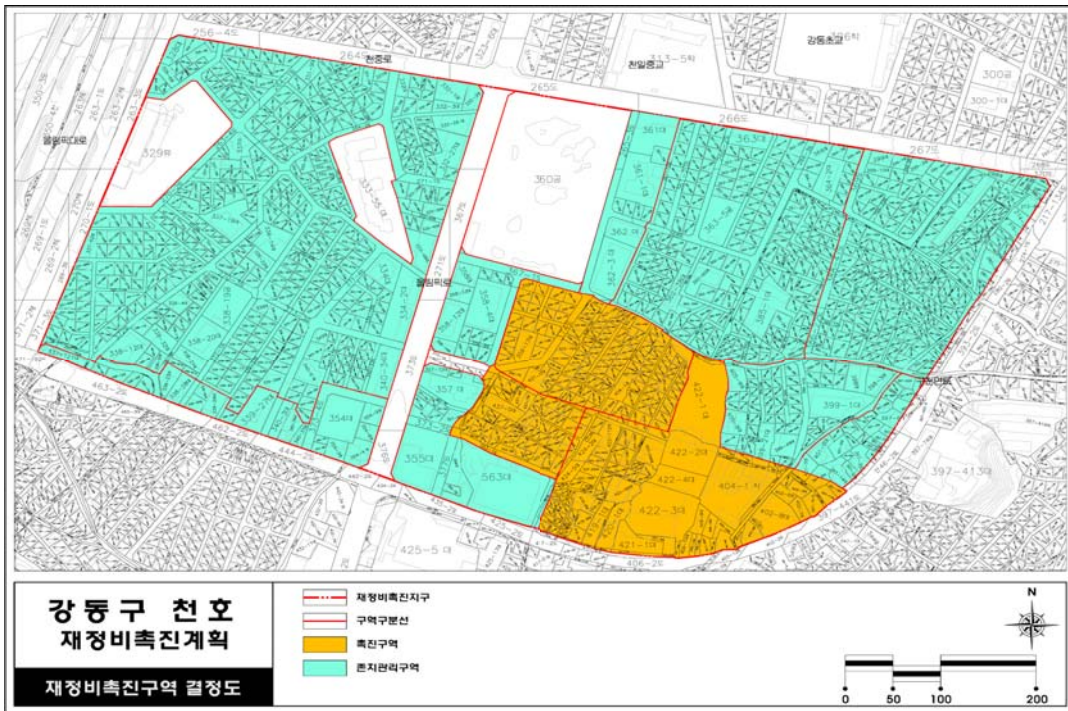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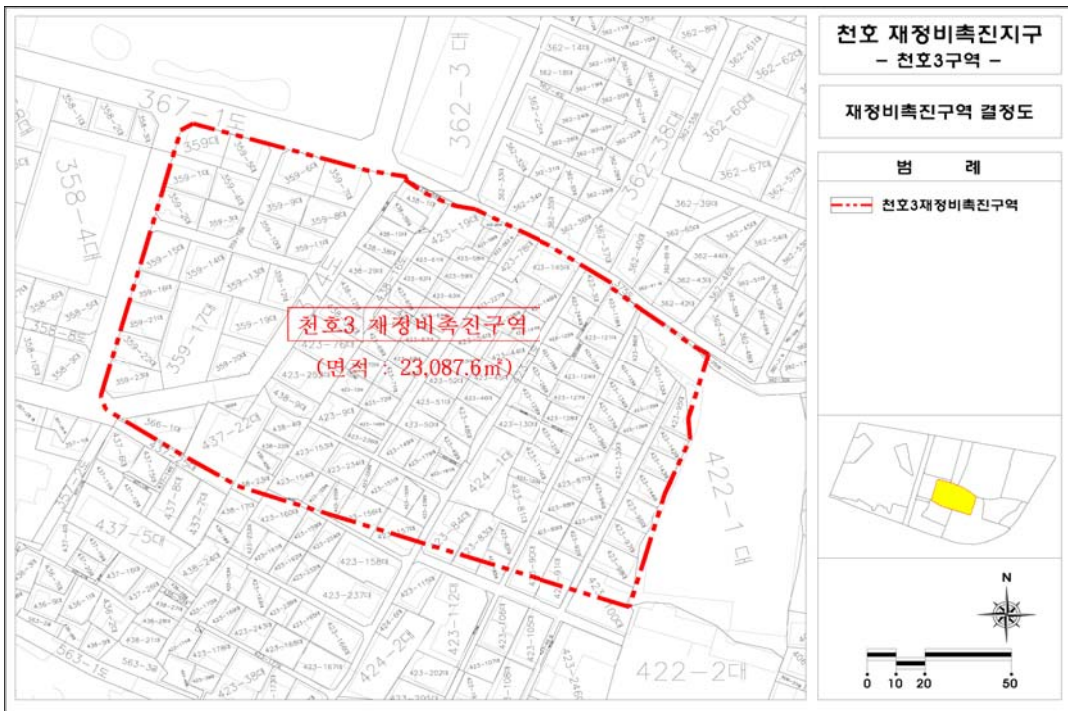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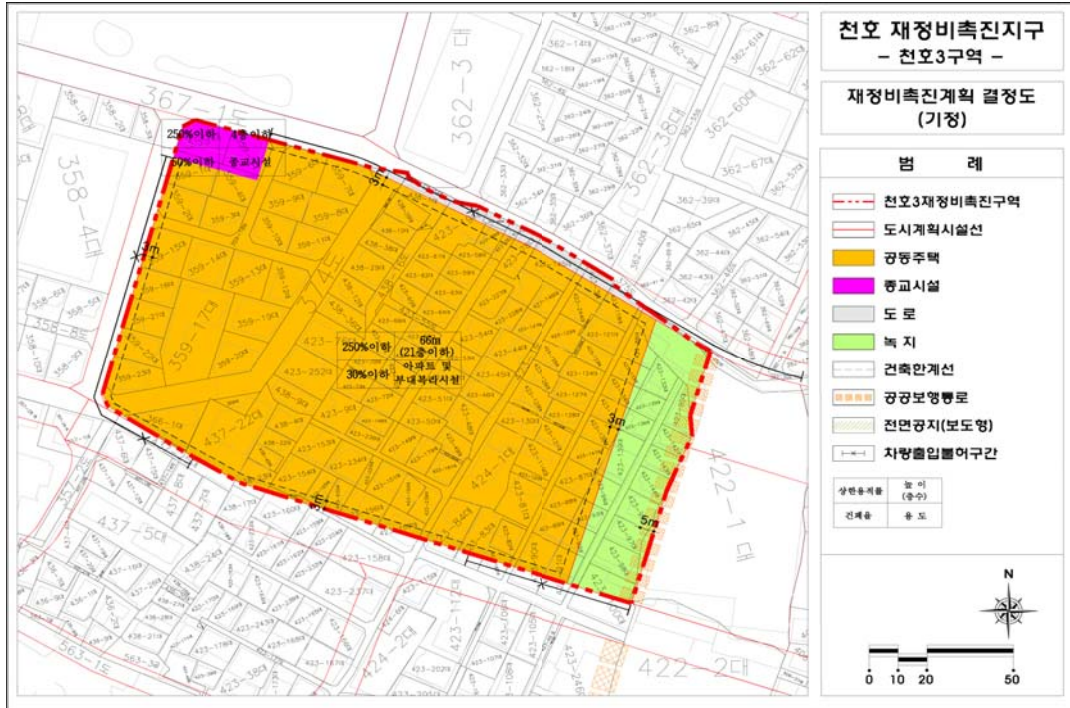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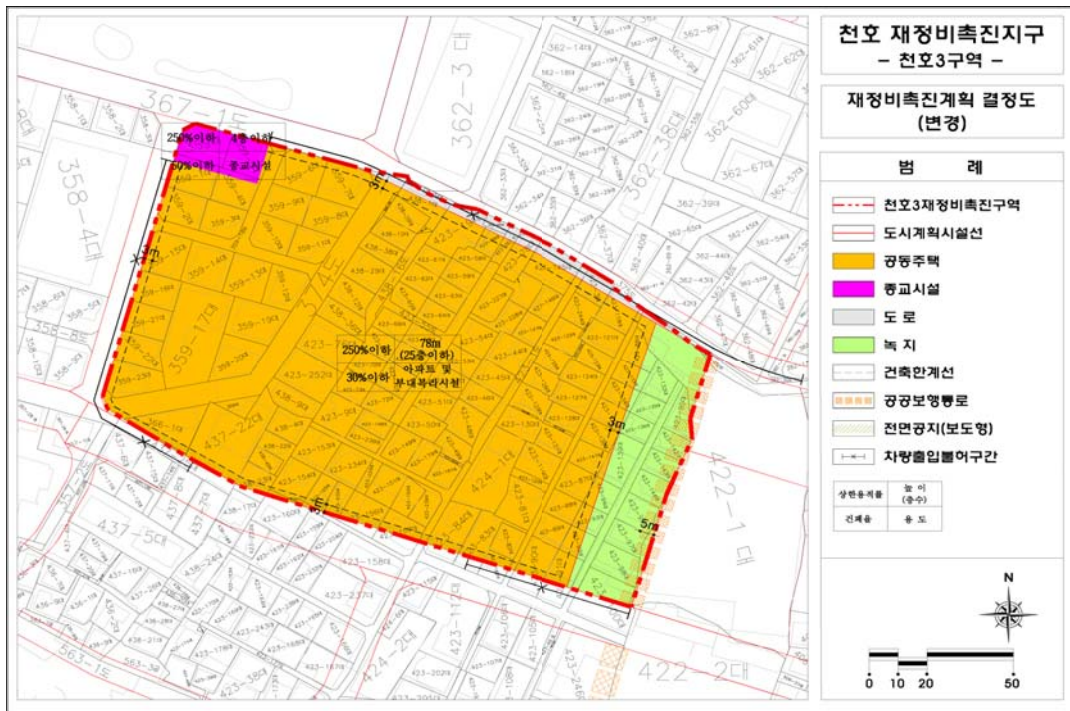
[천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천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천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7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3호(2009.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호(2011.5.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및 동작구 고시 제2015-44(2015.6.18.)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33,693.8	-	33,693.8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693.8	-	33,693.8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3,693.8	-	33,693.8	100.0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33,693.8	－	33,693.8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9,636.0	－	9,636.0	28.6	
	도 로	7,946.5	－	7,946.5	23.6	
	공 원	1,689.5	－	1,689.5	5.0	소공원
	체육시설 (수영장)	－	1,446.05 (2,540.34)	1,446.05 (2,540.34)	－	소공원 지하에 설치 환산부지면적(연면적)
획 지(공동주택용지)		24,057.8	－	24,057.8	7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11	국지 도로	690	사당동 150-5	사당동 176-50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5	국지 도로	74	사당동 170-25	사당동 170-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	8~25	집산도 로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22-21	일반 도로	-	-	구역내폭원확장 (폭10~20m→25m , 연장=363m)
기정	대로	3		22~27	국지 도로	192	사당동 164-641	사당동 162-61	일반 도로	-	-	-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1,689.5	-	1,689.5	· 구역면적(33,693.8㎡)의 5% · 계획세대수(668세대)*2㎡ =1,336㎡
변경	-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1,689.5	-	1,689.5	소공원지하에 설치 · 부지환산면적 : 1,446.05㎡ · 체육시설(수영장) : 2,540.34㎡
			체육시설 (수영장)		-	1,446.05 (2,540.34)	1,446.05 (2,540.34)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법 정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①	40.9이상	190.07	-	190.07	지하
	경로당		90.9이상	122.48	-	122.48	지상
	어린이집		171.6이상	187.38	-	187.38	지상
	주민공동시설		53.59이상	7,435.04	-	7,435.04	지하
	작은도서관		33이상	135.03	-	135.03	지하
	주민운동시설		426이상	589.62	-	589.62	지상
	근린생활시설		4,008이하	1,412.24	-	1,412.24	지상/지하
	어린이놀이터		868이상	946.15	-	946.15	지상(3개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693.8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181	-	-	181	-	신축:8동 주거동:6동 근생시설:2동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정 상한	
기정	사당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33,693.8	사당동 167-19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 설	40 이하	249.99	299	2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668 (70)	100.00			
			60㎡ 이하	158 (70)	23.65			
			60~85㎡이하	486	72.76			
85㎡ 초과			24	3.59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96.41%						
건축물 높이완화에 대한 계획		●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등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해 수평거리의 1.8배까지 사선제한 완화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변경없음)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획 정비기반 시설
		33,693.8㎡	24,057.8㎡	9,636㎡ (무상양여 토지 3,132㎡ 포함)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9,636㎡ - 3,132㎡ = 6,504㎡ ※ 무상양도면적 = 3,132㎡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49.99%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190% × (1+1.3×0.2704) = 256.78%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6,504㎡ / 24,057.8㎡ = 0.2704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		

5)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구역면적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정비구역 내	33,693.8㎡	24,057.8㎡	5,943.7㎡	70세대	59.98㎡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577호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재건축소형주택이 69에서 70세대로 변경되었음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99%	
		정비계획 용적률	249.99%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5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 24.51% × 24,057.8㎡ = 5,896.57㎡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5,943.7㎡ • 세대수 : 70세대 - 전용 59.98㎡ - 공급 59A(35세대)84.21㎡/59B(35세대)85.61㎡		기준 이상 확보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473세대 계획:668세대 (소형주택70세대포함) 증) 195세대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도서 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동작구청 주택과(☎ 02-820-138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있음)

• 기정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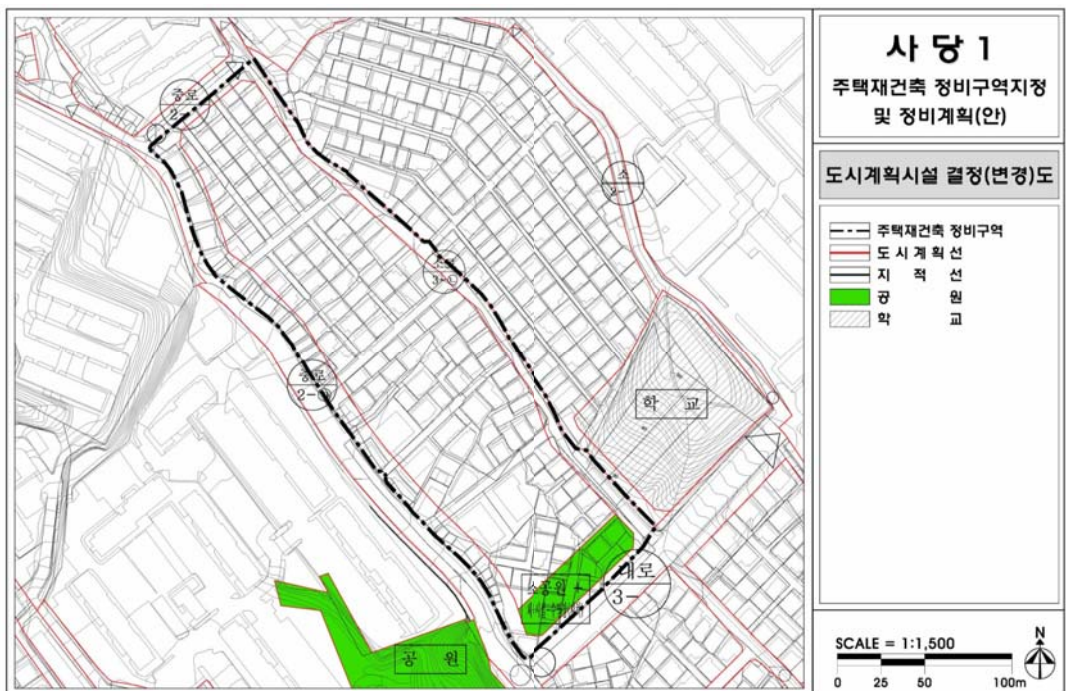


2)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변경있음)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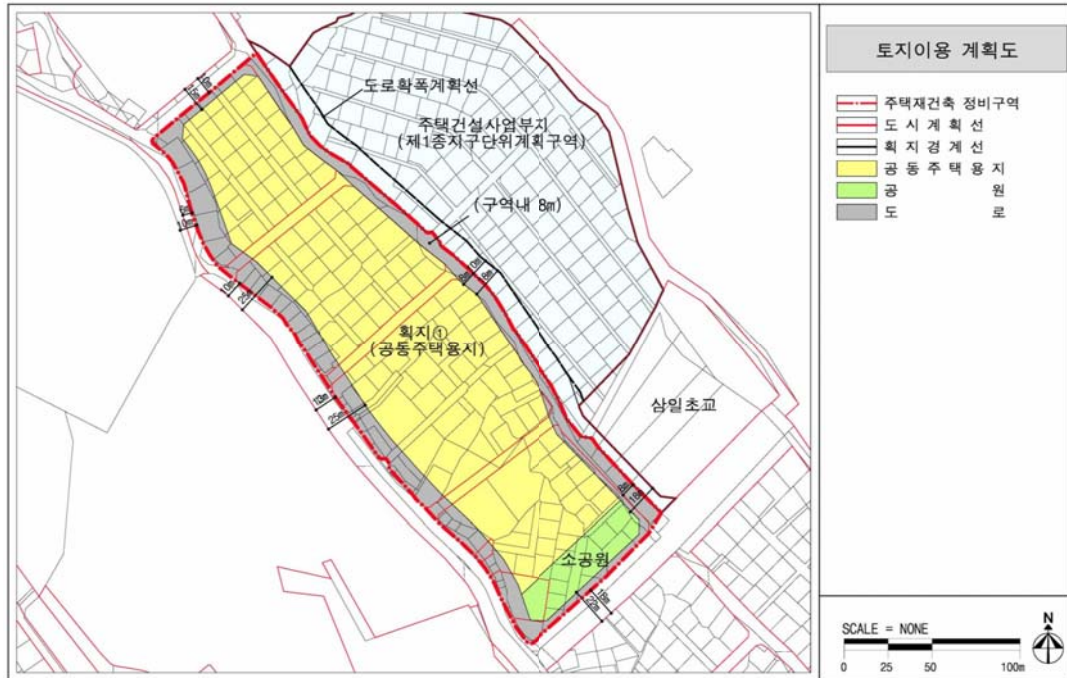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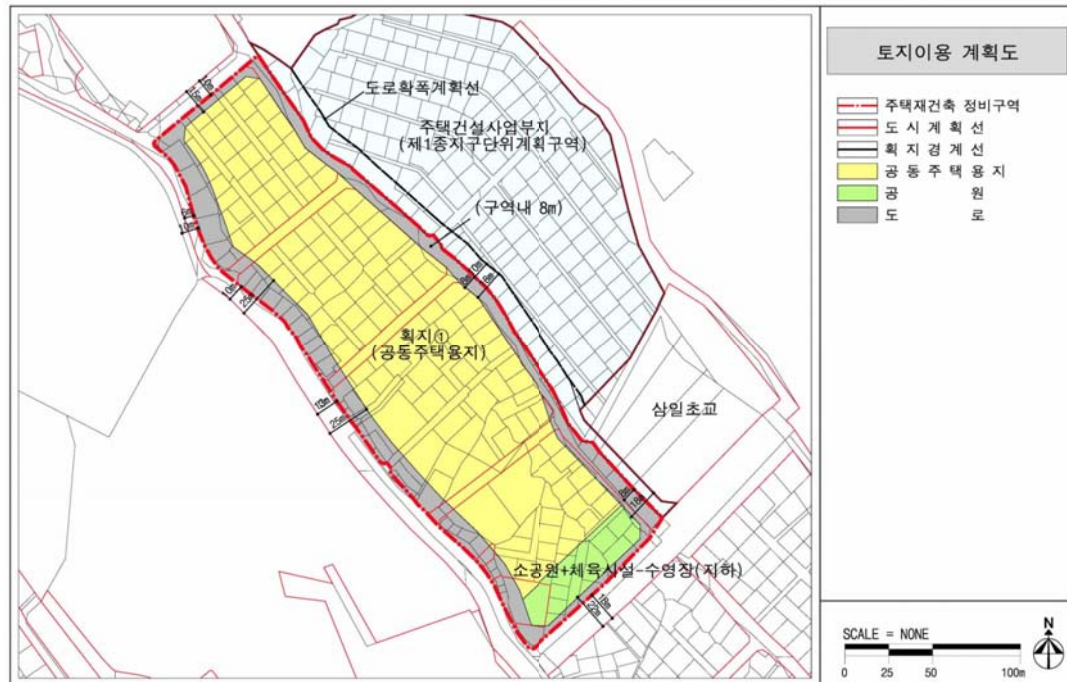


3)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있음)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가톨릭대학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02호(2005.07.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3호(2013.03.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일대 가톨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초구 반포동 505일대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구분, 밀도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 학 (가톨릭대학교)	서초구 반포동 505 일대	110,147	-	110,147	서울시고시 제2005-202호 (2005.07.14)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구 역	구 분	면 적(㎡)
일반관리구역	①	39,604.0	외부활동구역	④	2,927.0
	②	36,000.0			
소 계		75,604.0	소 계		2,927.0
상징경관구역	③	8,792.0	녹지보존구역	⑤	6,348.0
				⑥	16,476.0
소 계		8,792.0	소 계		22,824.0
합 계		110,147.0			

※ 상징경관구역 : 향후 기존 의과대학 철거 후 학생과 병원환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

(2) 밀도계획(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기준 면적(㎡)	법정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147	50.0	33.3	37.7	40.0	

※ 기정 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3호(2013.03.14.)의 변경(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구역면적 (㎡)	용적률 (%)					관리 높이(m)	비 고
		법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 정	변 경				
①	39,604	250.0	276.2	276.0	105.0	355.0	• 지표로부터 최대 50m~75m이하	외부활동구역④, 녹지보존구역⑤,⑥ 구역용적률 이전 받음
②	36,000	250.0	226.1	304.5	55.0	305.0	• 지표로부터 최대 40m~75m이하	상징경관구역③, 외부활동구역④, 구역용적률 이전 받음
③	8,792	250.0	220.0	220.0	-220.0	30.0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 가톨릭의료역사관은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상징경관구역
④	2,927	250.0	-	-	-82.1	5.0	• 지표로부터 최대 5m이하 (외부활동관련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⑤	6,348	250.0	-	-	-250.0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존구역
⑥	16,476	250.0	-	-	-250.0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존구역

※ 구역별 높이계획 : 고시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조서

구분	연번	건물 번호	건물명	용도	층수		건축면적(㎡)		지상연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구역	1	5	장례식장	의료 시설	지하2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4층	3,756.66	3,756.78	5,975.82	5,876.55	8,167.18	7,964.14	준공에 의한 면적정정
	2	7	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교육연구 및 의료시설	지하6층/ 지상22층	지하6층/ 지상22층	12,295.54	12,295.54	103,416.30	103,416.30	190,680.36	190,680.36	명칭변경
2 구역	3	3	성모병원→ 별관	의료시설	지하2층/ 지상10층	지하2층/ 지상10층	8,524.60	8,524.60	37,446.49	37,446.49	43,369.91	43,369.91	명칭변경
	4	4	기숙사→ 60주년기념관	의료, 교육연구 및 지원시설	지상4층	지하5층/ 지상10층	1,392.54	6,218.00	3,025.50	31,232.00	3,025.50	63,617.00	단기계획 (2017~2020) 철거 후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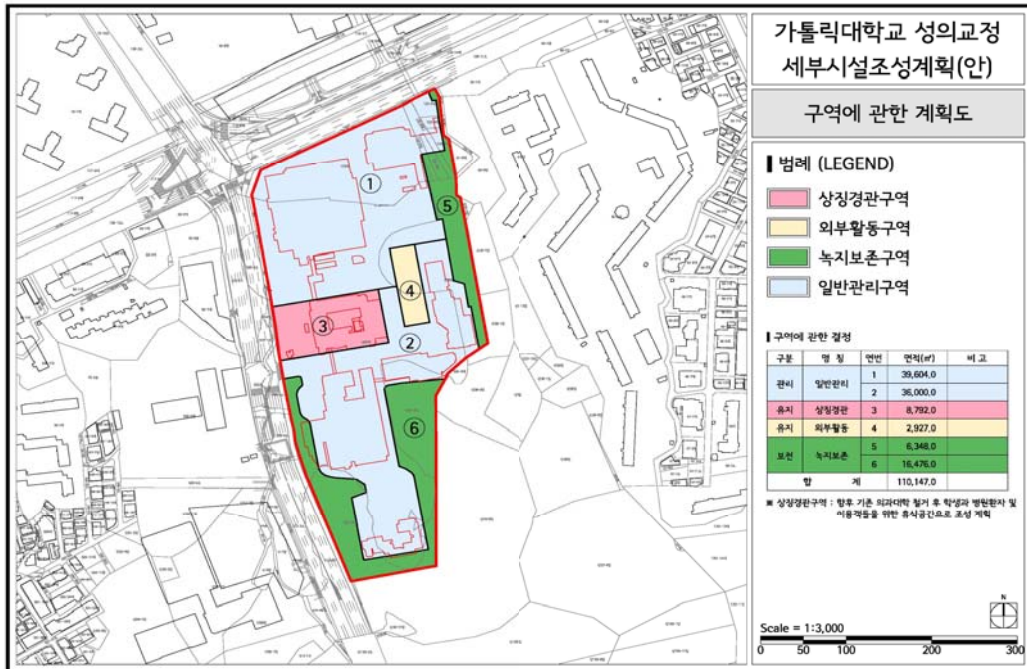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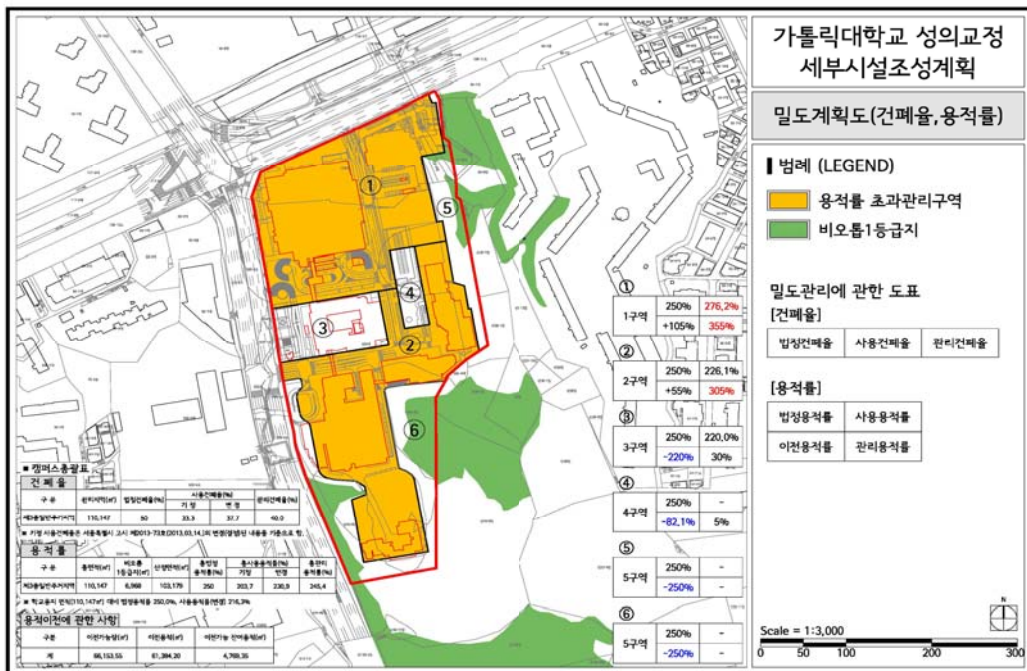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전화 2155-67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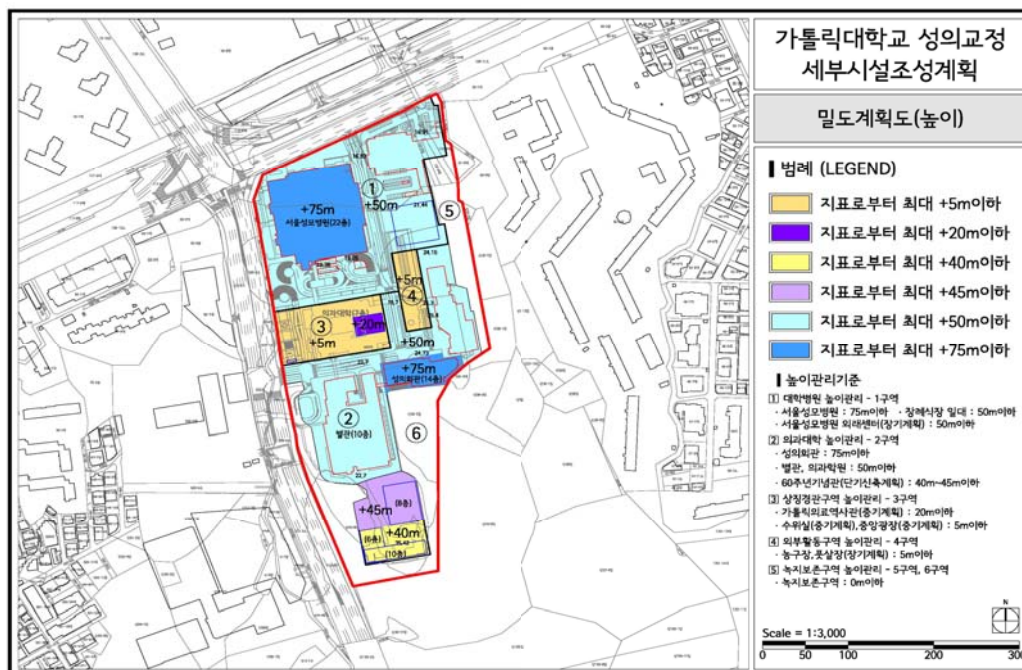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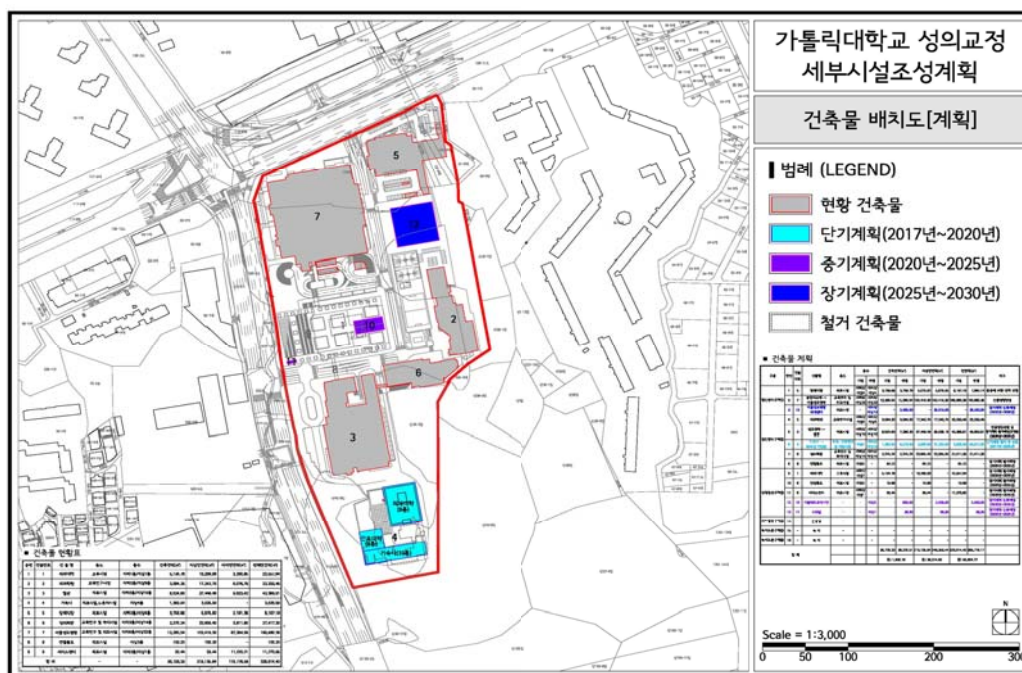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건폐율·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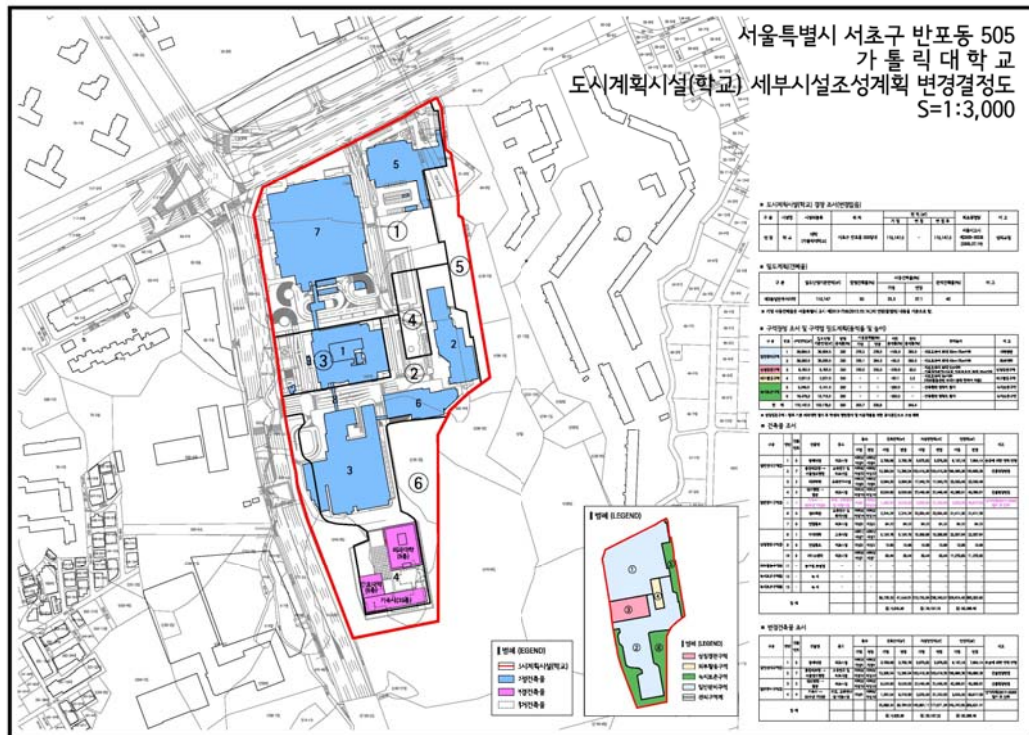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물배치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9호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를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변경 내용 : 대상지 도로 폭원 변경(북측 10m → 8m, 서측 10m → 8m)

나. 송파구 2구역(잠실우성4차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

구분	구역 번호	위치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동명	지번							
기정	2	잠실동	320	3.2	210	50	-	1	공동	북측도로 10m, 서측도로 10m
변경	2	잠실동	320	3.16	210	50	-	1	공동	북측도로 8m, 서측도로 8m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	증) 31,630.5	31,630.5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630.5	-	31,630.5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685.5	1,685.5	5.3	
	도 로	-	증) 885.5	885.5	2.8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	증) 800.0	800.0	2.5	
획지	소 계	31,630.5	감) 1,685.5	29,945.0	94.7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공동주택	31,630.5	감) 1,685.5	29,945.0	94.7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1,630.5	-	31,630.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1,630.5	-	31,630.5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95	잠실동330	잠실동341-26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	12	국지도로	195	잠실동330	잠실동341-2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89	잠실동321-15	잠실동31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189	잠실동321-15	잠실동31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81	잠실동370	잠실동322-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81	잠실동370	잠실동322-1	일반 도로	-		

주) 연장 및 기·종점은 대상지에 인접한 구간에 관한 사항임

2)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잠실동 320번지	-	증) 800	800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 로 당	획지	-	증) 250	250	
	어린이놀이터	"	-	증) 1,200	1,200	
	주민운동시설	"	-	증) 500	500	
	어린이집	"	-	증) 350	350	
	작은도서관	"	-	증) 160	160	
	기타주민공동시설	"	-	증) 1,300	1,300	
	관리사무소	"	-	증) 130	130	
	경비실	"	-	증) 100	10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1,630.5	-	-	잠실동 320번지 일대	8	-	-	8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잠실우성4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31,630.5	획지	29,945.0	잠실동 320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 이하	248.8 이하	299.7 이하	101이하 /최고32층 이하	
신설			사회 복지 시설	800.0		어린이집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916		100.0				
			60㎡ 이하		372		40.6		소형주택 122세대 (13.32%)		
			60~85㎡ 이하		504		55.0				
			85㎡ 초과		40		4.4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93.7%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8.8%) → 예정법정상한용적률(299.7%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곡로62길변 3m 지정 (유수지 측)								

3)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계	도로	국공립어린이집		
			31,630.5㎡	29,945.0㎡	1,685.5㎡ 885.5㎡ 80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토지 1,685.5㎡, 건축물(토지환산) 201.3㎡ 순부담 면적 : 1,886.8㎡(5.9%)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 용적률	210%					
	허용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20%	최대 20%			
		장수명주택	10%	우수등급 이상			
		에너지효율인증	8%	1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	20%이하~15%초과			
	개발가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230% × (1 + 1.3 × 0.0630) = 248.8%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886.8㎡ ÷ 29,945.0㎡ = 0.0630					
		건축물 기부채납 검토	$\text{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사회복지시설(별도부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800㎡ / 연면적 : 1,000㎡ － 환산부지면적 : 201.3㎡ → 공사비 × 연면적 ÷ 부지가액 = 2,577천원 × 1,000㎡ ÷ 12,800천원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특별 시)」 어린이집 공사비 (800㎡~1,000㎡) 적용 : 2,577천원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6,400천원 × 2 = 12,800천원)				
	정비계획용적률		248.8% 이하				
	예상법적상한용적률		299.7%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				
소형주택건립용적률		25.45% 이상 (299.7% - 248.8%) x 50%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주택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환경성 검토를 통한 생태면적률 확보 준수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 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 기 물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 후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 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재난방지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과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준수하여 종합계획 수립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건축계획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효율 인증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칭)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555세대 계획 : 916세대 증) 361세대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잠실우성 4차아파트 정비구역	1	29,945.0	잠실동 320번지	29,945.0	공동주택
		800.0	〃	800.0	국·공립 어린이집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획지	29,945.0	-	122세대	45㎡ : 122세대	

구 분	내 용	비 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	
정비계획용적률	• 248.8% 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1/2 = (299.7% - 248.8%) × 1/2 = 50.9% × 1/2 = 25.45%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5.45% = 29,945.0㎡ × 25.45% = 7,621㎡ 이상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45.95㎡ (공급면적 : 62.95㎡) • 세대수 122세대 - 전용 45.95㎡ : 122세대 • 소형주택 공급면적 = 7,679.9㎡ > 7,621㎡	

차. 2017년 제10차('15.06.0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용적률(정비계획 248.8%, 법적상한 299.7%), 최고층수(32층) 및 탄천변 높이계획(18~20층), 정비기반시설계획(도로 885.5㎡, 사회복지시설 800㎡(시설 기부채납 201.3㎡ 별도)), 세대수(916세대, 소형임대 122세대 포함) 등 정비계획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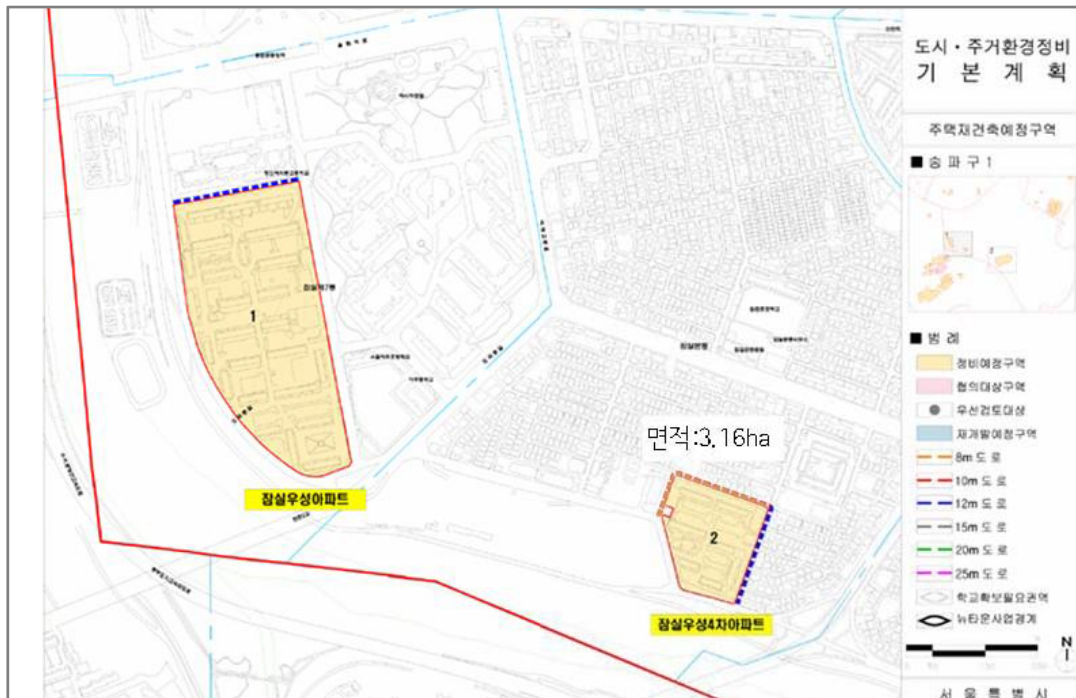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7142) 및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2147-2896)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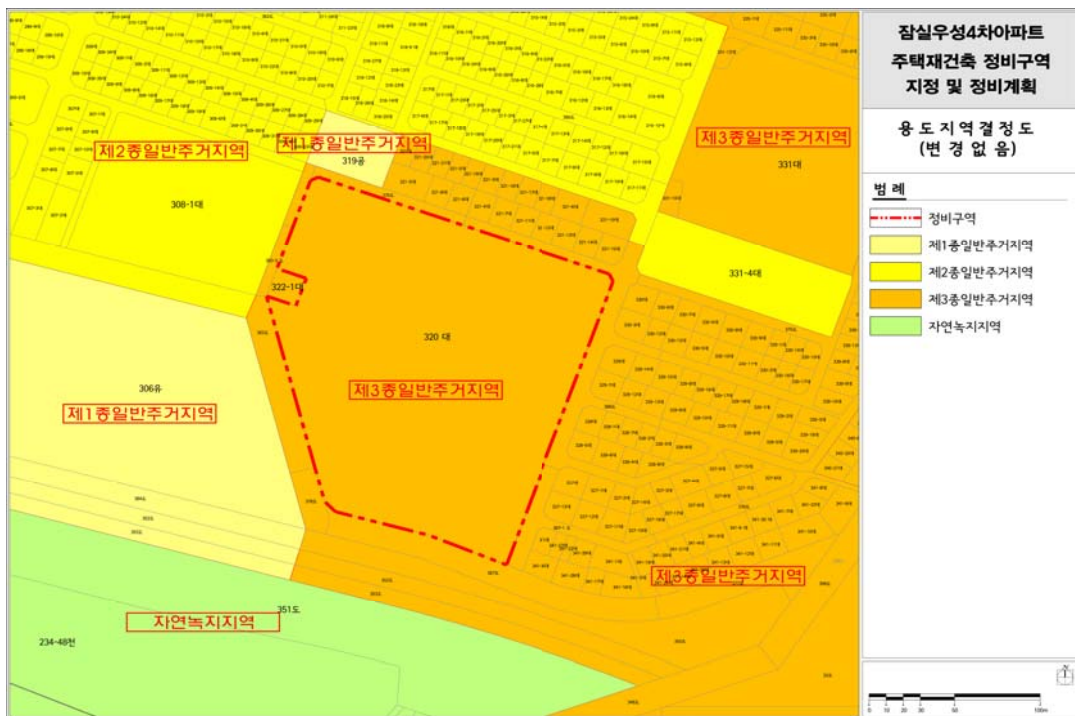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변경)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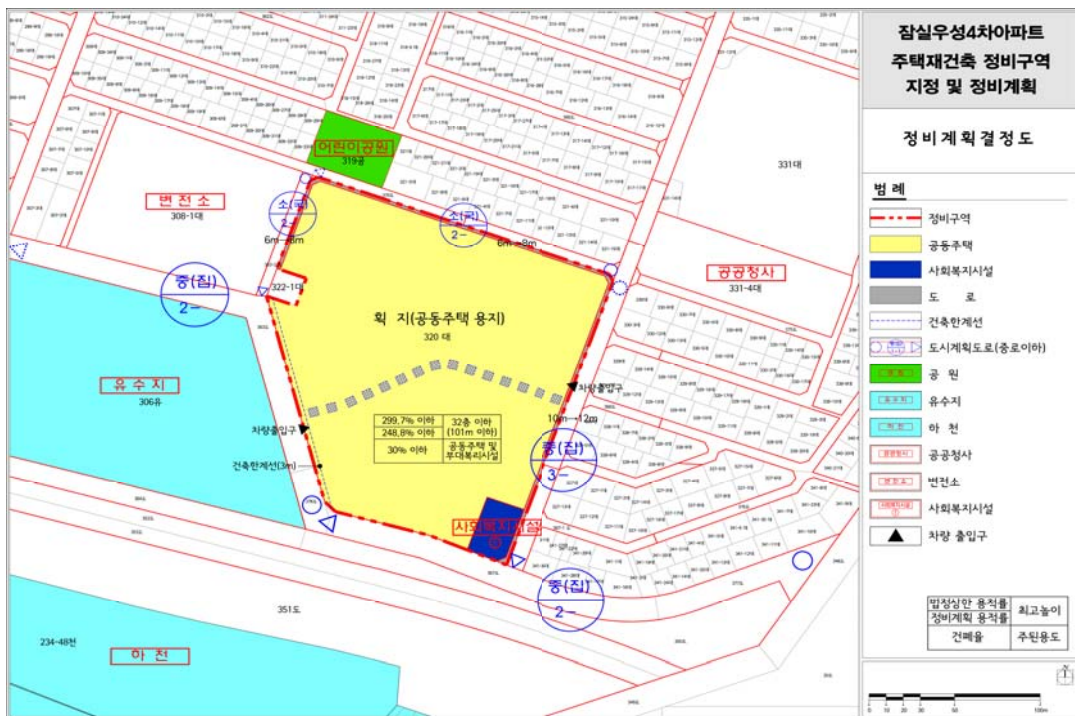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0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용어 순화어

연번	바꿔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행정용어 순화어
1	이니셔티브	(구상, 제안, 계획 등)의 착수 또는 발안	발의(권), 주도(권), 선제권, 구상
2	허브	중심이 되는 곳 ☞ 관광 허브, 청년 허브	중심, 중심지
3	해커톤	해킹(hacking) + 마라톤(marathon)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결과물(시제품)을 완성하는 것	끝장/마라톤 (찾기, 토론, 대회)
4	패밀리사이트	관련 있는 누리집(사이트)들 ☞ 패밀리사이트 통합 개편	관련 누리집
5	스케줄링	처리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 ☞ 환승 스케줄링	일정짜기, 일정잡기
6	오픈소스	1.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분야) 2.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일반, 행정분야)	1. 공개소스 2. 공개자료
7	키플레이어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사람 ☞ 키플레이어가 참여한 회의	핵심인물, 핵심인사
8	팀빌딩	팀의 호흡을 맞추고,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 ☞ 팀빌딩 프로그램	팀단합
9	아이스브레이킹	상호간 마음열기, 친밀감 형성, 분위기 환기 ☞ 토론에 앞선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어색함 풀기, 서먹함 깨기(풀기)
10	서밋	정상회담이라는 뜻, 행사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됨 ☞ 코리아서밋, 서울디지털서밋	(정상) 회담
11	브리프	브리핑(요약 보고)한 문서 또는 책 ☞ 중국 최신 동향 브리프 발간	요약보고, 요약서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02-2133-64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1054-8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서의 설치기준은 자치구 당 1개 소방서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만 유일하게 소방서가 부재한 곳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소방서	금천구 독산2동 1054-8 일대	-	증) 3,192	3,192	-	-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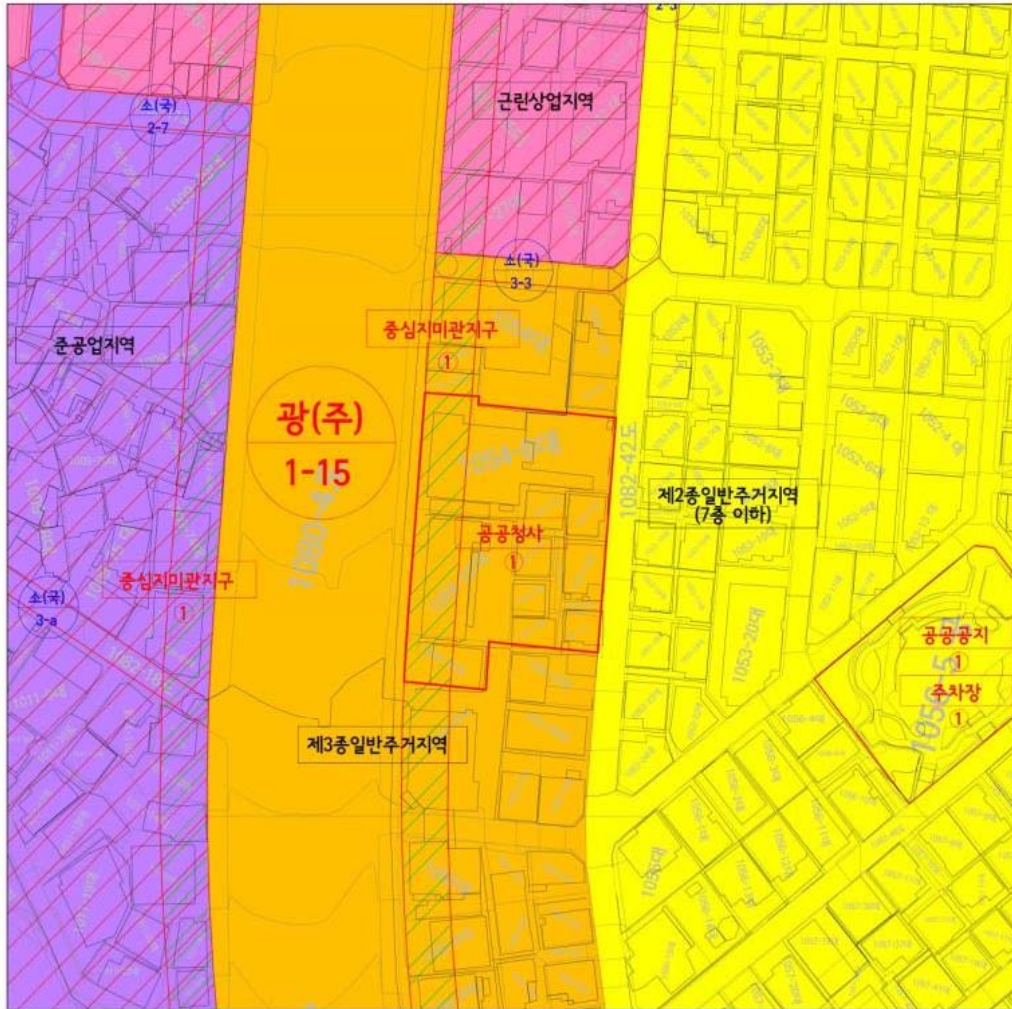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 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3),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53)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금천구 독산2동 1054-8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Scale = 1:NONE

0 10 30 50 100M

- 대상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도로(대로이상)
- 도로(중로이하)
- 공공청사
- 공공공지
-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 결정 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소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후		
신설	①	공공청사 (소방서)	독산2동 1054-8일대	-	총 3,192	3,192	-
- 건축법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2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7(2011.12.8.)호로 결정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5.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광진구 자양동 2-2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2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 주변)	171,352	-	171,352	1996.8.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위치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171,352.0	－	171,352.0	100.0	－
주거지역	소 계	－	127,962.7	감)2,560	125,402.7	73.2	－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1－7일대	17,385.7	감)2,560	14,825.7	8.7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27－8일대	48,071.8	－	48,071.8	28.0	－
	준주거지역	자양동 227－7일대	62,505.2	－	62,505.2	36.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7－7일대	43,389.3	증)2,560	45,949.3	26.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자양동 2-2일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560.0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된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2	2,780	53,152	3	1,130	33,983	6	1,395	17,118	3	255	2,051
대 로	2	880	31,215	2	880	31,215						
중 로	2	660	11,238				2	660	11,238			
소 로	8	1,240	10,699	1	250	2,768	4	735	5,880	3	255	2,05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620	자양동 7-25	자양동 227-336	일반도로	-		구의로
기정	대로	1	45	35~41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 6-1	자양동 227-8	일반도로	-		능동로 일부 선형 변경
변경	대로	1	45	35~41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 6-1	자양동 227-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0	자양동 544-25	자양동 527	일반도로	-	1993.5.4	
기정	중로	2	2	20	집산도로	290	자양동 227-336	자양동 227-33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15	집산도로	250	자양동 2-53	자양동 6-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235	화양동 6-1	화양동 7-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20	자양동 7-25	자양동 6-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35	자양동 2-1	자양동 6-3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45	화양동 7-4	화양동 7-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45	화양동 7-2	화양동 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45	자양동 7-1	자양동 7-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10	국지도로	165	자양동 2-14	자양동 2-38	일반도로	-		일부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10	6~10	국지도로	165	자양동 2-14	자양동 2-38	일반도로	-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45	대로1-45	•일부구간 폭원 변경 - 3-2-A지구 특별계획구역내 38 → 41m)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 확폭
소로3-10	소로3-10	•일부구간 폭원 변경 - 3-2-A지구 특별계획구역내 6 → 10m)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다.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면적(㎡)	특별계획구역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E	9,801.3	371.5	자양동 2-1대	3,855.0	3-2지구 특별계획구역
			1576.3	자양동 2-2대		
			116.7	자양동 2-8도		
			141.2	자양동 2-9대		
			133.2	자양동 2-10대		
			133.2	자양동 2-11대		
			149.8	자양동 2-12대		
			153.1	자양동 2-13대		
			149.8	자양동 2-14대		
			133.9	자양동 2-15대		
			133.9	자양동 2-16대		
			133.9	자양동 2-17대		
			164.6	자양동 2-18대		
			121.3	자양동 2-19대		
			121.3	자양동 2-20대		
			121.3	자양동 2-21대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면적(㎡)	특별계획구역		비고
				위 치	면적(㎡)	
변경			1576.3	자양동 2-2대	2,560.0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38.3	자양동 2-8도		
			133.2	자양동 2-11대		
			149.8	자양동 2-12대		
			133.9	자양동 2-17대		
			164.6	자양동 2-18대		
			121.3	자양동 2-19대		
			121.3	자양동 2-20대		
			121.3	자양동 2-21대		
			371.5	자양동 2-1대	1,295.0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78.4	자양동 2-8도		
			141.2	자양동 2-9대		
			133.2	자양동 2-10대		
			153.1	자양동 2-13대		
			149.8	자양동 2-14대		
			133.9	자양동 2-15대		
			133.9	자양동 2-16대		

■ 변경 사유서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2-1, 2-2,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3-2지구 특별계획구역	2-2, 2-8, 2-11, 2-12, 2-17, 2-18, 2-19, 2-20, 2-21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2-1, 2-8, 2-9, 2-10, 2-13, 2-14, 2-15, 2-16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응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분할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불허용도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권장용도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신설)

■ 지정용도 계획

구 분		지 정 용 도	비 고
능동로변 (a) ¹⁾	저층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 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3-2-A지구
로데오 거리변 (b) ²⁾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 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3-2-B지구

주1)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또는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1/20이상 설치시 준수

주2)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준수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지 정 용 도
• 지정용도 신설	• 능동로 및 로데오거리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 및 저층부 지정용도 신설

라. 건폐율·용적률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마. 높이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교통시설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배치 계획(기정)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주요교차로 가각부 및 간선가로변	3m~6m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보행공간 확충
	• 이면부 내부필지	1~3m	• 이면도로의 확폭
벽면한계선	•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 • 특화거리변	공공보행통로 (1~2m) 주차진입통로 (3~6m) 1.5~2.5m	• 보행 및 주차통로 설치가 필요한 필지에 지정 • 1층부 전문쇼핑 및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벽면지정선	• 특화거리변	1.5~2.5m	• 건축선지정이 부적합한 필지에 지정 • 1층부 전문쇼핑 및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지분할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용지 무상제공 필지	2~5m	•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및 내부 교통소통 원활화

■ 건축물의 배치 계획(변경)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 주요교차로 가각부 및 간선가로변	3m~6m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보행공간 확충	변경없음
	• 이면부 내부필지	1~4m	• 이면도로의 확폭	기준폭원 일부변경
벽면 한계선	•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 • 특화거리변	공공보행통로 (1~2m) 주차진입통로 (3~6m) 1.5~2.5m	• 보행 및 주차통로 설치가 필요한 필지에 지정 • 1층부 전문쇼핑 및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변경없음
벽면 지정선	• 특화거리변	1.5~2.5m	• 건축선지정이 부적합한 필지에 지정 • 1층부 전문쇼핑 및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변경없음
필지 분할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용지 무상제공 필지	2~5m	•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및 내부 교통소통 원활화	기준폭원 일부변경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건축한계선 및 필지분할선 일부 조정	• 건대입구 3~2지구 특별계획구역 분할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건축한계선 및 필지분할선 일부 조정

2)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계획(기정)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간선가로변 및 대형개발 필지 • 이면도로변 필지	• 2~6.5m 보도 및 차도 조성 (필지분할선 포함)	• 인도부속형(보도확폭) 및 차도부속형(도로확폭) 전면공지의 설치
공개공지	•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부의 대형필지	• 쌈지공원 위치	• 보상권장으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유도 • 건축한계선과 면적규제의 병용 • 전면공지 및 민간의 옥외공간과 연계유도
침 상 형 쌈지공원	•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하는 대규모필지		• 지하철역사에서 콘코스 연결 유도 • 침상형 도입 권장
쌈지공원	•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의 보행 집중 지역		• 공공부문과 일체조성 •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활용

■ 대지내 공지계획(변경)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계 획 내 용	비고
전면공지	- 간선가로변 및 대형개발 필지 - 이면도로변 필지	2~6.5m 보도 및 차도 조성 (필지분할선 포함)	인도부속형(보도확폭) 및 차도부속형(도로확폭) 전면공지의 설치	기준폭원 일부변경
공개공지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부의 대형필지	쌈지공원 위치	- 보상권장으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유도 - 건축한계선과 면적규제의 병용 - 전면공지 및 민간의 옥외공간과 연계유도	위치 추가지정
침 상 형 쌈지공원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하는 대규모필지		- 지하철역사에서 콘코스 연결 유도 - 침상형 도입 권장	변경없음
쌈지공원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의 보행 집중 지역		- 공공부문과 일체조성 -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활용	변경없음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전면공지 기준폭원 변경 및 공개공지 추가 지정	건대입구 3-2지구 특별계획구역 분할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전면공지 기준폭원 일부 변경 및 공개공지 추가지정

- 나.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경관 및 환경 친화적 요소 결정 조서 (변경 없음)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건대입구3-2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3,855.0㎡	구역분할
변경	-	건대입구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변경	-	건대입구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건대입구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분할
변경	건대입구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특별계획구역의 공공기여 방안 (규제)

■ 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면적(㎡)	기부채납비율(%)	공공기여
3-2	3,967.8	18.0	• 북5m, 서4m, 동3m 도로, 남2m 도로(보행자전용)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면적(㎡)	기부채납비율(%)	공공기여
3-2-A	2,560.0	22.0 이상	• 서4m, 동3m 도로, 건축물내 공공시설
3-2-B	1,295.0	20.9 이상	• 서4m, 동3m 도로, 건축물내 공공시설

※ 특별계획구역은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함. 기부채납 비율은 구적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공기여 계획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소공원 등에 대한 면적은 이행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3-2-A	• 남2m 도로(보행자전용) → 건축물내 공공시설	• 효용성이 떨어지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고, 건축물내 공공시설로 실질적인 공공기여 유도
3-2-B	• 북5m 도로 → 건축물내 공공시설	• 로데오거리변 구역의 필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로 확폭을 폐지하고, 건축물내 공공시설로 실질적인 공공기여 유도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1) 건대입구1지구, 2-A지구, 2-B지구, 2-C지구, 3-1지구, 3-3지구 4-1지구, 4-2지구, 4-3지구, 4-4지구, 4-5지구, 4-6지구, 4-7지구, 4-8지구, 4-9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 없음)

2)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위치		• 자양동 2-1일대	• 자양동 2-2일대	
면적		• 3,855.0㎡	• 2,560.0㎡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불허용도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부 금융업소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지정용도 (저층부) ¹⁾	—	-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300% 이하	
		허용	• 630% 이하	
		상한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높 이	• 최고높이 120m 이하		
	배 치	- 간선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3m 포함) - 이면도로변 : 4m~8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2m~5m 포함)	- 간선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3m 포함) - 이면도로변 : 4m~5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4m 포함)	
	형 태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유도형 인센티브권장사항) 1층 층고제한 4.5m 이상(권장) - 간선도로변 1층부 아케이드 조성(유도형 인센티브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건축설계에 제한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 6m • 이면도로변 : 5~8m	• 간선도로변 : 6m • 이면도로변 : 4~5m	
	공개공지	• 구역 북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 구역 남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 능동로 전후면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축물내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준공공임대주택		—	•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도입(권장)	

주1)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또는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1/2이상 설치시 준수

7) 건대입구3-2-B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위치		• 자양동 2-1일대		
면적		• 3,967.8㎡	• 1,295.0㎡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권장 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불허용도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부 금융업소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지정용도 (1층) ¹⁾	—		-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300% 이하	
		허용	• 630% 이하	
		상한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높 이	• 최고높이 120m 이하		
	배 치	- 간선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3m 포함) - 이면도로변 : 4m~8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2m~5m 포함)	- 간선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3m 포함) - 이면도로변 : 5m 건축한계선 (필지분할선 4m 포함)	
	형 태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유도형 인센티브권장사항) 1층 층고제한 4.5m 이상(권장) - 간선도로변 1층부 아케이드 조성(유도형 인센티브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건축설계에 제한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 6m - 이면도로변 : 5~8m	- 간선도로변 : 6m - 이면도로변 : 5m	
	공개공지	• 구역 북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주1)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준수

III.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3-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건대입구 3-2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3,855.0	2011.12.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호)	
변경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	
변경	건대입구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변경	건대입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2일대	2,560.0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행성제고를 위해 구역분할
변경	건대입구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일대	1,295.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3,855.0	-	3,855.0	100.0	
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1일대	3,855.0	감)2,560.0	1,295.0	33.6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일대	-	증)2,560.0	2,560.0	66.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자양동 2-2일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560.0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된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시 용도지 역 변경(결정) 고시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75	269	1	27	80	-	-	-	1	48	189
대로	1	27	80	1	27	80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48	189	-	-	-	-	-	-	1	48	189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5	35~41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 6-1	자양동 227-8	일반도로	-		능동로 선형 변경
변경	대로	1	45	35~41	주간선도로	260	화양동 6-1	자양동 227-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10	국지도로	165	자양동 2-14	자양동 2-38	일반도로	-	-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10	6~10	국지도로	165	자양동 2-14	자양동 2-38	일반도로	-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5	대로1-45	일부구간 폭원 변경 - 3-2-A지구 특별계획구역내 38 → 41m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 확폭
소로3-10	소로3-10	일부구간 폭원 변경 - 3-2-A지구 특별계획구역내 6 → 10m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면적(㎡)	특별계획구역		비고
				위치	면적(㎡)	
기정	E	9,801.3	371.5	자양동 2-1대	3,855.0	3-2지구 특별계획구역
			1576.3	자양동 2-2대		
			116.7	자양동 2-8도		
			141.2	자양동 2-9대		
			133.2	자양동 2-10대		
			133.2	자양동 2-11대		
			149.8	자양동 2-12대		
			153.1	자양동 2-13대		
			149.8	자양동 2-14대		
			133.9	자양동 2-15대		
			133.9	자양동 2-16대		
			133.9	자양동 2-17대		
			164.6	자양동 2-18대		
			121.3	자양동 2-19대		
			121.3	자양동 2-20대		
			121.3	자양동 2-21대		
변경			1576.3	자양동 2-2대	2,560.0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38.3	자양동 2-8도		
			133.2	자양동 2-11대		
			149.8	자양동 2-12대		
			133.9	자양동 2-17대		
			164.6	자양동 2-18대		
			121.3	자양동 2-19대		
			121.3	자양동 2-20대		
			121.3	자양동 2-21대		
			371.5	자양동 2-1대	1,295.0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78.4	자양동 2-8도		
			141.2	자양동 2-9대		
			133.2	자양동 2-10대		
			153.1	자양동 2-13대		
			149.8	자양동 2-14대		
			133.9	자양동 2-15대		
			133.9	자양동 2-16대		

■ 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변경사유
2-1, 2-2,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3-2지구 특별계획구역	2-2, 2-8, 2-11, 2-12, 2-17, 2-18, 2-19, 2-20, 2-21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2-1, 2-8, 2-9, 2-10, 2-13, 2-14, 2-15, 2-16 3-2-B지구 특별계획구역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분할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불허용도 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일반 상업 지역 간선부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경우 해당 금지시설 불허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2) 권장용도 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권장용도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역세권 주변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 (불허용도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1층부 금용업소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 (불허용도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1층부 금용업소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일반상업 지역 (구의로/ 능동로변)

※ 권장용도는 당해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이 지상부 전체면적(주차장제외)의 20%이상일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봄(충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당해 층바닥면적의 50%이상)

3) 지정용도 계획 결정 조서(신설)

■ 지정용도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능동로변 (저층부) (a)	기정 —	—	—
변경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 4호의 1·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 4호의 1·2층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3-2-A지구

※ 지정용도는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또는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1/2이상 설치시 준수

4) 건폐율·용적률 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일반상업)	60% 이하	60% 이하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용적률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일반상업)	300% 이하	63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α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787.9% 이하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α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용적률 인센티브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도면번호	위치	계획목표	항목	완화기준	비 고
3-2-A	자양동 2-2 일대	• 지구중심의 기능활성화를 위 한 권장용도 유도 • 보행환경 개선 (1층 부 전면부 입면처 리 및 형태 권장) 및 휴게공간 조성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text{건축면적}) \times 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이상 준수시 인정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3$	위치준수, 의무면적 외 대지면적의 8%이상 조성시 인정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3$	1층부 아케이드조성 및 전면투시처리 70%이상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3$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규제형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2.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제공면적에서 제외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5) 높이 계획 결정 조서

■ 높이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일반상업지역 (능동로변)	최고높이 120m이하	최고높이 105m이하	

※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도로사선 배제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높이계획 조정	• 건축계획에 따라 현실적인 높이계획 반영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배치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 한계선	기정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2m~3m	—
	변경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1m~2m	• 능동로변 : 3m • 이면도로변 : 1m • 남측변 : 4m
필지 분할선	기정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2m~5m	—
	변경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4m	• 능동로변 : 3m • 이면도로변 : 4m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건축한계선 및 필지분할선 일부 조정	• 3-2특별계획구역 분할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건축한계선 및 필지분할선 일부 조정

나)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

■ 건축물의 형태·색채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형태	•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이상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 • 1층 층고제한 4.5m이상 • 간선도로변 1층부 아케이드 조성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사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건축설계에 제한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 • 1층 층고 6m 이상 • 저층부(1~3층)과 고층부 색상과 재질 분리 • 저층부 벽면은 연접필지내 건축물의 저층 벽면과 조화 • 고층부 입면은 능동로변에 면하게 계획 • 1층 상가는 능동로변에서의 직접 출입가능토록 출입구 유도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일부 지침 추가	• 능동로변 가로의 연속성, 통일성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계획내용 추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전면 공지	기정	• 간선도로변 : 6m (필지분할선 포함) • 이면도로변 : 5~8m (필지분할선 포함)	-
	변경	• 간선도로변 : 6m (필지분할선 포함) • 이면도로변 : 2~5m (필지분할선 포함)	• 능동로변 : 6m (필지분할선 포함) • 이면도로변 : 5m (필지분할선 포함) • 남측변 : 4m
공개 공지	기정	• 구역 북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
	변경	• 구역 남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 구역 남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 넓은 폭이 능동로변에 면할 수 있도록 계획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전면공지 기준폭원 변경 및 공개공지 추가 지정	• 3-2특별계획구역 분할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전면공지 기준폭원 일부 변경 및 공개공지 추가지정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 금지	•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 금지

다.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 능동로 전후면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축물내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 : 22% 이상 - 도로(토지) - 건축물내 공공시설(건축물 및 부속토지) •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은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함. 기부채납 비율은 구적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공기여 계획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소공원 등에 대한 면적은 이행하여야 함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건축물내 공공시설 신설	• 201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의 정합성 및 실질적인 공공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계획 수립(공공시설 건축물로 설치·제공)

라. 준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정	-	-
변경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도입 (권장)	-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계획 -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거주 공간으로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인근 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우선 협의 - 최초임대료는 시세의 80% 이내에서 청년주택운영자문 위원회를 통해 결정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도입 신설	대상지의 현황여건 및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유도된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고시시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를 이행해야 함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제외)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제외) -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
	권장 용도 (전충)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의료시설(불허용도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부 금융업소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의료시설(불허용도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부 금융업소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지정 용도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의 용도·밀도 에 관한 계획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
	용적률	•300% 이하 / 630% 이하 / 8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300% 이하 / 630% 이하 / 787.9%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능동로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완화기 준 적용	•능동로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120m 이하	•최고높이 105m 이하	—
배치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 3m •이면도로변 : 1m~2m	•능동로변 : 3m •이면도로변 : 1m •남측변 : 4m	—
	필지 분할선	•간선도로변 : 3m •이면도로변 : 4m	•능동로변 : 3m •이면도로변 : 4m	—
형태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이상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 •1층 층고제한 4.5m이상 •간선도로변 1층부 아케이드 조성 (유도형 인센티브 권장사항)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건축설계에 제 한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1층 전면부 투시형 입면처리 70% 이상 •1층 층고 6m 이상 •저층부(1~3층)과 고층부 색상과 재질 분리 •저층부 벽면은 연접필지내 건축물의 저층 벽면 과 조화 •고층부 입면은 능동로변에 면하게 계획 •1층 상가는 능동로변에서의 직접 출입 가능토록 출입구 유도	—
공개공지		•구역 남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구역 남동측 간선도로변에 확보 — 넓은 폭이 능동로변에 면할 수 있도록 계획	
교통처리계획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 금지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 금지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역내 도로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면적 : 15%이상 —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축물내 설치· 조성후 기부채납	•기부채납 : 22% 이상 — 도로(토지) — 건축물내 공공시설(건축물 및 부속토지)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준공공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도 입(권장)	•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계획 •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거주 공간으로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인근 대학교 와 연계하는 방안 우선 협의 • 최초임대료는 시세의 80% 이내에서 청년주택 운영자문 위원회를 통해 결정	—

IV.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심의의견
• 건축심의시인접구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면계획을 검토 할 것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까지만 확보
• 공개공지는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층부 건축물 용도와 연계하여 계획남측의 과다한 공개공지는 복층 경계부로 변경 검토
• 공공시설의 주출입구 및 보행동선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건축계획에 반영

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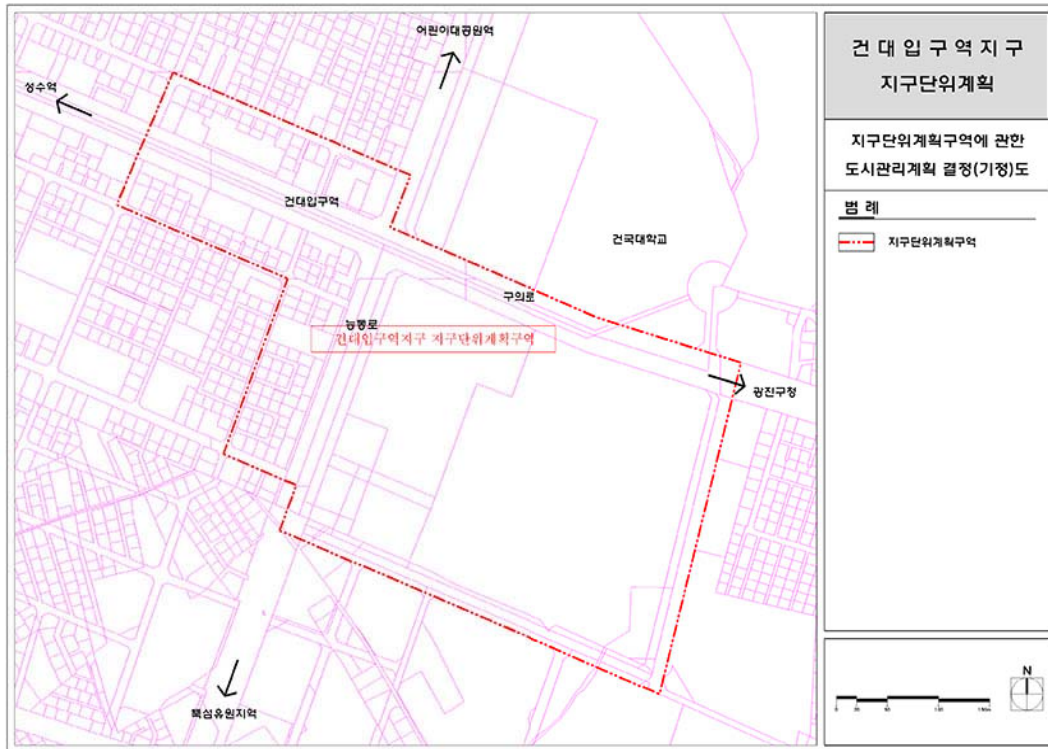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열람장소: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1),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92)에 관련서류를 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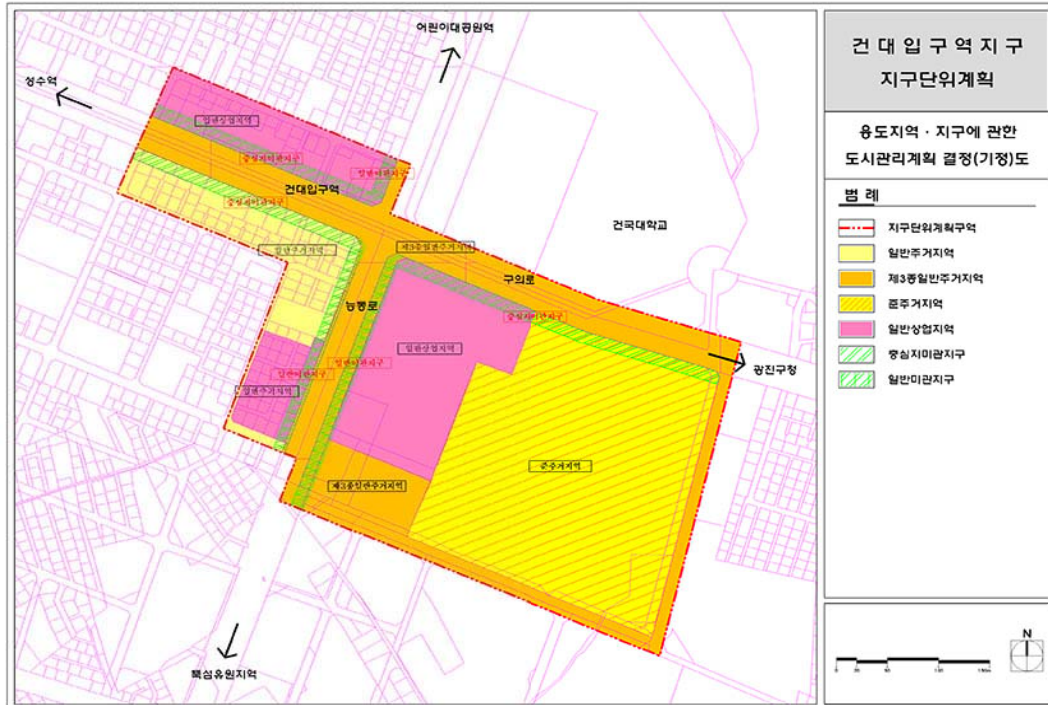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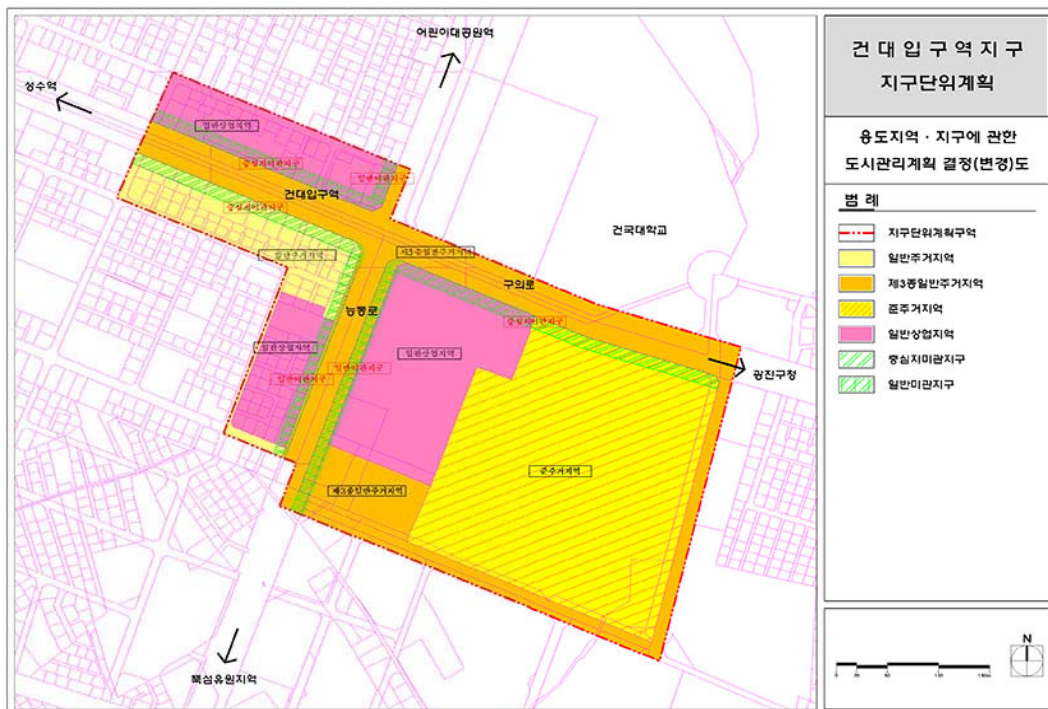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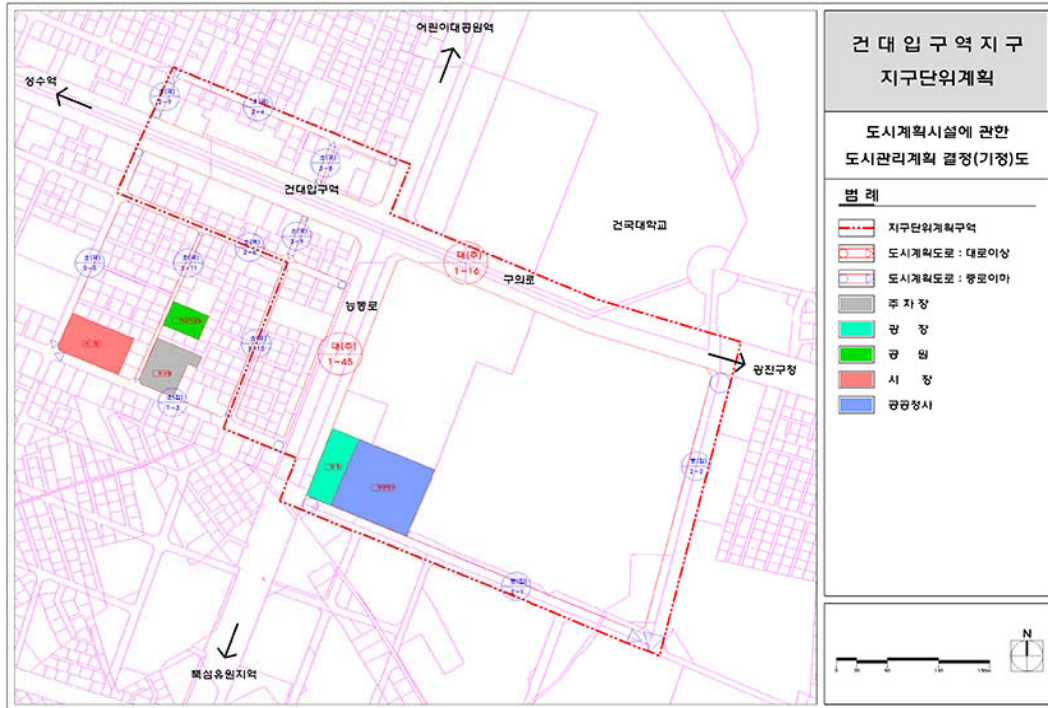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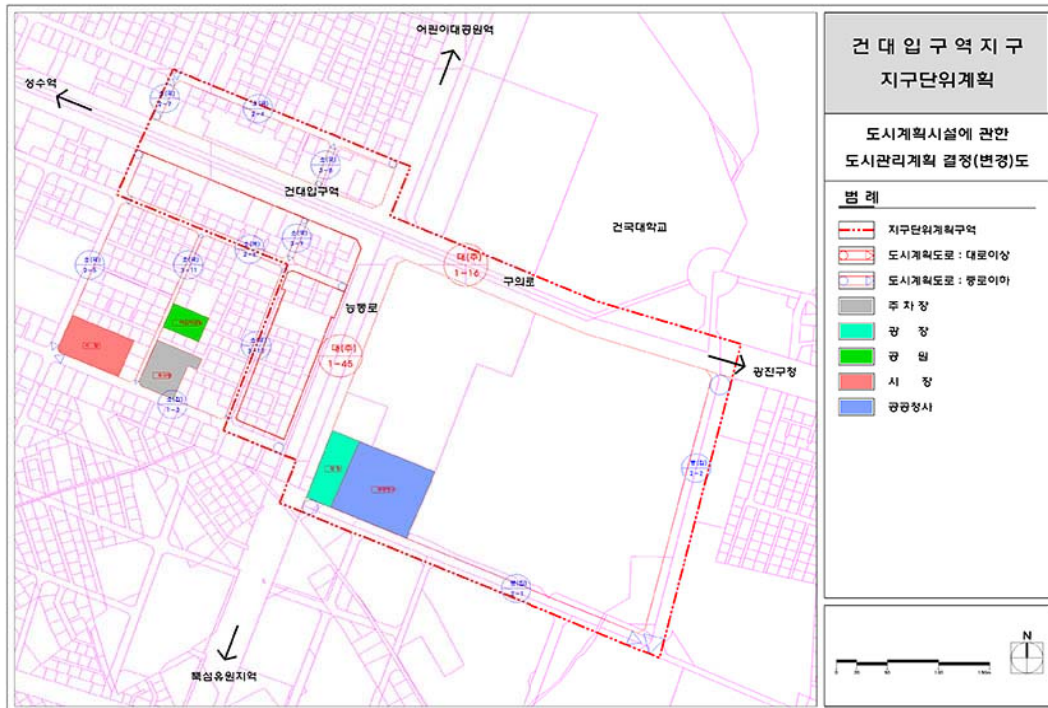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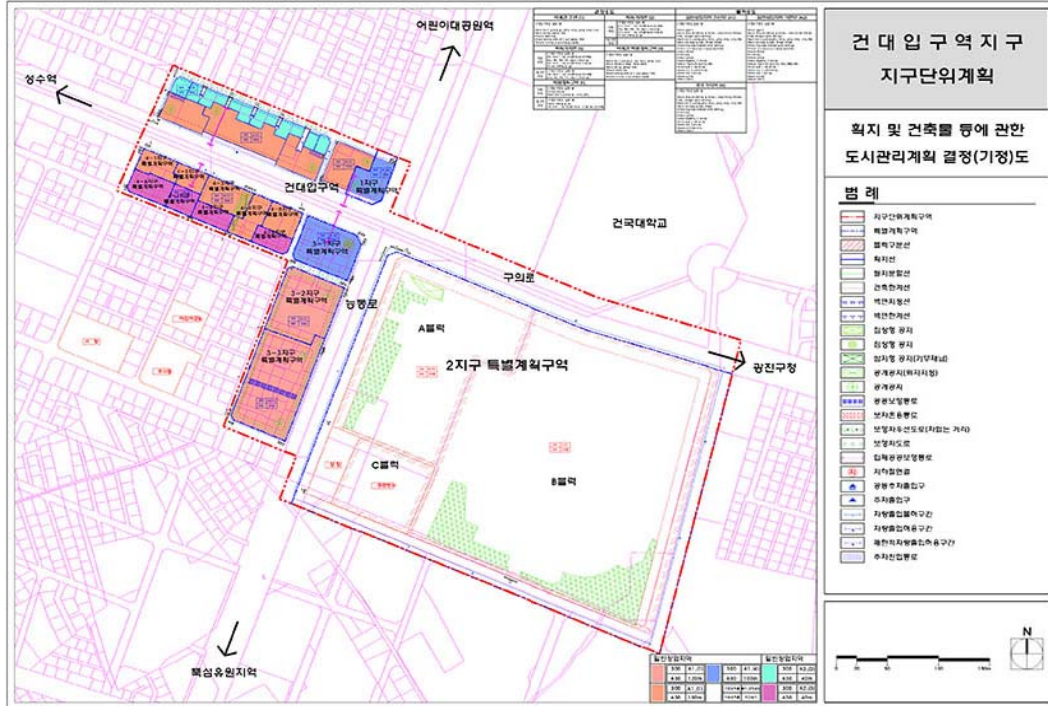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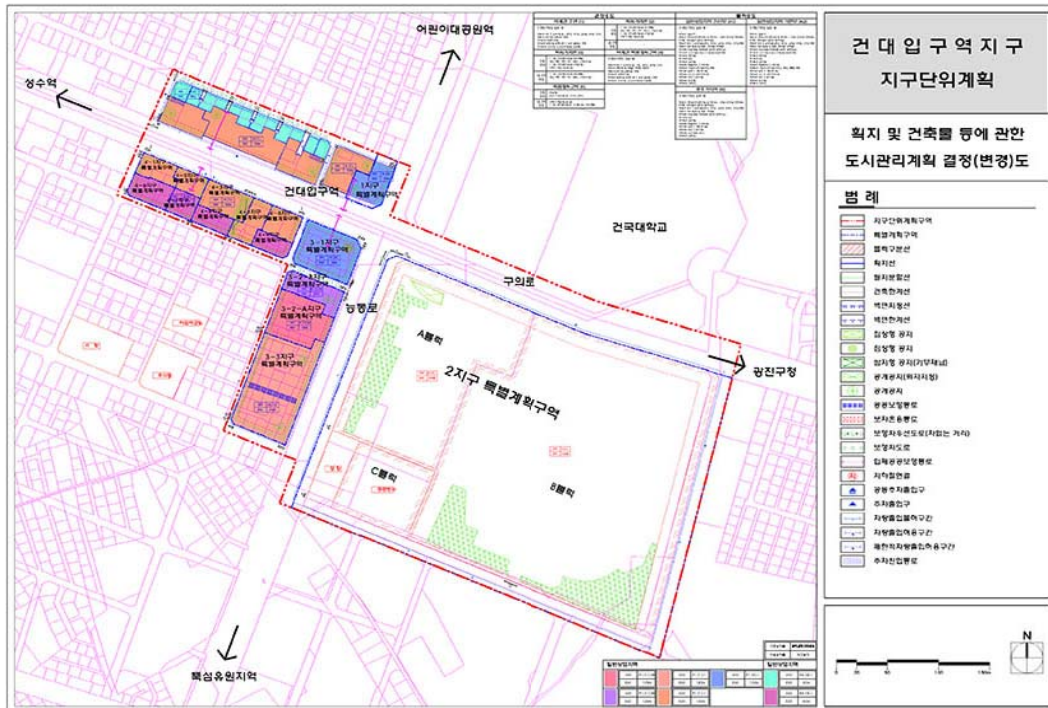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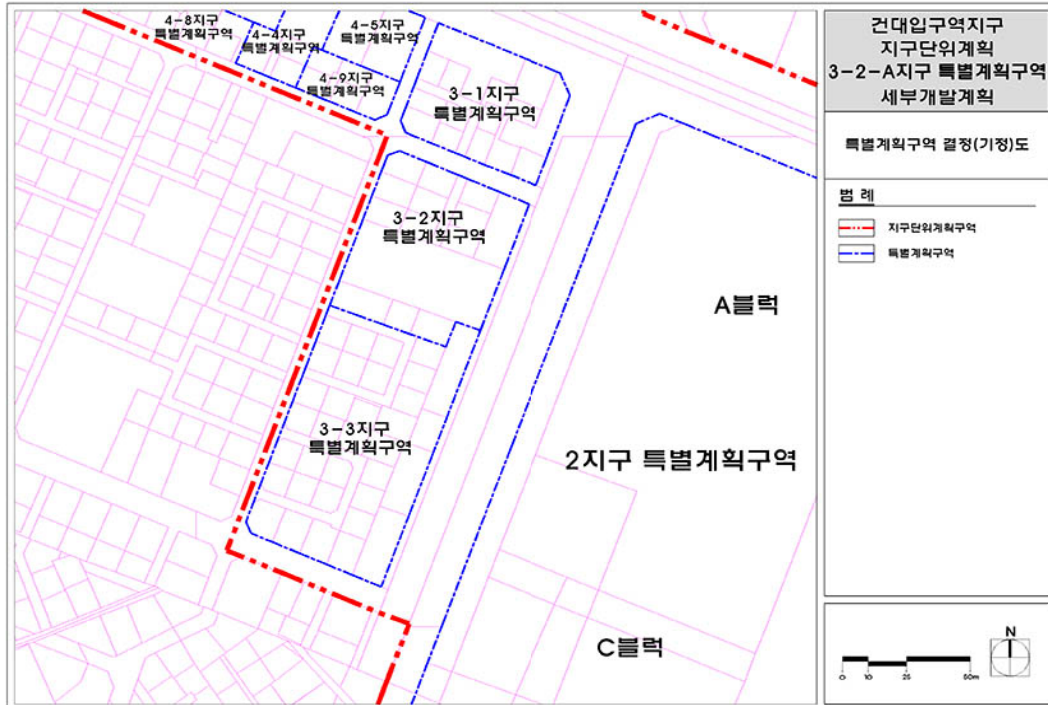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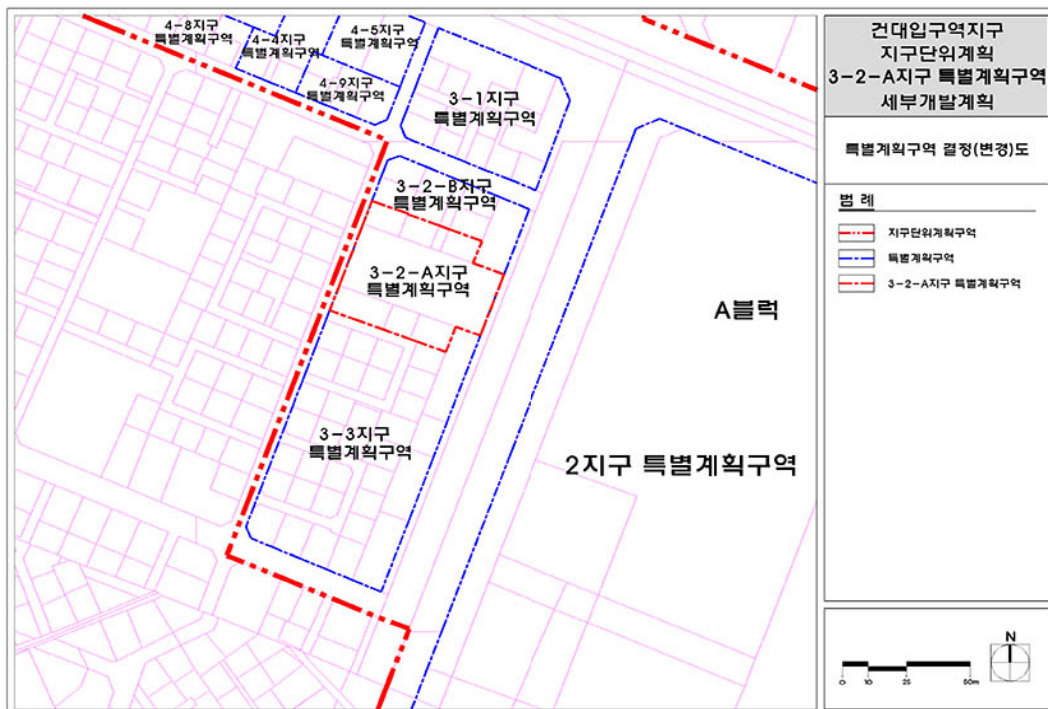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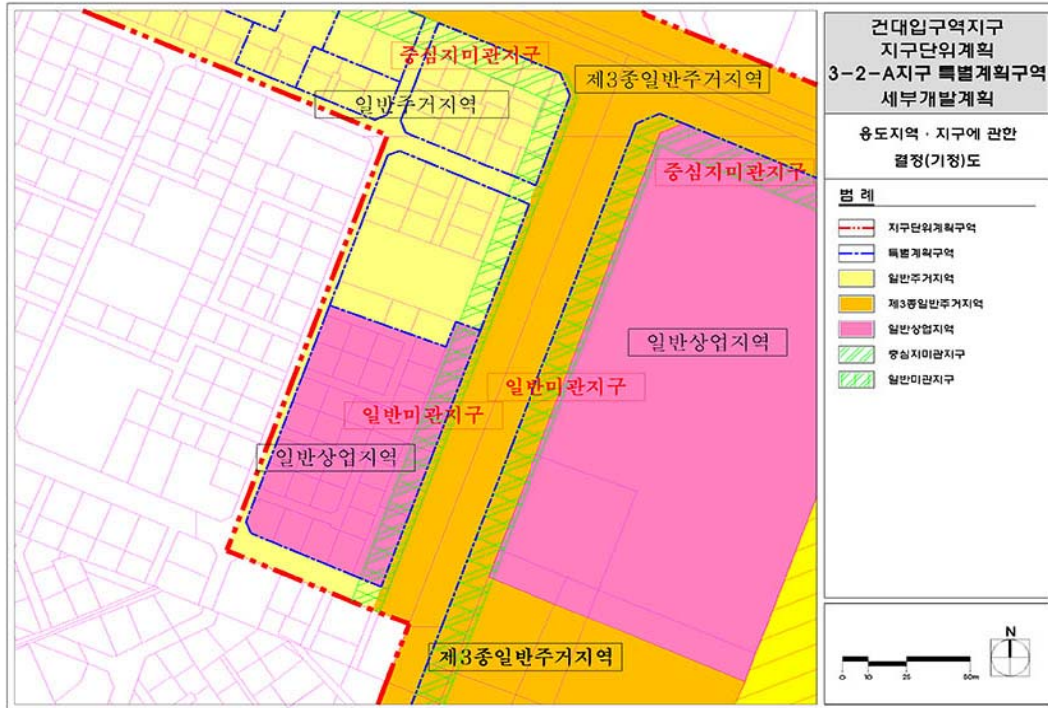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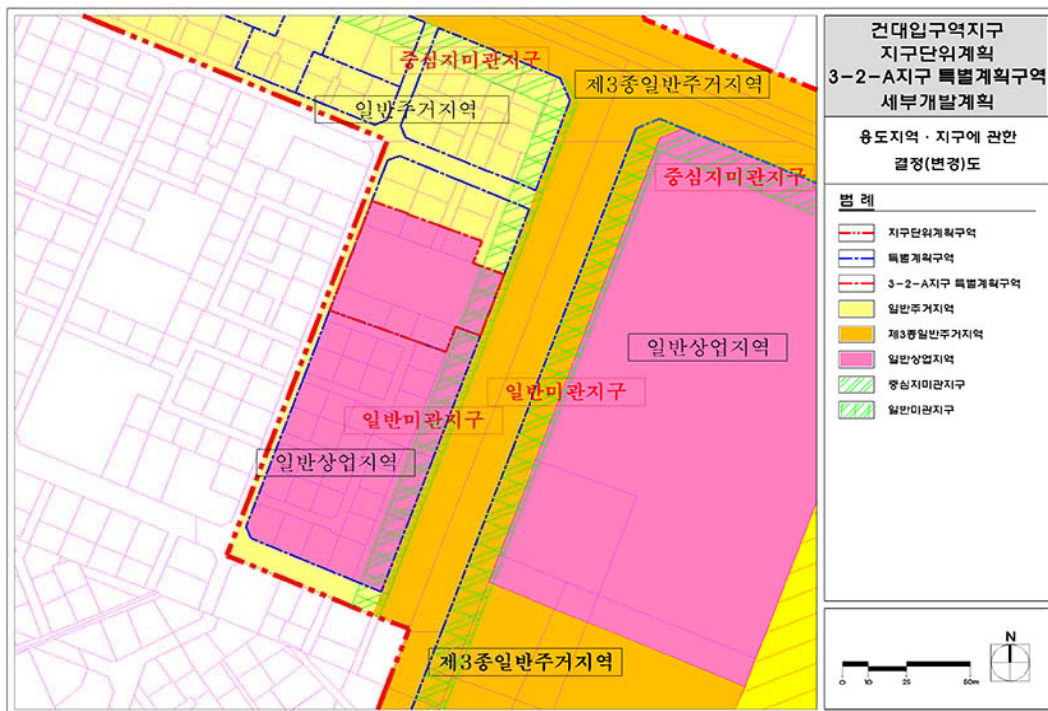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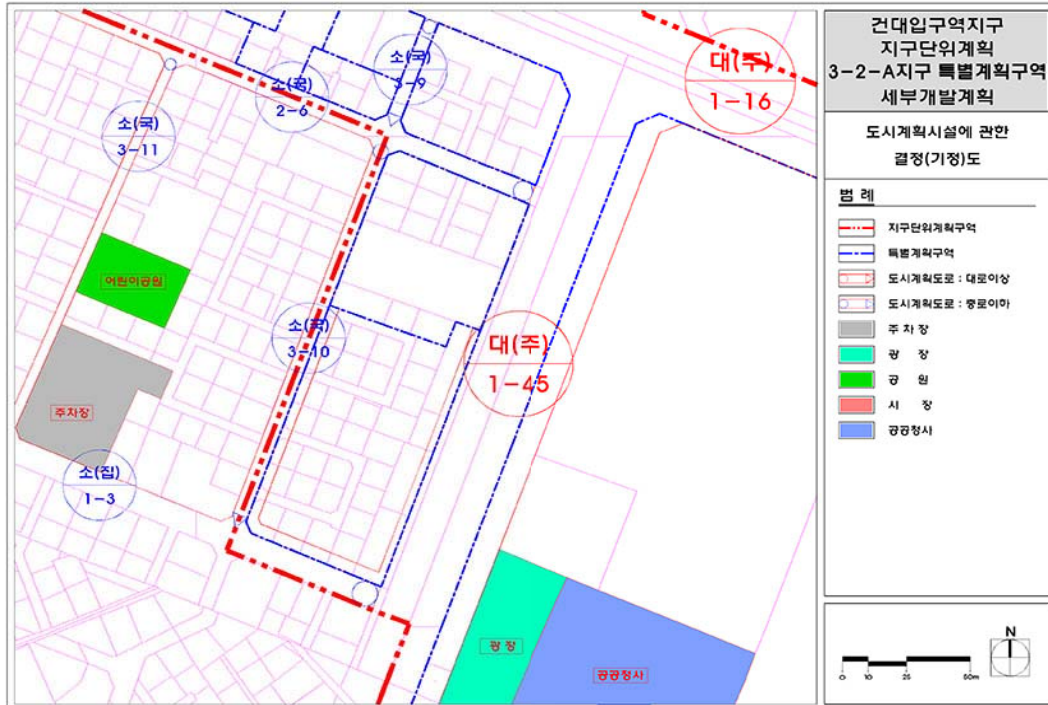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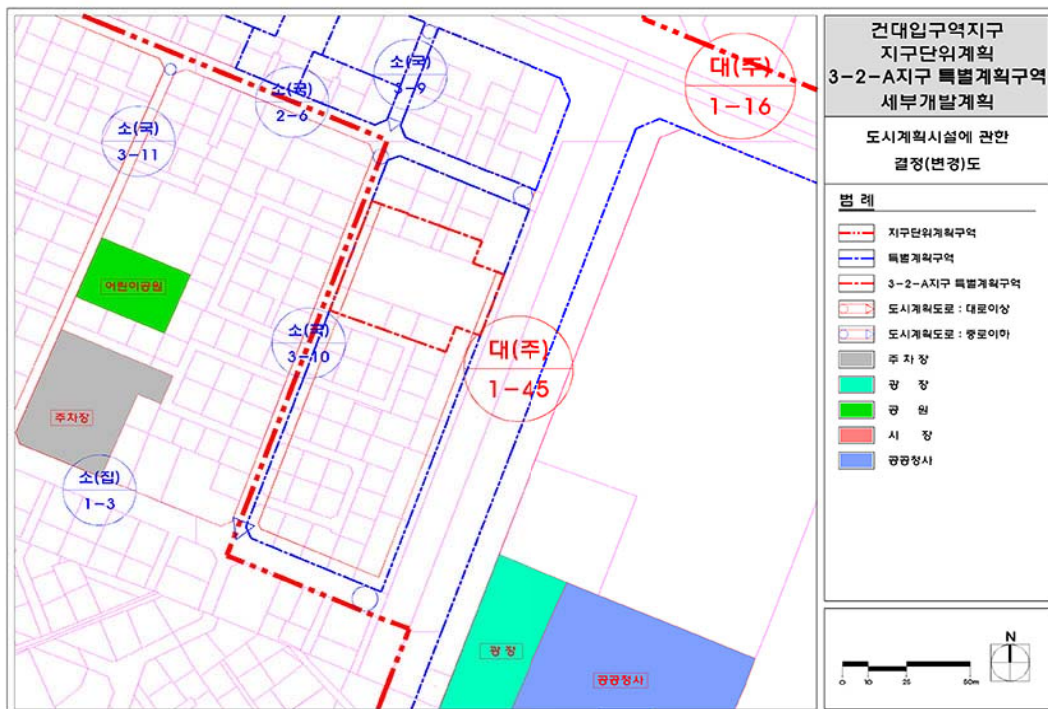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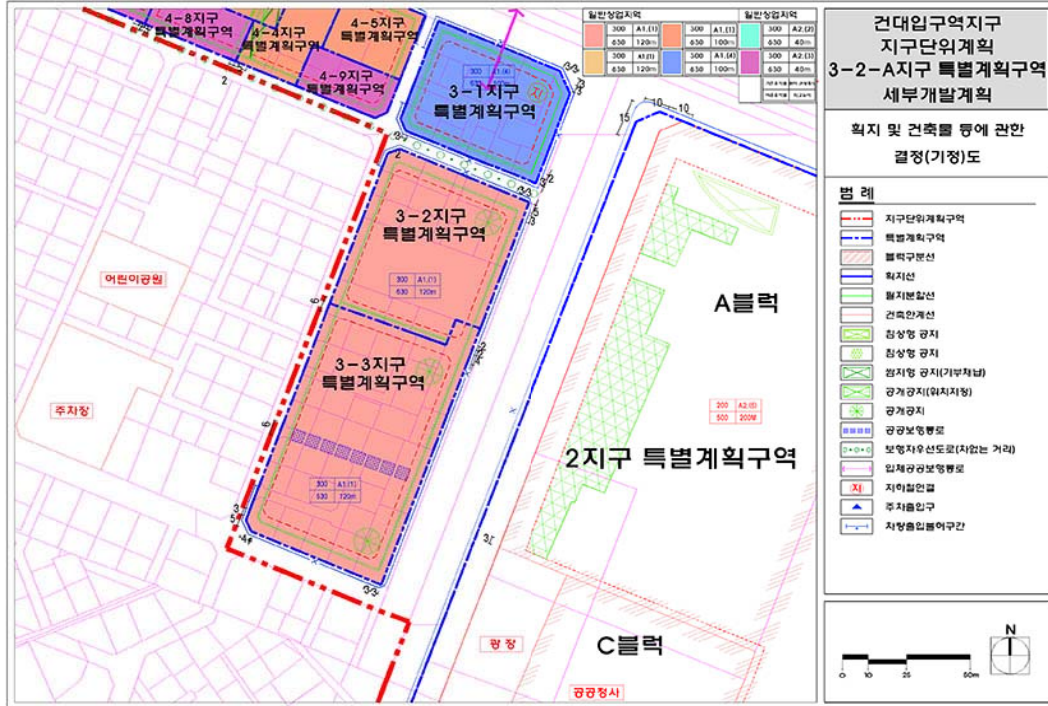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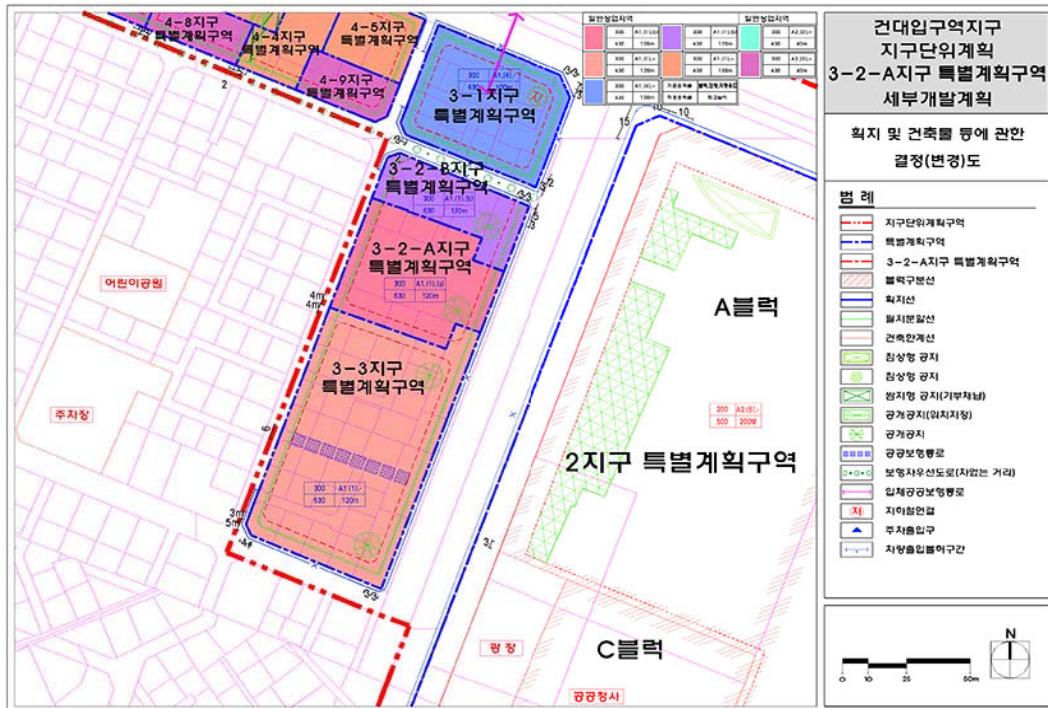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대입구역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3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공공지원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하여 표준화된 선거관리의 방법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를 “작성·보급한 규정으로서”로 한다.

제3조 중 “임원 등의”를 “임원 등”으로 하고, 같은조제4호 중 “선거관리의 사무”를 “선거관리사무”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제6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 제56조를 확정할 것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55조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 5. 7.> 제1조 중 “이 고시한”을 “고시한”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7. 7.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로 하고, “조합의 조합임원”을 “조합의 임원”으로 하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를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은 기준에서”를 “이 규정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말한다.”를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조합의 대표자”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시행구역 내에”를 “시행구역 안의”로 한다.

제2조제7호 【주】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제3항),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되도록(영 제36조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에 해당함

제2조제8호 중 “법 제24조에 의한 총회”를 “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를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으로 하고, “등 관련단체”를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제7조제2항 【주】 내용 중 “조합임원·대의원의 임기”를 “조합임원의 임기”로 하고, “임원·대의원이 처리한 업무”를 “임원이 처리한 업무”로 하되, 다음과 같이 후단을 추가한다.

해당 조합 정관 등으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같은 기준 적용

제7조제3항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으로 하고,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를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 하며, 【주】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대의원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제7조제5항 중 “총회에서”를 “총회의”로 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조합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한다(이하, 같다).

【주】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으로 도정법 상 대의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이하, 본 규정에서 공통 적용)

제8조제3항 중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를 “조합장이 최초 회의소집을 아니할 경우”로 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를 “회의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 및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사업 관련자료 작성·제공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OS 홍보요원 등 불공정한 개입 불허), 선거관리 계획 수립 시 또는 필요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제15조제4항 중 “본 규정에서 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하고, “위법사실”을 “위반사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주】 내용 중 “등기 필요서류(취입 승낙서, 임감증명서)”를 “조합설립등기 필요서류(취입 승낙서,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내용 중 “있다.”를 “있으며,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표소유자 및 대리인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음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오후 6시”를 “오후 8시”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인감증명서 1부”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후보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로 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에 다음과 같이 【주】를 신설한다.

【주】 근무처 폐업, 해외법인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인정

제25조제2항제9호 “범죄사실증명서 1부”를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선거관리규정 준수와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한다.

제25조제5항 내용 중 “해당 사실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관서로 범죄사실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관위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 내용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34조제5항 【주】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법정 정족수 충족을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음)

제40조제1항 중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적절한 장소”를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로 한다.

제42조 중 “사전투표 장소는 경우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사전투표 장소는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하고, “제32조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개표개시시각”을 “개표개시”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종료된 이후”를 “종료되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전일 18시까지”를 “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며, 제7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8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9호의 “정관 제17조”를 “운영규정 제16조”로”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상근이사 중 연장자”를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로 하고, “순으로 한다.”를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

제5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①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 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주】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 중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 및 대의원 선임방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함.

부칙 내용 중 “조합 총회 또는 주민총회”를 “조합 총회 또는 주민총회(제56조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는 대의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 개정기준 전문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9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60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 (대표 서국화, 박주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 동물관련법과 정책의 연 구, 교육, 입법제안 및 국제교류활동 등 지원	80 (현금및물품)	전국	'17.6.19~ '18.5.30
						'17.6.19~ '18.12.31
2017-61	마포문화원 (대표 최병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27	- 문화나눔 및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활성 화 위해 마포나루 새 우절축제 개최	100 (현금및물품)	서울시	'17.6.19~ '17.11.30
						'17.6.19~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185호(1973.12.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된 도시 계획시 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 채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간 도로개설사업

나. 사업시행 구간 : 노원구 월계동 699 ~ 도봉구 창동 426

다. 사업의 규모

- 1) 도로개설 : 폭 10m, 연장 320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 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사. 열람 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아.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2)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78)

토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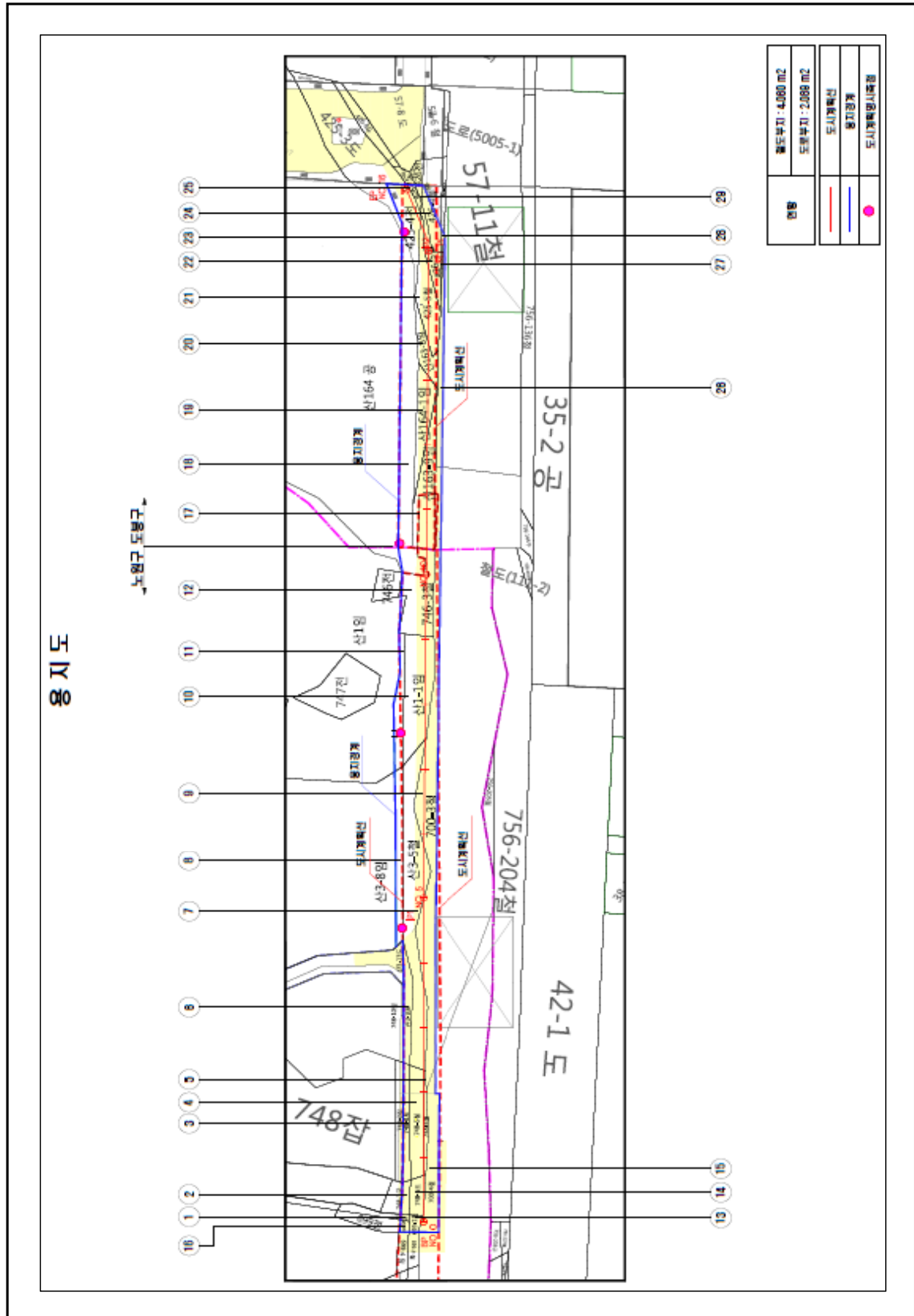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월계동 699-2	구거	41	9		노원구						
2	노원구 월계동 748-3	구거	67	23		노원구						
3	노원구 월계동 748-8	도로	85	85		노원구						
4	노원구 월계동 748-5	철	120	120		국토교통부						
5	노원구 월계동 748-4	철	25	25		국토교통부						
6	노원구 월계동 산3-9	도로	133	133		노원구						
7	노원구 월계동 산3-5	철	467	467		국토교통부						
8	노원구 월계동 산3-8	임	7,261	783		태양극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아파트 35동 707호					
9	노원구 월계동 700-3	철	2,817	616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10	노원구 월계동 산1-1	임	200	200		국현명	서울시 도봉구 창동 61					지분 90/1590
						김연준	서울시 도봉구 창동 256-2					지분 1439/1590
						건설교통부						지분 61/1590
11	노원구 월계동 산1	임	5,056	386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류미연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418		전정남지분전부 근저당권	지분 1089.4/505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21길 44	김금옥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전정남지분전부 근저당권	지분 495.8/505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					지분 3470.8/5056
12	노원구 월계동 746-3	철	295	207		국토교통부						
13	노원구 월계동 699-1	철	16	16		국토교통부						
14	노원구 월계동 748-6	도로	42	42		노원구						
15	노원구 월계동 700-4	철	2,826	190		국토교통부						
16	노원구 월계동 699-5	전	11	11		태성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105-908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7	도봉구 창동 산163-9	임	208	208		국토교통부						
18	도봉구 창동 산164	공	14,720	979		서울특별시						
19	도봉구 창동 산164-1	임	105	105		국토교통부						
20	도봉구 창동 산163-8	임	108	108		국토교통부						
21	도봉구 창동 425-5	철	139	136		국토교통부						
22	도봉구 창동 426-5	철	61	61		서울특별시						
23	도봉구 창동 425-4	전	194	136		신정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4 상지리초빌4차 에이-301					
24	도봉구 창동 426-4	철	138	83		국토교통부						
25	도봉구 창동 426-7	도	27	12		서울특별시						
26	도봉구 창동 57-11	철	3,580	150		국토교통부						
27	도봉구 창동 426-3	도	2	2		서울특별시						
28	도봉구 창동 426-2	철	31	5		서울특별시						
29	도봉구 창동 426	전	26	5		국토교통부						

별첨 제 2 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1	석축		1식		이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1893					무허가
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1	헤스		1식		이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1893					진행 중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한국성서대학교)**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323호(1976.11.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6호(2011.5.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205-4 일대 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2133-8412, fax : 2133-0739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2116-3861, fax : 2116-4633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외부활동)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한국성서대학교)	노원구 상계동 205-4 일대	18,618.80	-	18,618.80	서고시 제323호 (’76.11.30)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관리(6개로 결정)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 - 건물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31호
도시·건축 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분야 우수한 인력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전문가와 협업하여 가치있는 도시 및 건축물의 아카이브를 및 정책추진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도시·건축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2. 사업목적

-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하여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대안 모색하기 위함
- 우리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대학 및 전문가의 관련지식을 활용하여 공간개선 아이디어 발굴

3. 공모주제

- 도시에 대한 기록(Documentation)
- 도시공간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연구(Study)

〈공간개선 아이디어 예시〉

- 도시 인프라를 활용·연계한 새로운 도시공간 활용방안(차고지, 유수지, 저류지 등)
- 전통시장과 주변부에 대한 도시구조 개편 방안
-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 공동주택(아파트) 대안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 저성장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도시구조 재편에 관한 아이디어
- 미이용·저이용 사유지 활용방안 제안

※ 위 예시는 참고사항 임.

4.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7.6.29(목) ~ 2017.7.18(화)(14일간)
- 접수기간 : **2017.7.12(수) ~ 2017.7.18(화)(5일간)**
- 접수방법 : 붙임양식에 의거 **온라인 접수**(jungyona@seoul.go.kr)

5. 접수자격

- 도시·건축 관련 대학, 연구기관, 개인(전문가) 또는 단체

6. 협업주제 선정

- 선정규모 : 총 사업예산 6,000만원 이내, 주제별 3~6개 내외
- 주제당 2,000만원 이내

※협업제안 주제별 사업비는 심사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도시공간개선단 협업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현장성, 시정기여도, 창의성, 주제의 독창성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계	100점
•현장성	실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및 개선(안)	40점
•시정 기여도	선도 어젠다 발굴 및 시정 발전 기여 가능성	30점
•창의성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시각·연구방법·연구내용 등	15점
•주제의 독창성	기존의 학술적 연구 주제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주제	15점

7. 협업 진행방법

○ 계약방식 : 심사결과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수행단체와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 협업기간 : '17.8월~11월

8.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협업제안서, 공모자(단체) 이력서, 기타 증빙자료 각1부.

구 분	상세 내용	제출양식
참가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식1
협업제안서	프로그램 계획서 및 설명서, 운영방식 등 작성	서식2
주요실적	대표 연구실적(제안주제 관련 실적 우선)	자유형식
제안자(단체) 이력서	협업(연구) 총괄 책임자	자유형식
증빙자료	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9. 결과발표

○ 심사결과 선정된 주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 결과발표 : '17.8.3(예정)

10.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와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자격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절차 상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요구됨
- 선정 이후 협업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시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
-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실행 중간결과물(추진실적, 추진일지,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등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연구) 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저작권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문의처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02-2133-7615)

서식1. 참가신청서

도시·건축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참 가 신 청 서

성 명 (또는 대표자)		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주 소			
프로필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프로젝트 중심으로 3~4줄 기재		
협업주제명 (제안과제명)			
구 분 (참가주체, 연구분야 ■표기)	참가주체	☐ 개인 ☐ 단체일반	
	연구분야	☐ 조사·기록(도시·건축의 물리적, 사회적 내용 및 변화에 대한 기록) ☐ 연구(서울시 공간개선을 위한 기획 연구) ☐ 아이디어(도시·건축 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주제 등) 제안)	
소요예산			
제출서류 및 목록	1. 협업 제안서 1부 2. 대표적인 기획, 운영프로그램 포트폴리오 1부 3. 공모자(단체) 이력서 1부 4. 단체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본인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도시·건축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제출된 내용과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약속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협업제안서

도시·건축분야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 공모

협업제안서

※ 제출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제안명 (연구/협업 제목)	
연구(제안)배경	
연구(제안)목적	
키워드	
협업기간	* '17.8월~11월 중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간
참여인원	연구기획, 운영 등 총인원(ex. 연구책임: 00명, 연구원: 00명)
제안내용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내용 설명 및 예시 이미지 첨부)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예산 산출 내역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을 지원하며,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출할 연구비(사업비) 집행 계획을 항목별로 기재)	소요항목	산출내역	예산(원)	비고
총 계				

-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서울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지원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서울시 '대학·전문가 협업 사업'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원서 제출로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획서 제출로 지원자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6호(2010.06.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학교, 수도·전기 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796호(2010.10.22.)로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9호(2010.11.11.)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5호(2016.11.0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에 대하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명칭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2) 사업위치 : 광진구 구의동 58-15 ~ 광장동 388-10(아차산사거리~광나루역)
- 3)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폭 50~88m(6→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포함)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래스빌딩 12층
-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8년 6월 31일까지

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열람의견 제출방법

- 1) 열람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 3)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01-14	임	4,690	4,690	1/1	조석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라길 36(성북동)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한주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23, ***동 ****호 (신포동1가, 센트럴아파트)	일시: 2017-05-19 06:00 장소: 신월동 차량: *****6860 내용: 제한 폭 0.24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3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20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20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20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2015.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2015.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2017.2.13) 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3단계 포함)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구분	노선명	기 · 종점	도시철도 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당초	9호선 2단계	강남구 논현동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L=13.753km)	서울특별시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감북동, 둔촌동	9호선 3단계 포함
변경	9호선 3단계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L=9.138 km)	서울특별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감북동, 둔촌동	9호선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구간분리

나. 면 적

- 당 초 : 285,157.18m²
- 변 경 : 2단계 사업완료 : 83,952.70m²
3단계 사업조정 : 201,204.48m²⇒201,034.18m² (감 170.30m²)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2) 성 명 : 서울특별시

마.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기간 : 2009.12.31 ~ 2018.12.31.

바. 공구별 사업계획 변경 내용

[918공구]

- 본선 환기구 930S1 덕트 규모조정
- 본선 환기구 930S1 피난계단 삭제
- 931정거장 자전거주차장 삭제
- 931정거장 덕트(급기#1, 배기#1) 위치 이동
- 931정거장 외부출입구 #2 위치이동

[919공구]

- 931S1 환기덕트 지상 돌출구간의 토지 수용에 대한 오류사항 정정
- 931S2E2 환기구 구조물 단면 변경 및 일시 사용기간 연장
 -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 까지
 -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932정거장 일부 구간 사업시행기간 조정에 따라 일시 사용기간 연장
 -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 까지
 -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04월 30일 까지

[920공구]

- 환기덕트 중앙분리대 이전에 따른 면적증가 감소

[922공구]

- 환기구 덕트위치 변경에 따른 조정
- 937정거장 1번 출입구 공공공지에 이동 설치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따른 출입구, 환기구 등 위치변경

[923공구]

- 본선환기구 938E1 덕트위치 변경
- 외부출입구#1 규모조정
- 자전거 주차장 출입구 변경(정거장 시·종점부)
- 정거장 외부 EV#2 위치 변경
- 본선환기구 937E2 덕트 위치 변경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3. 열람도서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종·평면도 등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772-7131)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 강동구청 도시계획과(☎3425-6022)

※ 공사관련 문의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18공구 담당(☎772-7222)

지하철919공구 담당(☎772-7241)

지하철920공구 담당(☎772-7210)

지하철922공구 담당(☎772-7221)

지하철923공구 담당(☎772-72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

6. 기타사항 :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8공구

1. 수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잠실동 344	도	4,675.5	56 65	도로	서울특별시					930S1 덕트부 증가
2	당초 변경	잠실동 260	도	2,447.5	17 -	도로	서울특별시					930S1 파단계단 삭제
3	당초 변경	잠실동 269	도	3,324.2	46 46	도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잠실동 289	도	4,134.5	147 127	도로	서울특별시					자전거 주차장 삭제
5	당초 변경	잠실동 347	도	4,859.6	194 174	도로	서울특별시					자전거 주차장 삭제, 돌출한기둥이동
6	당초 변경	삼전동 160	도	4,689.3	88 88	도로	서울특별시					외부출입구#2 이동
7	당초 변경	삼전동 23	도	3,230.0	159 159	도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27,360.6	707 659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8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잠실동 126	도	2,926.2	811.0 811.0	도	시	서울특별시				20.40	-0.41 ~ -23.57	
2	당초 변경	잠실동 258	도	2,682.5	1,226.0 1,226.0	도	시	서울특별시				20.40	-0.41 ~ -23.57	
3	당초 변경	잠실동 222-24	도	148.0	1.0 1.0	도	시	서울특별시				19.36	0.22 ~ -20.80	
4	당초 변경	잠실동 222-2	대	219.2	2.0 2.0	대	정지애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2-2 5층				19.36	0.22 ~ -20.80	
5	당초 변경	잠실동 222-3	대	440.3	83.3 83.3	대	김성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7-14				19.09	0.49 ~ -20.59	
6	당초 변경	잠실동 222-4	대	167.7	151.6 151.6	대	최혜경 김성태	서울광진구광장동145-8 위커힐APT23-102 서울강동구암사동187-14	췌유리 은행 은행	중구 회현동1기203 (점권지점)	근저당권 설정	19.12	0.54 ~ -20.54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당초 변경	잠실동 222-5	대	539.1	139.8	대	김성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7-14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중구회현동1가203(잠실지점) 중구을지로1가101-1 (잠실본동지점) 송파구신천동11-6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18.93	1.10 ~ -20.04	
					139.8										
8	당초 변경	잠실동 222-6	대	243.1	140.9	대	황일란 박경자	오금동44현대아파트41-1206 성동구광장동554-7 현대아파트506동1506호					18.90	1.10 ~ -19.98	
					140.9										
9	당초 변경	잠실동 222-7	대	234.9	47.6	대	이성일	강남구 청담동 69-18 청담동양파라곤102-404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가9-1 (영동대로 지점)	근저당권 설정	18.40	1.38 ~ -19.70	
					47.6										
10	당초 변경	잠실동 222-8	대	220.7	0.5	대	김덕중	용인시 구성을 마북리 625 교동마을 현대필그린아파트 109-1604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7가9-1 (영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18.40	1.38 ~ -19.70	
					0.5										
11	당초 변경	잠실동 259	도	1,640.2	498.0	도	시	서울특별시					19.76	0.18 ~ -21.31	
					498.0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2	단초 변경	잠실동 222-25	도	87.6	54.0 54.0	도	시	서울특별시				19.36	0.22 ~ -20.80	
13	단초 변경	잠실동 222-26	도	87.6	88.0 88.0	도	시	서울특별시				19.09	0.49 ~ -20.59	
14	단초 변경	잠실동 222-27	도	96.7	60.0 60.0	도	시	서울특별시				19.12	0.54 ~ -20.54	
15	단초 변경	잠실동 222-28	도	77.5	50.0 50.0	도	시	서울특별시				18.93	1.10 ~ -20.04	
16	단초 변경	잠실동 222-29	도	4.2	4.0 4.0	도	시	서울특별시				18.90	1.10 ~ -19.98	
17	단초 변경	잠실동 260	도	2,447.5	963.0 963.0	도	시	서울특별시				17.83	2.05 ~ -19.51	
18	단초 변경	잠실동 344	도	4,675.5	997.0 997.0	도	시	서울특별시				17.87	2.00 ~ -19.56	
19	단초 변경	잠실동 267	도	2,888.7	348.0 348.0	도	시	서울특별시				15.56	-1.16 ~ -12.74	
20	단초 변경	잠실동 345	도	6,177.2	2,654.0 2,654.0	도	시	서울특별시				13.97	6.04 ~ -17.70	
21	단초 변경	잠실동 268	도	2,532.1	982.0 982.0	도	시	서울특별시				14.23	5.79 ~ -16.43	
22	단초 변경	잠실동 269	도	3,324.2	1,614.0 1,614.0	도	시	서울특별시				14.35	-0.07 ~ -10.27	
23	단초 변경	잠실동 346	도	2,297.4	1,010.0 1,010.0	도	시	서울특별시				14.22	-0.07 ~ -9.45	
24	단초 변경	잠실동 289	도	4,134.5	2,543.0 2,543.0	도	시	서울특별시				6.90	7.58 ~ -13.42	
25	단초 변경	잠실동 347	도	4,859.6	2,334.0 2,334.0	도	시	서울특별시				6.90	7.58 ~ -13.42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 피 심 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6	당초 변경	삼전동 160	도	4,689.3	2,019.0 2,019.0	도	시	서울특별시				6.69	7.80 ~ -8.30	
27	당초 변경	삼전동 23	도	3,230.0	1,535.0 1,535.0	도	시	서울특별시				6.73	7.80 ~ -8.30	
28	당초 변경	삼전동 75	도	2,300.1	938.0 938.0	도	시	서울특별시				13.82	0.68 ~ -8.52	
29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2	238.0 238.0	도	시	서울특별시				13.50	0.09 ~ -7.46	
30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5.7	1,496.0 1,496.0	도	시	서울특별시				13.48	0.99 ~ -8.05	
합계	당초 변경			59,622.5	23,028.7 23,028.7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8공구

3. 일시사용 토지조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잠실동 260	도	2,447.5	130 13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잠실동 344	도	4,675.5	110 11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잠실동 267	도	2,888.7	204 204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잠실동 345	도	6,177.2	289 289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잠실동 269	도	3,324.2	298 298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잠실동 346	도	2,297.4	217 217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변경	잠실동 234-16	대	330.7	- -	대	김학문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377				
8	당초 변경	잠실동 234-10	대	396.9	- -	대	현지숙 이용범	성남시분당구 분당동76신동아빌라401 성남시분당구 분당동76신동아빌라401	장은정(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근저당권 설정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초 변경	잠실동 250-11	대	353.8	-	대	유창모로름㈜	송파구 잠실동 250-11	주식회사력키 (주)엘지화학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0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0	당초 변경	잠실동 250-12	대	330.8	-	대	이덕남	강남구 역삼동69 삼익아파트 2-807				
11	당초 변경	잠실동 250-13	대	330.8	-	대	곽명근 김수정	강남구압구정동434현대아파트113-705 강남구압구정동434현대아파트113-705	(주)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기203 (남역삼동지점)	근저당권설정	
12	당초 변경	잠실동 250-14	대	403.4	-	대	염 데이비드종환	강남구 일원동 718 샘터아파트 108-306	(주)우리은행 (주)국민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기203 (한동지점) 서울중구남대문로2719-1 (가락본동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3	당초 변경	잠실동 250-5	대	1,723.1	-	대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14	당초 변경	잠실동 250-17	대	1,170.3	-	대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15	당초 변경	잠실동 289	도	4,134.5	58 58	도	시	서울특별시				
16	당초 변경	잠실동 347	도	4,859.6	235 235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7	당초 변경	삼전동 160	도	4,689.3	192 192	도	시	서울특별시				
18	당초 변경	삼전동 23	도	3,230.0	170 170	도	시	서울특별시				
19	당초 변경	삼전동 28-6	대	736.6	- -	대	부라온퍼펙트 주	송파구 삼전동 28-6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7가9-1 (서울업무지원센터) 서울중구대평로2가120 (잠실기업금융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20	당초 변경	삼전동 75	도	2,300.1	207 207	도	시	서울특별시				
21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2	63 63	도	시	서울특별시				
22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5.7	203 203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53,051.3	2,376 2,376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1.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번경	삼전동 88	도	3,558.5	84.0 79.5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번경	삼전동 157	도	2,775.9	173.0 174.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번경	삼전동 90	도	2,023.4	66.0 66.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번경	삼전동127-1	도	1,918.4	18.0 18.0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번경	삼전동157-1	도	1,203.9	19.0 19.0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번경	석촌동 189	도	1,852.1	142.0 142.0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번경	석촌동 189-7	도	1,173.5	19.0 19.0	도	시	서울특별시				
8	당초 번경	석촌동 299	도	1,904.9	25.0 25.0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번경	석촌동 298	도	1,912.9	122.0 122.0	도	시	서울특별시				
10	당초 번경	석촌동 208	도	3,317.3	34.0 34.0	도	시	서울특별시				
11	당초 번경	석촌동 318	도	5,039.9	225.0 225.0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당초 변경	석촌동 209	도	14,058.1	232.0 232.0	도	시	서울특별시				
13	당초 변경	석촌동 323	도	4,737.6	78.0 78.0	도	시	서울특별시				
14	당초 변경	송파동 69	도	11,519.2	9.0 9.0	도	시	서울특별시				
15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190.0 190.0	도	시	서울특별시				
16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	198.0 198.0	도	시	서울특별시				
17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6.1	- 34.0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73,810.2	1,634.0 1,664.5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면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2	370.0 370.0	도	시	서울특별시				5.25	9.39 ~ -12.58	
2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5.7	1,363.0 1,346.0	도	시	서울특별시				5.36	14.89 ~ -12.58	
3	당초 변경	삼전동 86	도	3,695.5	1,816.0 1,816.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83 ~ -12.58	
4	당초 변경	삼전동 158	도	4,637.8	2,345.0 2,378.0	도	시	서울특별시				4.41	10.40 ~ -12.22	
5	당초 변경	삼전동 88	도	3,558.5	1,884.0 1,932.5	도	시	서울특별시				4.39	10.40 ~ -11.92	
6	당초 변경	삼전동 157	도	2,775.9	2,077.0 2,082.0	도	시	서울특별시				4.40	10.37 ~ -11.92	
7	당초 변경	삼전동 90	도	2,023.4	1,232.0 1,232.0	도	시	서울특별시				5.55	9.21 ~ -6.49	
8	당초 변경	삼전동 157-1	도	1,203.9	160.0 160.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9	당초 변경	삼전동 127-1	도	1,918.4	159.0 159.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10	당초 변경	석촌동 299	도	1,904.9	150.0 150.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0)m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당초 변경	석촌동 189-7	도	1,173.5	143.0 143.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12	당초 변경	석촌동 189	도	1,852.1	1,370.0 1,370.0	도	시	서울특별시				5.13	8.70 ~ -12.28	
13	당초 변경	석촌동 298	도	1,912.9	1,330.0 1,330.0	도	시	서울특별시				5.13	9.70 ~ -12.28	
14	당초 변경	석촌동 194-1	도	3,794.8	1,867.0 1,867.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6 ~ -13.60	
15	당초 변경	석촌동 303	도	3,575.2	1,753.0 1,753.0	도	시	서울특별시				13.03	7.40 ~ -13.54	
16	당초 변경	석촌동 308	도	2,123.1	1,038.0 1,038.0	도	시	서울특별시				16.53	6.20 ~ -14.26	
17	당초 변경	석촌동 199	도	2,055.9	1,004.0 1,004.0	도	시	서울특별시				16.53	6.20 ~ -14.26	
18	당초 변경	석촌동 199-1	도	2,999.9	1,534.0 1,534.0	도	시	서울특별시				18.13	5.48 ~ -14.74	
19	당초 변경	석촌동 199-4	도	269.0	106.0 106.0	도	시	서울특별시				19.00	4.88 ~ -14.86	
20	당초 변경	석촌동 199-2	도	906.2	472.0 472.0	도	시	서울특별시				18.76	4.76 ~ -14.98	
21	당초 변경	석촌동 199-3	도	516.7	241.0 241.0	도	시	서울특별시				19.00	4.88 ~ -14.86	
22	당초 변경	석촌동 313-1	도	147.5	7.0 7.0	도	시	서울특별시				18.76	4.76 ~ -14.98	
23	당초 변경	석촌동 312	도	2,998.8	1,527.0 1,527.0	도	시	서울특별시				15.72	4.76 ~ -16.03	
24	당초 변경	석촌동 205	도	3,010.4	1,483.0 1,483.0	도	시	서울특별시				15.86	4.64 ~ -16.09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당초 변경	석촌동 208	도	3,317.3	1,584.0 1,584.0	도	시	서울특별시				4.95	10.15 ~ -16.39	
26	당초 변경	석촌동 318	도	5,039.9	2,554.0 2,554.0	도	시	서울특별시				4.95	10.15 ~ -16.39	
27	당초 변경	석촌동 209	도	14,058.1	2,026.0 2,026.0	도	시	서울특별시				5.16	10.09 ~ -11.36	
28	당초 변경	석촌동 317	도	651.4	651.4 651.4	도	시	서울특별시				5.06	10.08 ~ -11.07	
29	당초 변경	석촌동 322	도	611.2	596.0 596.0	도	시	서울특별시				5.12	10.32 ~ -11.36	
30	당초 변경	석촌동 323	도	4,737.6	151.0 151.0	도	시	서울특별시				5.12	10.32 ~ -11.36	
31	당초 변경	송파동 69	도	11,519.2	262.0 262.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42	
32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1,098.0 1,098.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51	
33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	1,500.0 1,500.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51	
합계				107,218.4	35,853.4 35,922.9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3. 임시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2	32.0 32.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5.7	34.0 37.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삼전동 158	도	4,637.8	27.0 34.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삼전동 88	도	3,558.5	119.0 93.0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삼전동 157	도	2,775.9	219.0 209.5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삼전동 90	도	2,023.4	179.0 179.0	도	시	서울특별시				
8	당초 변경	삼전동 157-1	도	1,203.9	50.0 50.0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변경	삼전동 127-1	도	1,918.4	47.0 47.0	도	시	서울특별시				
10	당초 변경	석촌동 299	도	1,904.9	46.0 46.0	도	시	서울특별시				
11	당초 변경	석촌동 189	도	1,852.1	141.0 141.0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자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단초 번경	석촌동 298	도	1,912.9	155.0 155.0	도	시	서울특별시				
13	단초 번경	석촌동 189-7	도	1,173.5	43.0 43.0	도	시	서울특별시				
14	단초 번경	석촌동 208	도	3,317.3	103.0 103.0	도	시	서울특별시				
15	단초 번경	석촌동 318	도	5,039.9	289.0 289.0	도	시	서울특별시				
16	단초 번경	석촌동 209	도	14,058.1	355.0 355.0	도	시	서울특별시				
17	단초 번경	석촌동 323	도	4,737.6	67.0 67.0	도	시	서울특별시				
18	단초 번경	석촌동 322	도	611.2	9.0 9.0	도	시	서울특별시				
19	단초 번경	석촌동 317	도	651.4	- -	도	시	서울특별시				
20	단초 번경	송파동 69	도	11,519.2	127.0 127.0	도	시	서울특별시				
21	단초 번경	송파동 68	도	5,191.4	215.0 215.0	도	시	서울특별시				
22	단초 번경	송파동 1-1	도	6,787.1	231.0 231.0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단초 번경			81,125.4	2,488.0 2,462.5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삼전동 133-13	대	547.8	18.0	대	신상철	삼전동 133-13				
	변경				17.5							
합계	당초			81,673.2	2,506.0							
	변경				2,480.0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1. 수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송파동1-1	도	6,787.10	36.00 107.9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송파동3	도	2,364.10	62.62 62.62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송파동3-15	도	3,145.30	69.50 69.5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송파동64	도	3,978.00	135.48 135.48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송파동68	도	5,191.40	71.00 —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방이동2	도	3,162.80	157.80 157.80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변경	방이동5	도	2,928.00	36.40 —	도	시	서울특별시						
8	당초 변경	방이동94-3	도	14,565.30	36.40 —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변경	방이동94-4	도	2,585.50	— 74.40	도	시	서울특별시						
10	당초 변경	방이동95	도	4,519.60	150.58 150.58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755.78 758.28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명	주 소	소	성명	주 소	소				
1	당초 변경	송파동 1	도	843.10	843.00	도	시	서울특별시						16.70	4.27 ~ -15.50	
					843.00											
2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0	2,824.00	도	시	서울특별시						17.20	2.86 ~ -16.90	
					2,672.00											
3	당초 변경	송파동 1-9	도	495.40	480.0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8 ~ -12.28	
					480.00											
4	당초 변경	송파동 1-10	도	3,076.20	2,894.00	도	시	서울특별시						13.25	7.18 ~ -12.61	
					2,894.00											
5	당초 변경	송파동 2	도	2,638.90	2,615.00	도	시	서울특별시						14.98	5.44 ~ -14.32	
					2,615.00											
6	당초 변경	송파동 3	도	2,364.10	2,185.00	도	시	서울특별시						12.78	2.11 ~ -6.80	
														7.05	7.82 ~ -6.78	
					2,185.00									6.22	8.68 ~ -6.76	
7	당초 변경	송파동 3-15	도	3,145.30	457.00	도	시	서울특별시						6.22	8.68 ~ -6.76	
					457.00											
8	당초 변경	송파동 64	도	3,978.00	3,296.0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8 ~ -12.28	
														12.78	2.11 ~ -6.80	
														7.05	7.82 ~ -6.78	
					3,296.00									6.22	8.68 ~ -6.76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9	당초 변경	승파동 65	도	3,094.30	2,058.00 2,058.00	도	시	서울특별시						13.25	7.18 ~ -12.61	
10	당초 변경	승파동 66	도	1,836.40	779.00 779.00	도	시	서울특별시						14.98	5.44~ -14.32	
11	당초 변경	승파동 67	도	2,137.60	503.00 503.00	도	시	서울특별시						16.07	4.27~ -15.50	
12	당초 변경	승파동 68	도	5,191.40	1,050.00 1,050.00	도	시	서울특별시						12.35	2.53 ~ -11.79	
														17.20	2.86~ -16.90	
13	당초 변경	방이동 1	도	2,545.90	2,074.00 2,074.00	도	시	서울특별시						11.95	3.07~ -5.84	
														11.80	8.75~ -10.99	
14	당초 변경	방이동 2	도	3,162.80	2,529.00 2,529.00	도	시	서울특별시						5.81	8.98~ -6.46	
														6.50	8.50~ -6.11	
15	당초 변경	방이동 3	도	2,511.00	70.00 70.00	도	시	서울특별시						6.19	8.74~ -6.70	
16	당초 변경	방이동 3-2	도	2,764.50	355.00 355.00	도	시	서울특별시						6.19	8.74~ -6.70	
17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0	415.00 415.00	도	시	서울특별시						7.08	7.79~ -6.63	
18	당초 변경	방이동 5	도	2,928.00	1,546.00 1,546.0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98~ -11.77	
														7.08	7.79~ -6.63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0~)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19	당초 변경	방이동 6	도	2,927.50	1,724.00 1,724.00	도	시	서울특별시						11.69	8.59 ~ -11.16	
20	당초 변경	방이동 7	도	381.20	216.00 216.00	도	시	서울특별시						11.70	8.88~ -10.88	
21	당초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0	356.00 252.00	도	시	서울특별시						7.08	7.79~ -6.63	
22	당초 변경	방이동 94-4	도	2,585.50	2,038.00 2,038.0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08	7.98 ~ -11.77 7.79~ -6.63	
23	당초 변경	방이동 94-5	도	3,036.50	2,560.00 2,560.00	도	시	서울특별시						11.77	8.53~ -11.25	
24	당초 변경	방이동 94-6	도	2,709.60	2,645.00 2,645.00	도	시	서울특별시						11.93 11.73	3.09~ -5.82 8.83~ -10.93	
25	당초 변경	방이동 95	도	4,519.60	3,691.00 3,691.00	도	시	서울특별시						5.81 6.50 11.82	8.98~ -6.46 8.50~ -6.11 3.18~ -5.93	
합계	당초 변경				40,203.0 39,947.0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3. 일시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1	당초 변경	송파동1-1	도	6,787.10	81.00 59.0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송파동68	도	5,191.40	96.00 46.0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송파동3	도	2,364.10	103.00 103.0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송파동64	도	3,978.00	158.00 158.00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방이동1	도	2,545.90	84.00 84.00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방이동94-6	도	2,709.60	35.00 35.00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변경	방이동97-4	도	4,032.00	21.00 21.00	도	구	송파구						
8	당초 변경	방이동4	도	1,787.10	23.00 23.00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변경	방이동5	도	2,928.00	27.00 18.00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10	당초 변경	방이동94-3	도	14,565.30	39.00 30.00	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1	당초 변경	방이동94-4	도	2,585.50	14.00 14.00	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2	당초 변경	송파동3-15	도	3,145.30	47.00 47.00	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3	당초 변경	방이동2	도	3,162.80	189.00 189.00	도	시	서울특별시						
14	당초 변경	방이동3-2	도	2,764.50	29.00 29.00	도	시	서울특별시						
15	추가	방이동95	도	4,519.60	205.00 205.00	도	시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16	당초 변경	송파동48-4	대	331.50	4.00 4.00	대	채희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5-50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방이남지점)		근저당권	
17	당초 변경	송파동48-18	대	300.80	12.00	대	허광호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 삼성동 사우스원 1901호						
					12.00		김호연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 삼성동 사우스원 1901호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01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8	당초					대	박수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30, 5층 (역삼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본점, 서초중앙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변경	송파동48-11	대	529.00			박수인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8길 31, 4동 1004호 (반포, 한신 서래아파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본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박수진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420, 101동 1202호(역삼동, 역삼 자이아파트)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9	당초 변경	송파동48-10	대	528.9	10.00 10.00	대	김성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4-702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30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전세권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03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0	당초 변경	방이동107-5	대	380.80	21.30	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28 (동선동 3가)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4 (등촌동) (관악지점)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21	당초 변경	방이동107-6	대	380.60	12.50 12.50	대	이학중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2길 55, 4비호 (방배동, 어퍼하우스2)					
합 계	당초 변경				1,223.50 1,133.50								

토지조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2공구

1. 수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송파구 방이동 89-28	도	58,895.0	11.0		시	서울특별시					
	변경				11.0								
2	당초	송파구 방이동 89-29	도	25,005.9	371.0		시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352.0								
3	당초	강동구 둔촌동 357-1	수	2,496.0	54.0		시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3.0								
4	당초	강동구 둔촌동 359-19	도	149.0	12.0		시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1.0								
5	당초	강동구 둔촌동 227-7	수	21,867.0	328.0		시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92.0								
6	당초	강동구 둔촌동 174-1	대	95,495.6	-		시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716.2								
	합 계			203,908.5	776.0								
					1,175.2								

토지조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2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준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8-15	학	107,322.8	4,856.2 4,856.2		국	교육과학기술 부				18.75	8.37 ~ -14.61	
2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9-28	도	58,895.0	1,360.0 1,360.0		시	서울특별시				19.50	6.09 ~ -14.61	
3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9-22	학	33,032.1	1,335.1 1,335.1		학교법 인동성 학원	방이동 89-22				16.73	8.66 ~ -13.21	
4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9-29	도	25,005.9	3,098.0 2,764.0		시	서울특별시				7.16	20.52 ~ -10.63	
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32-1	수	435.0	89.0 89.0		시	서울특별시				17.35	10.46 ~ -8.84	
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1	도	420.0	26.0 26.0		구	강동구				17.35	10.46 ~ -8.84	
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37	수	3,764.0	1,213.0 1,213.0		시	서울특별시				14.96	13.46 ~ -8.24	
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9	도	72.0	37.0 37.0		시	서울특별시				15.64	13.46 ~ -5.84	
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44	수	1,440.0	641.0 641.0		시	서울특별시				14.81	14.66 ~ -5.84	
1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8	도	122.0	48.0 48.0		구	강동구				15.21	14.66 ~ -4.64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포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2	도	140.0	44.0 44.0		시	서울특별시				15.21	14.66 ~ -4.64	
1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7-1	수	2,496.0	1,208.0 1,359.0		시	서울특별시				5.42	19.76 ~ -3.94	
1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19	도	149.0	93.0 125.0		시	서울특별시				6.19	19.79 ~ -3.89	
1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27-7	수	21,867.0	6,761.0 6,942.0		시	서울특별시				7.16	20.52 ~ -3.88	
1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38-8	도	261.0	88.0 88.0		시	서울특별시				17.21	17.29 ~ -2.01	
1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38-9	도	939.0	504.0 504.0		시	서울특별시				16.96	17.61 ~ -1.93	
1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80-2	학	33,058.6	159.1 159.1		학교법인 창인학원	둔촌동 180-2				16.91	18.11 ~ -1.19	
1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36-5	도	618.0	153.0 153.0		시	서울특별시				19.36	17.73 ~ -1.57	
1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36-4	임	301.0	164.0 164.0		시	서울특별시				19.36	17.73 ~ -1.57	
2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36-3	임	916.0	35.0 35.0		이재환	성북구 성북동 23-9				21.91	17.83 ~ -1.47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1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35-9	임		1,215.0		김옥자	성북구 성북동 330-427				23.50	19.12 ~ -1.38	
	변경			14,678.0	1,215.0		임진서 임진욱	용산구 서빙고동241-21 신동아APT 16-1005 용산구 서빙고동241-21 신동아APT 15-1302						
2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37	답	1,825.0	599.0 599.0		장영호	동작구 노량진동 41-5 건설APT201				21.11	18.73 ~ -1.07	
2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38	임	12,099.0	1,010.0 1,010.0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23.80	19.82 ~ 0.02	
2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27-1	전	572.0	225.0 225.0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13.20	19.92 ~ 0.62	
2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20-1	전	3,230.0	681.0 681.0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13.00	20.42 ~ 0.62	
2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9	임	2,022.0	394.0 394.0		채진균 오화자 배준기	성내동 48-18 성내동 48-21 청담동134-18삼익APT1- 1210				14.42	20.72 ~ 1.12	
2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21	전	231.0	39.0 39.0		전정야	동대문구 중화동 305-4	관리자 송일영	관악구 신림동 545-14	소유권이전 청구관가등기	14.61	20.53 ~ 1.23	
2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13	임	3,138.0	695.0 695.0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채무자 김길수	강남구 일원동 680-4	근저당권 영인관광 개발	21.04	21.12 ~ 1.42	
2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8	임	5,656.0	498.0 498.0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20.07	21.46 ~ 1.83	
3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3	임	1,293.0	30.0 30.0		영인관광 농원(주) 우재병	둔촌동 산32-1 중구 신당동52-232	채무자 김길수	강남구 일원동 680-4	근저당권 영인관광 개발	19.26	21.50 ~ 2.20	
합계	당초 변경			335,998.4	27,298.4 27,328.4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2공구

3. 일시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 ~ 2014. 11월 까지, 변경 :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 ~ 2014. 11월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1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9-28	도	58,895.0	50.0 50.0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8-15	학	107,322.8	128.0 128.0		국	교육과학기술부						
소계	당초 변경			166,217.8	178.0 178.0									

○ 사용기간 : 당초 :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 ~ 2015. 7월 까지, 변경 :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 ~ 2018. 12월 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3	당초 변경	송파구 방이동 89-29	도	25,005.9	717.0 582.0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7-1	수	2,496.0	84.0 81.0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59-19	도	149.0	14.0 8.0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27-7	수	21,867.0	406.0 501.0		시	서울특별시						
소계	당초 변경			49,517.9	1,221.0 1,172.0									
합계	당초 변경			215,735.7	1,399.0 1,350.0									

물건조서

-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2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도면표시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물 건 이 류 종	구 조 및 류 종	수 량	소유자			비 고
							성	명	소	
1	당초	송파구 방이동 88-15	학	장		20m	국		교육과학기술부	
	변경					20m				

토 지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1. 수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성명	성명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3-4	임	31	31		이용규	중구 순화동 1-71		강동구 제주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관리과 세무2과 서울 마포구 영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종로지사)	임류 임류 임류	
	변경													
2	당초	강동구 둔촌동 116-10	도	42.0	15		시	서울특별시						
	변경				15									
3	당초	강동구 둔촌동 105-36	전	61.0	61		에드워드윤 윤석호	312 13번가 스트리트 유닛 비 팔리세이드스파크, 뉴저지07650미 합중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대치동지점)	근저당	
	변경													
4	당초	강동구 둔촌동 105-9	도	8,578.0	8		시	서울특별시						
	변경				0									
5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7-5	임	71.0	71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 회복지회 장원기	강원도원주시인동242-16						
	변경							중구 신당동 644						
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5	도	2,150.0	25		시	서울특별시						
	변경				22									
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7-6	임	9.0	9		구	강동구						
	변경				0									
8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6	도	317.0	68		구	강동구						
	변경				58									
9	당초	강동구 둔촌동 6-3	도	2,251.0	48		시	서울특별시						
	변경				44									
10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8	도	994.0	29		구	강동구						
	변경				29									
11	당초	강동구 둔촌동 6-2	대	66,520.0	553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변경				441									
12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1	임	3,136.0	29		시	서울특별시						
	변경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3	임 공	1,984.0	63 63		시	서울특별시				
1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8-2	전 공	630.0	5 5		시	서울특별시				
1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5-1	도	528.0	3 3		시	서울특별시				
1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7-4	임	32.0	32 32		대한불교 조계종보성사	강동구 둔촌동 7				
1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21	도	24.0	24 24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7	대한불교 조계종보성사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1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4-1 강동구 둔촌동 산125	임 공	7,363.0 69,336.0	25 25		시	서울특별시				
1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4	잡 공	453.0	75 75		시	서울특별시				
2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5	잡 공	840.0	54 0		시	서울특별시				
2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3	잡 공	631.0	22 79		시	서울특별시				
2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2	잡 공	976.0	5 12		시	서울특별시				
2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0	12 12		시	서울특별시				
2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9	임 공	21,388.0	86 86		시	서울특별시				
2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7-4	임 도	631.0	0 35		구	강동구				
합계					1,353 1,252							

토 지 조 서(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준속시까지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8	임	5,656.0	117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18.88	21.45 ~ 2.11	
					117									
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7	임	14,014.0	313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산32-1				15.34	22.91 ~ 2.36	
					313									
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9-3	임	1,293.0	339		영인관광 농원(주) 우재병	둔촌동 산32-1 서울중구신당 동52-232	영인관광개발	서울강동구 둔촌동 산32-1	근저당	15.34	22.91 ~ 2.11	
					339									
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14	대	1,006.0	116		기림전자(주)	강동구 둔촌동 산214	조민호 중소기업은행 (주)교원나라저축은행 (주)교원나라저축은행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174-1 주공아파트 205-406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삼전동지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가압류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6.50	23.32 ~ 3.97	
					116									
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13-4	도	67.0	15		송증권	강동구 둔촌동 산213-5				16.60	23.52 ~ 4.17	
					15									
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14-1	도	596.0	68		시	서울특별시				14.50	25.32 ~ 2.37	
					68									
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13-2	전	1,212.0	226		구민서	하남시 동남로 516(감북동)	(주)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39 (명일동 지점)	근저당 지상권	16.09	24.92 ~ 4.36	
					226									
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14-2	도	459.0	385		시	서울특별시				16.09	24.92 ~ 3.56	
					385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9-20	도	207.0	132		서울특별시 이종국 한종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38-1 송파구 신천동 17-6 크로바아파트 1-906				16.65	26.16 ~ 5.57	
	변경				132									
10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9-2	임	190.0	80		이종국 이영신 한종식	성동구 중곡동 138-10 강북구 수유동 56-65 송파구 신천동 17-6 크로바아파트 1-906	이정신	서울 도봉구 수유동 56-65	근저당	16.65	26.16 ~ 5.57	
	변경				80									
11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9-11	임	1,984.0	24		이석진 이차웅 임경선 유예숙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파션수기자촌아파트 112-502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6동 105호 송파구 가락동 478 가락주공아파트 5-206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36-101	도정열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비치 202동 105호	근저당	17.82	25.92 ~ 6.57	
	변경				24									
12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9-1	임	3,157.0	2		전주남	강동구 둔촌동 203				17.89	26.16 ~ 6.81	
	변경				2									
13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9-18	도	138.0	115		문태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72반포APT 62-307호 서울특별시				17.40	26.89 ~ 6.58	
	변경				115									
14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4-3	도	140.0	72		국	건설부				17.64	26.88 ~ 6.80	
	변경				72									
15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29	임	41.0	10		안철중	둔촌동 182				17.88	26.64 ~ 7.28	
	변경				10									
1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28	도	155.0	103		시	서울특별시				17.61	27.12 ~ 7.76	
	변경				103									

연번	구 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 피 심 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7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산18-26	도	1,435.0	84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한 국기독교장 로회총회유 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연지동136-46				16.62	28.09 ~ 7.29	
18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산24-2	도	63.0	40		시	서울특별시				16.28	28.09 ~ 8.73	
19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116-5	도	4,340.0	2,800		시	서울특별시				5.02	30.71 ~ 8.97	
20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118-2	도	509.0	35		시	서울특별시				5.25	30.48 ~ 16.29	
21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116-10	도	42.0	21		시	서울특별시				4.59	30.71 ~ 16.76	
22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산18-24	도	1,172.0	539		시	서울특별시				7.97	27.89 ~ 17.73	
23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105-9	도	8,578.0	4,401		시	서울특별시				8.18	30.39 ~ 19.61	
24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산17-4	임 도	640.0	279		구	강동구				3.59	37.57 ~ 21.67	
25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6-16	도	317.0	85		구	강동구				3.59	37.57 ~ 21.67	
26	당초 변경	강동구 문촌동 산16-5	도	2,150.0	2,044		시	서울특별시				3.50	37.65 ~ 17.42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3	임	1,984.0	111		시	서울특별시				2.86	37.64 ~ 21.66	
	변경		공		111									
28	당초	강동구 둔촌동 8-2	전	630.0	243		시	서울특별시				1.43	37.77 ~ 21.77	
	변경		공		243									
29	당초	강동구 둔촌동 8-1	도	1,546.0	1,546		시	서울특별시				1.39	37.81 ~ 21.75	
	변경				1,546									
30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7	임	441.0	106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8	36.96 ~ 21.06	
	변경				106									
31	당초	강동구 둔촌동 7-1	임	427.0	122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0.94	37.81 ~ 21.90	
	변경				122									
32	당초	강동구 둔촌동 7	증	898.0	4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6	36.83 ~ 20.93	
	변경				4									
33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4-2	임	1,264	12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6	36.83 ~ 20.93	
	변경				12									
34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7	도	13	13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6	36.83 ~ 20.93	
	변경				13									
35	당초	강동구 둔촌동 6-20	도	4.0	4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6	36.83 ~ 20.93	
	변경				4									
3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4-1	임	7,363.0	2		시	서울특별시				0.89	37.87 ~ 21.97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2									
37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4	잡	453.0	177		시	서울특별시				0.93	37.91 ~ 22.01	
	변경		공		177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3	잡	631.0	294		시	서울특별시				2.73	36.16 ~ 22.35	
			공		95									
3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5	잡	840.0	59		시	서울특별시				2.73	36.16 ~ 22.35	
			공		0									
4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2	잡	976.0	13		시	서울특별시				2.75	36.18 ~ 22.37	
			공		7									
4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5-1	도	528.0	525		시	서울특별시				0.94	37.81 ~ 21.91	
					525									
4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8	도	994.0	275		구	강동구				0.76	37.93 ~ 21.67	
					298									
4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3	도	2,251.0	2,129		시	서울특별시				0.90	37.93 ~ 21.89	
					2,162									
4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5	도	2,383.0	1,743		시	서울특별시				7.29	31.90 ~ 21.39	
					1,743									
4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1	도	506.0	314		시	서울특별시				8.40	30.92 ~ 22.71	
					314									
4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4	도	1,276.0	817		시	서울특별시				8.41	31.04 ~ 22.75	
					817									
4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2	도	1,931.0	1,076		시	서울특별시				7.99	31.67 ~ 22.25	
					1,076									
4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8	도	38.0	18		시	서울특별시				8.76	31.00 ~ 23.19	
					18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72	도	1,208.0	555 555		시	서울특별시				8.77	31.13 ~ 23.20	
5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46	도	403.0	256 256		시	서울특별시				8.77	31.13 ~ 23.32	
5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70	도	1,053.0	443 443		시	서울특별시				8.21	31.24 ~ 23.43	
5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39	도	987.0	414 414		시	서울특별시				7.65	31.28 ~ 23.47	
5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67	도	1,504.0	775 775		시	서울특별시				6.66	31.56 ~ 22.82	
5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23	도	1,665.0	586 586		시	서울특별시				6.54	31.48 ~ 22.82	
5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66	도	2,214.0	687 687		시	서울특별시				8.12	31.20 ~ 22.88	
5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7	임 도	136.0	29 29		시	서울특별시				9.28	31.01 ~ 23.20	
5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0	801 801		시	서울특별시				4.42	36.70 ~ 18.94	
5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9	임 공	21,388.0	72 72		시	서울특별시				4.42	36.70 ~ 18.94	
59	당초 변경	하남시 김북동 491	도	714.0	95 95		국	건설부				14.50	25.32 ~ 2.37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 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0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7-2	도	1,061.0	223 223		국	건설교통부				15.72	22.92 ~ 2.77	
61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8-2	도	982.0	641 641		국	건설부				15.91	24.52 ~ 3.57	
62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8-3	도	583.0	37 37		시	서울특별시				16.49	24.52 ~ 4.37	
63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9-10	도	162.0	45 45		시	서울특별시				17.26	24.92 ~ 5.57	
64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9-2	도	317.0	237 237		국	건설부				16.46	25.72 ~ 5.17	
65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9-9	도	23.0	5 5		국	건설부				17.26	24.92 ~ 5.57	
66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459-8	도	229.0	68 68		시	서울특별시				17.49	25.32 ~ 5.97	
67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산119-8	임	216.0	46 46		전대욱 전수정 전소영	남양주시주안면능래리617 용산구이촌동395대림아파트 103-904 대전유성구전민동464-1 엑스포APT305-1003				17.35	26.39 ~ 6.16	
68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산119-10	도	66.0	21 21		시	서울특별시				17.72	25.72 ~ 6.37	
69	당초 변경	하남시 감북동 산119-9	도	164.0	73 73		시	서울특별시				17.89	26.16 ~ 6.81	
합계	당초 변경				28,918 28,621									

토 지 조 서

3. 일시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용기간

당초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6.30까지, 변경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0.30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성명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주소		
1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118-7	답	146	3		제단범이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중로구 연지동 136-46				본선환기구 (937S2)
2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118-24	도	1,172	149		시		서울특별시				
3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118-2	도	509	39		시		서울특별시				
4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23-3	임	99	16		이용규		중구순화동 1-71	강동구 제주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관리과,세무2과 서울 마포구 영리동 168-9 의료보험화관 (종로지사)	임류 임류 임류	본선환기구 (937S2)
5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17-2	도	661	2		시		서울특별시				
6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16-11	도	967	4		시		서울특별시				
7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16-10	도	42	5		시		서울특별시				
8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16-5	도	4,340	234		시		서울특별시				
9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05-9	도	8,578	970		시		서울특별시				
10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05-32	전	330	2		김태수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4 마천금호아파트 1005호				본선BOX
11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05-33	전	433	5		김성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06 우림루미아트 101-701				본선BOX
12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05-34	차	200	14		김성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06 우림루미아트 101-701	주용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2 흥덕마을 11단지 경남아너스빌 1103-1103	지상권	본선BOX
13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05-12	대	330	6		김성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06 우림루미아트 101-701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신설동지점)	근저당	본선BOX

○ 사용기간

당초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6.30까지, 변경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0.30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당초	강동구 둔촌동 105-1	전	2,197	30		에드워드윤 윤석호	312 13번가 스트리트 유닛 비 팔리세이드스파크, 뉴저지07650미합중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대치동지점)	근저당	본선환기구 (937E2)
	변경											
15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7-2	임	1,722	49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정원기	강원도원주시인동242-16 서울중구신당동644				본선환기구 (937E2)
	변경											

○ 사용기간

당초 : 정거장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8.31'까지, 변경 : 정거장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17.12.31'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종류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7-4	임 도	640	105 87		구	강동구			
1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6	도	317	17 12		구	강동구			
1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2	대	66,520 66,234	431 370		한국보훈복지 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938정거장
1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5	도	2,150	62 62		시	서울특별시			
2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8-1	임 공	3,136	68 68		시	서울특별시			
2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3	임 공	1,984	80 80		시	서울특별시			
2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8-2	전 공	630	61 61		시	서울특별시			
2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7	임	441	135 135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938정거장
2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7-1	임	427	167 16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938정거장
2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7	종	898	9 9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강동구 둔촌동 7			938정거장

○ 사용기간

당초 : 정거장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8.31까지, 변경 : 정거장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17.12.31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4-2	임	1,264	30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 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938정거장
	변경				30								
2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4-1	임	7,363	21		시	서울특별시					
	변경				18								
28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13	13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938정거장
	변경				13								
29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7	도	4	4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938정거장
	변경				4								
30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4	잡	453	73		시	서울특별시					
	변경				73								

○ 사용기간

당초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6.30'까지, 변경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2.31'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1	당초	강동구 둔촌동 6-5	잡	840	37		시	서울특별시				
	변경		공		0							
32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3	잡	631	52		시	서울특별시				
	변경		공		43							
33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2	잡	976	15		시	서울특별시				
	변경		공		15							
34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3-1	임	6,280	7		시	서울특별시				
	변경		공		7							
35	당초	강동구 둔촌동 6-3	도	2,251	42		시	서울특별시				
	변경				30							
36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8	도	994	114		구	강동구				
	변경				91							
3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1-5	도	2,383	304		시	서울특별시				
	변경				304							

○ 사용기간

당초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5.06.30까지, 변경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2.31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주소		
38	초당동경	강동구 둔촌동5-1	도	506	42 42		시	서울특별시						
39	당면경	강동구 둔촌동 산11-4	도	1,276	166 166		시	서울특별시						
40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1-3	임	11,941	3		시	서울특별시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23	공	69,336	3									
41	초당동경	강동구 둔촌동 1-2	도	1,931	230 230		시	서울특별시						
42	당초	강동구 둔촌동 3-8	도	38	8 8		시	서울특별시						
43	당면경	강동구 둔촌동 572	도	1,208	153 153		시	서울특별시						
44	초당동경	강동구 둔촌동 산146	도	403	71 71		시	서울특별시						
45	당초	강동구 둔촌동 570	도	1,053	123 123		시	서울특별시						
46	당면경	강동구 둔촌동 산139	도	987	119 119		시	서울특별시						
47	초당동경	강동구 둔촌동 567	도	1,504	143 143		시	서울특별시						
48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23	도	1,665	236 236									
49	당면경	강동구 둔촌동 566	도	2,214	183 183		시	서울특별시						
50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19	임	21,388	77 77		시	서울특별시						
51	초당동경	강동구 둔촌동 산117	임	136	13 13		시	서울특별시						
52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	148 148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226,400	5,090 4,922									

별첨 2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종 류	수 량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당초 번경	둔촌동 산16-7	임	헬스	메쉬헬스	6.1m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2	당초 번경	둔촌동 105-26	차	화단		9.6㎡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3	당초 번경	둔촌동 6-2	대			91㎡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4	당초 번경	둔촌동 105-26	차	정원수	PVC 배기덕트	4그루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5	당초 번경	둔촌동 6-2	대			23그루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6	당초 번경	둔촌동 산16-7	임			117그루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7	당초 번경	둔촌동 6-2	대	소각로 배기구		2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8	당초 번경	둔촌동 105-26	차	공원등		1개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9	당초 번경	둔촌동 6-2	대			3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10	당초 번경									
11	당초 번경									
합계	당초 번경					153				
						15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4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6.5.29. 개정, '17.5.30.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인 등록
- 최초 사용일자 : 2017년 7월 10일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인	2.1cm × 2.1cm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6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 2017. 6. 29.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장관	노원구 공릉동1-1	88,768.5	88,768.5	증감 없음	220,423.37	197,178.18	감 23,245.19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72)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7호****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장

1. 업 체 명 : 더맑음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최서윤(1986.02.22.)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807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1호
6. 등록일자 : 2017. 6.30.
7. 전화번호 : 02-6954-20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49호****중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6. ~ 2017. 7. 19.(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 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진오중합건설 (최병은)	건축공사업 01-385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26호(수서동)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록말소	2017.7.19. (수) 14:00 시설안전과 청문실	시설안전과 주무관 노은영	법 제83조 제5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전화 02-2133-8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기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길 *- ***호 (토당동, **연립)	일시: 2017.04.17. 16:42 장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이마트앞 증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85톤(4.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김승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3길 *** ***동 ***호 (화곡동, ***)	일시: 2017.04.17. 20:06 장소: 서대문구 총정로3가 총정리시온 주상복합앞 서소문고가(20톤) 내용: 총중량 24.65톤(4.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이목원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6길 ** *층 ***호 (흑석동)	일시: 2017.04.28. 15:19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김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7번길 *- *동***호 (남촌동, **빌라)	일시: 2017.04.07. 09:53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15톤(4.15톤 초과),3회적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임병복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	일시: 2017.02.08. 09:38 장소: 은평구 갈현동 삼성아파트앞 내용: 축하중 11.8톤(1.8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3.28. 납기일: 2017.05.31.
이천우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반월산성로***번길 *	일시: 2017.03.04. 12:15 장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월드빌 아파트 맞은편 내용: 차량폭 2.78m(0.28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3.28. 납기일: 2017.05.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57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측량업 등록 현황

업종(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3781)	대양이엔지 (192-68-00124)	이경호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94, 5층 513호(마곡동, 마곡더블유타워)	2017.06.26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61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승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길	일시 : 2017-02-17 07:51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서울06자8939(덤프)차량 축하중 1.9톤 초과	처분일 : 2017. 3. 27.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5. 31. 독촉일 : 2017. 6. 1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7.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6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발산건강생활	서울 후-제608호	강충미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201호(화곡동, 덕용빌딩) (02-975-3595)	소재지 (17.05.31.)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33, 301호(내발산동)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201호(화곡동, 덕용빌딩)
대치건강생활	서울 후-제115호	김민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2길 21, 2층 (대치동) (02-501-2540)	소재지 (17.05.3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38, 302-2호 (대치동, 오성빌딩)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2길 21, 2층 (대치동)
아모레퍼시픽 마포월드지사	서울 후-제18호	유지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 3층 302호(동교동) (02-3142-0841)	소재지 (17.06.01.)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79, 3층 301호(망원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 3층 302호(동교동)
마임 서울대지사	서울 후-제247호	황규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4, 203호(봉천동) (02-879-1914)	소재지 (17.07.26.)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0, 203호(봉천동)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4, 203호(봉천동)
리엔케이 마포망원지점	서울 후-제602호	주미순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21-30, 203호(성산동,예지빌딩) (02-3431-7559)	상 호 (17.06.15.)	리엔케이송파신천지점	리엔케이마포망원지점
				소재지 (17.05.3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4-18, 2층(잠실동)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21-30, 203호(성산동,예지빌딩)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오휘 신정동지사	서울 후- 제394호	임승철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5, 402호 403호(신정동, 로데오프라자) (02-2607-2975)	소재지 (17.06.02.)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7, (신정동)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5, 402호 403호(신정동, 로데오프라자)
리엔케이 영등포당산점	서울 후- 제682호	이혜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2층 나열 49호(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02-6925-1400)	소재지 (17.06.1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4길 3, 604호 (당산동5가, 삼성타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2층 나열 49호(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주)웰리빙 라이프	서울 후- 제491호	이성욱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6층 (동자동, 부양빌딩) (1544-4694)	상 호 (17.06.16.)	한국통합상조(주)	(주)웰리빙라이프
대왕상사	서울 후- 제446호	채영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903동 1209호 (등촌동, 등촌9단지주공아 파트) (010-7124-7912)	소재지 (17.06.25.)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3길 19, 806호 (화곡동, 강서포스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903동 1209호 (등촌동, 등촌9단지주공아 파트)
알즈너 자유대리점	서울 후- 제700호	김옥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9길 37, 1층 (중곡동) (010-8700-6576)	소재지 (17.05.31.)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05-9, 1층 102호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9길 37, 1층 (중곡동)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에이치 비네트웍스	서울- 제824호	홍성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904호 (성수동2가, 성수동아크밸리) (1899-5990)	소재지 (17.05.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4층(대치동, 에이치타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904호 (성수동2가, 성수동아크밸리)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장고코리아	서울 - 제850호	노석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3층(대치동) (02-2038-2376)	'17.05.31.	공제조합해지
(주)코넥스	서울 - 제844호	나병덕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501호(역삼동, 파라다이스벤처빌딩) (02-538-8430)	'17.06.05.	경영악화
(주)웰컴홈	서울 - 제793호	최문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3, 4층(삼성동, 명지빌딩) (02-6959-4400)	'17.05.24.	공제조합해지
(주)위메드	서울 - 제672호	정팔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1510호(삼성동, LG트윈텔1) (02-1577-6888)	'17.06.12.	공제조합해지
(주)에이지커뮤니티	서울 - 제781호	박종필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1, 3층 (논현동, 삼현빌딩) (02-6925-0113)	'17.06.29.	공제조합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니베라중앙	서울 후-제322호	백정현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19, 3층(중화동, 제일프라자) (02-2209-8202)	'17.06.01.	개인사정
김정문알로에강북지부	서울 후-제579호	홍승욱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67길 8, (수유동) (02-992-8744)	'17.06.05.	사업악화
김정문알로에북부지부	서울 후-제29호	신삼목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1, 701호(창동, 한성빌딩) (02-999-9331)	'17.06.05.	개인사정
김정문알로에구로지점	서울 후-제34호	최정애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34, (오류동) (02-2617-0686)	'17.06.05.	개인사정
(주)오투옥서스	서울 후-제574호	김정숙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 (광희동2가, 성우빌딩) (02-2285-0552)	'17.06.09.	경영악화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아모레퍼시픽 신촌지사	서울 후- 제28호	박영식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 302호(동교동) (02-3142-7923)	'17.06.01.	영업부진
마임마장지사	서울 후- 제638호	최금숙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10나길 69, 3층(마장동, 청구빌딩) (02-2295-0508)	'17.06.12.	영업부진
마임 방화서부지사	서울 후- 제594호	임이랑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16길 11, 2층(방화동) (02-2661-4399)	'17.06.14.	개인사정
(주)스페이스웰빙	서울 후- 제560호	김금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1311호(역삼동,에스케이허브) (02-525-2405)	'17.06.02.	개인사정
알즈너 해오름대리점	서울 후- 제659호	남인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33길 6, 1층(용문동) (02-714-2060)	'17.06.20.	사업부진
(주)한주라이프	서울 후- 제581호	강평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1길 13, 401호(당산동3가, 환타지아빌딩) (02-412-9277)	'17.06.29.	방문판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71호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외 3필지(187-11, 187-17, 187-18)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장

I. 열람 기간 : 2017. 7.7 ~ 2017. 7.20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 사업팀(☎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 (1,279.6)	1984.7.4. (서울시 고시 397호)	

주 : 항목 중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송파구 잠실동 180-10외 3필지)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총괄 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67,687	—	367,687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3,348	—	312,068.4	84.9	
	제1종일반주거지역	9,406	—	9,406	2.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4,648	—	104,648	28.5	
	제2종일반주거지역	57,086	—	57,086	15.5	
	제3종일반주거지역	139,576	감) 1,279.6	138,296.4	37.6	
	준주거지역	2,632	—	2,632	0.7	
상업 지역	소 계	54,339	증) 1,279.6	55,618.6	15.1	
	일반상업지역	54,339	증) 1,279.6	55,618.6	15.1	

■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79.6	—	1,279.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9.6	감) 1,279.6	—	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279.6	1,279.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송파구 잠실동 187-10외 3필지 (187-11, 187-17, 187-18번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279.6	250	68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⑥	미관지구 (석촌호수길)	중심미관 지 구	신천동 교통회관 ~ 잠실1134블록	69,490	2,900	양측12m	1985.2.26. (서고121호)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최대 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제한없음	
이면부	제한없음(단, 종교집회시설은 2,000㎡)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규제)	• 동일소유, 기공동개발(기 맞벽건축), 간선변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경우	

■ 가구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B5-2	2,524.1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B5-2	기정	잠실동 187-10, 187-17	공동개발 지정	
	변경	잠실동 187-10, 187-11, 187-17, 187-18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B5-2 공동개발 지정 추가 - 지정 : 잠실동 187-10, 187-17 - 변경 : 잠실동 187-10, 187-11, 187-17, 187-1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확대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 정

구 분		전 층	비 고
용도	불허용도(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2.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가 용적률의 10% 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인 경우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캠블링 및 배팅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 용도 (b)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 기 제외)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소로 3-37도로변 지장상가기능유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 것
		1층	-

■ 변 경

구 분		전 총	비 고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지원시설 (지상1층, 174.51㎡)
	불허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주1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잠실동 187-10, 11, 17, 18번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50% 이하	• 75% 이하	•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	• 기본용적률 680% 이하	
최고높이	• 35m 이하	• 50m 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50%이하 - 변경 : 75%이하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 250%, 허용350%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680%이하 - 높이변경 - 기정 : 35m이하 - 변경 : 50m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기준 준용

■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계획사항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 공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5.23%(322.81㎡)	• 모든 항목을 충족 할 경우 기본용적 률 680% 부여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3.82% : 16.18%	
	주거	• 80% 초과 90%이하	•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30.05% : 69.95%	
	공공임대 : 민간임대	• 25% : 75%	(87세대 : 195세대)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4.17㎡계획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4.17㎡, 49.75㎡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 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 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 50㎡이상 설치	• 3층에 174.51㎡계획	

다. 건축물의 건축선 배치 형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1~3m	좌동	결정도 참조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사업조건 항목		제어기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1~6m	
통 로	공공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보차혼용도로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범위 허용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72호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외 2필지(140-33, 140-34)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7. 7.7 ~ 2017. 7.20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45)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역삼2동,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1,578.3)	1984.7.4. (서울시 고시 189호)	

주 : 항목 중()의 숫자는 사업대상지(강남구 삼성동 140-32외 2필지)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59,160	-	959,160.0	100.0	
주거지역	소 계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상업지역	소 계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일반상업지역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78.3	-	1,578.3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8.3	감) 1,578.3	-	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78.3	1,578.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외 2필지 (140-33, 140-34번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578.3	250	68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⑥	선릉로	일반 미관지구	역삼동705-24~ 삼성동141-36	2,160	90	양측12	서고164 (82.12.31)	-
기정	⑧	선릉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삼동682-21~ 삼성동172-98	12,720	530	양측12	서고164 (82.12.31)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공공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규제)	기공동개발된 필지,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경우	

■ 가구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C5-3	1,578.3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C5-3	기정	-	1,578.3	공동개발 지정	
	변경	삼성동 140-32, 140-33, 140-34	1,578.3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C5-3 공동개발 지정 - 기정 : - - 변경 : 삼성동 140-32, 140-33, 140-3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확대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 정

구 분		전 층	비 고
용도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주거지역
	권장용도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주거지역

주 : 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이상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3) 가로활성화용도라 함은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 또는 업무 및 사무실 이외의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중 관련청이 인정하는 용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예) 공공기여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 전시, 공연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 변 경

구 분		전 층	비 고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지원시설 (11층, 103.40㎡)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상업지역중 주거지역 연접부
	권장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주1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삼성동 140-32,33,34번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50% 이하	• 79% 이하	•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 기본용적률 680% 이하	
최고높이	• 40m 이하	• 41m 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지정 : 50%이하 - 변경 : 79%이하 - 용적률 변경 - 지정 : 기준 220%, 허용250%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680%이하 - 높이변경 - 지정 : 40m이하 - 변경 : 41m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 준용

■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계획사항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 · 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 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5.26% (398.70㎡)	•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용적률 680% 부여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9.50% : 10.50% •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8.68% : 71.32% (83세대 : 209세대)	
	주거	주거비율	• 80% 초과 90%이하		
		공공임대 : 민간임대	• 25% : 75%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9.80㎡, 23.76㎡ 계획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9.80㎡, 23.76㎡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 50㎡이상 설치	• 11층에 103.40㎡계획	

다. 건축물의 건축선 배치 형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건축지정선	- 건축물 1~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1/2이상 접해야 함 - 테헤란로변 : 3m	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 3~20m - 간선가로 : 3m - 이면부 : 일부구간 1~3m -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대규모 필지 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결정도 참조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사업조건 항목		제어기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통 로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보차혼용도로	•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보차혼용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통로 일부 폐지 및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폭 25m이상 도로변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단, 대지의 분할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주차출입구		•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주차출입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에서의 차량출입구 설치		• 주차출입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대지 중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차량출입구는 도로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와 설치하여야 함. 단, 도로폭이 6m이상(기존도로 포함)의 통로를 확보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 - 단, 대지에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로내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가 필요한 도로에 지정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81호

**동대문구 신설동 98-18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2017. 7. 7. ~ 2017. 7. 2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32)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	145,615.0	1997.2.25. (서고 제1997-41호)	재정비 (서고 제2011-170)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지정용도	SR5-B7	-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신설동 98-18’에 한함

구분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불허용도 (이면부(B))	전층	SR5-B7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공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위업, 성인전화방, 성인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변경 없음
권장용도 (전구역(a))	전층	SR5-B7	• 업무시설 • 관광호텔(청계천변 상업지역에 해당)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좌동	변경 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SR5-B7’ 내 ‘98-18’ : 공동주택 (주거복합) 계획	•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SR5-B7’ 에 위치한 “98-18”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1)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준주거지역	60%이하	좌동	‘SR5-B7’ 에 위치한 “98-18” 에 한함
용적률	하정보변 이면부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360%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	• 기본용적률 : 5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 30m 이하	• 42m이하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최고높이 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본용적률/상한용적률 변경 • 최고높이 변경 - 기정 30m → 변경 42m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500% 완화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최고높이 완화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신설)

사업조건 항목		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 기본용적률의 6%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기본용적률 500% 부여	• ‘SR5-B7’에 위치한 “98-18”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제한 없음 (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50㎡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서울시교육청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7-9호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7.6.29.)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장	관				
합 계		636,404,406	8,147,724,724	8,784,129,130	7.8%
이전수입	소계	579,848,061	7,403,238,029	7,983,086,090	7.8%
	중앙정부이전수입	526,231,527	4,484,597,540	5,010,829,067	11.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132,990	2,914,634,149	2,957,767,139	1.5%
	기타이전수입	10,483,544	4,006,340	14,489,884	261.7%
자체수입	소계	53,705	162,106,993	162,160,698	0.0%
	교수-학습활동수입	0	122,641,861	122,641,861	0.0%
	행정활동수입	0	5,175,636	5,175,636	0.0%
	자산수입	19,160	13,718,516	13,737,676	0.1%
	이자수입	0	4,065,975	4,065,975	0.0%
	금융자산회수	0	0	0	0.0%
	기타수입	34,545	16,505,005	16,539,550	0.2%
차입	소계	△137,075,626	270,516,002	133,440,376	△50.7%
	지방교육채	△137,075,626	270,516,002	133,440,376	△50.7%
기타	소계	193,578,266	311,863,700	505,441,966	62.1%
	전년도이월금	193,578,266	311,863,700	505,441,966	62.1%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합 계	636,404,406	8,147,724,724	8,784,129,130	7.8%
1. 유아및초중등교육	561,205,518	7,782,061,941	8,343,267,459	7.2%
가. 인적자원운용	41,706,098	4,285,829,479	4,327,535,577	1.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4,273,249	340,322,841	424,596,090	24.8%
다. 교육복지지원	352,117,588	903,735,074	1,255,852,662	39.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2,306,886	42,399,806	64,706,692	52.6%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53,934	1,804,885,071	1,805,039,005	0.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0,647,763	404,889,670	465,537,433	15.0%
2. 평생·직업교육	1,986,626	24,270,505	26,257,131	8.2%
가. 평생교육	2,226,626	23,357,205	25,583,831	9.5%
나. 직업교육	△240,000	913,300	673,300	△26.3%
3. 교육일반	73,212,262	341,392,278	414,604,540	21.4%
가. 교육행정일반	8,465,583	88,624,211	97,089,794	9.6%
나. 기관운영관리	523,080	50,325,287	50,848,367	1.0%
다. 지방채상환및리스크	72,816,118	186,120,580	258,936,698	39.1%
라. 예비비및기타	△8,592,519	16,322,200	7,729,681	△52.6%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93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지동 231-1 외 2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4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6.20.)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종로구청장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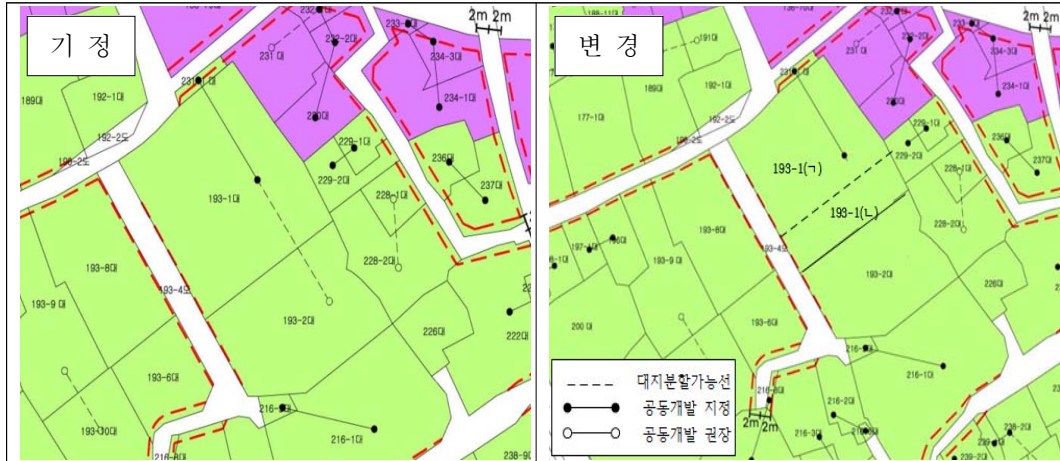
기 정			변 경		
지번	면적(㎡)	비 고	지번	면적(㎡)	비 고
연지동 231-1	16.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1-1	16.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3-1	607.6		연지동 193-1(ㄱ)	522.25	
계	624.1		계	538.75	
연지동 193-2	378.2	연지동 231-1, 193-1 공동개발(권장)	연지동 193-2	378.2	단독개발
			연지동 193-1(ㄴ)	85.35	
계	378.2		계	463.55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중구고시 제2017-51호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7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3호(2013.12.26.),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112호(2014.12.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43호(2014.05.28.)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34호(2015.05.27.),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67호(2016.6.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무교·다동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 3,946.1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4. 준공인가일 : 2017. 6. 30.

5. 정비사업 준공인가 내역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비 고
		합 계	공 원	
3,946.1	3,518.8	427.3	427.3	

※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1,935.15㎡	건폐율 : 54.99%
연 면 적	53,981.06㎡	용적률 : 1,083.00%
층 수	지하6층, 지상26층	높이 : 109.95m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정비기반시설

종 류	명 칭	위 치	면적(㎡)	귀속청	비 고
공원	다동공원	다동 51번지 일대	427.3	서울특별시 중구	
계			427.3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동대문구고시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배봉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14)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73호(1999.11.29.)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7-550호(2017.06.15.)로 열람공고한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산7-11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배봉산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산7-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5,085㎡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고시방법 : 시보게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권리의 종류및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회경동 산7-11	임야	5,085	5,085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 노원구고시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482호(2016.06.09.)로 실시계획 열람 공고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63호(2016.07.1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72호(2016.08.1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변경결정 고시일자	지형도면 고시일자
노원구 상계동111-549 ~상계동37-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도로개설 B = 25~30m L = 541m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32호 (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32호 (2016.04.28.)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701-1)

다. 사업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변경없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 임(변경)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 02-2116-4142,4139), 주택사업과(전화 : 02-2116-3928,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상계제정비축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번 (원지 예정지)	지목 (원지 목적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공부 평면적 (㎡)	현재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 관리내용																																																																																																																																																																																																																																																																																																																																																																																																																																																																																																																																																																																																																																																																																																																																																																																																																																																																																																																																																																																																																																																																																																																																																																																																																																																																							
연번	연번	1	계화도로 71-2 (13블럭2필지)	도	4514	11,174.3	5.8	56/25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계획도로 71-2 (3블럭2필지)	소재지지번 (원지(예정지))	지목 (원지 목적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공부 평면적 (㎡)	현재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 관리내용																																																																																																																																																																																																																																																																																																																																																																																																																																																																																																																																																																																																																																																																																																																																																																																																																																																																																																																																																																																																																																																																																																																																																																																																																																																														

(2구역)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번 호지대칭지)	지목 (현상적 이용 상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연번	소재지(번 호지대칭지)	지목 (현상적 이용 상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 유 자	
6	계획도로 111-588 (28필트) 2필트	도	1,133.0	1,855.9	82.1		서울 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특별시	변경 없음
7	111-533 (11블록 14필트)	대	35.0	35.0	62.8	이월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변경 없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6번길 18-1, 202호(중영동)	노원 세마로고	서울시 노원구 한글마로24길7	노원 세마로고			서울시 노원구 한글마로24길7	2017년 9.30
			35.0	35.0	37.9	35/70	문정역	조영민	조영민	서울시 송파구 세마로 176, 101-110호 (문정동, 트윈 플라자)	조영민			서울시 송파구 세마로 176, 101-110호 (문정동, 트윈 플라자)	소유주 변경
			70.0	70.0	100.7	100.7	소 계								
	111-534 (11블록 14필트)	대	26.0	26.0	43.4	26/32	이공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	변경 없음
			6.0	6.0		6/32	서울 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32.0	32.0	43.4	43.4	소 계								
8	111-531 111-532 (11블록 15필트)	대	116	4.91	9.8	4.91 /116	정병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35 세마로 1차 301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35 세마로 1차 301호	변경 없음 소유권 대지권설정 111-531 면적: 59㎡ 111-532 면적: 58㎡
			116	4.91	9.8	4.91 /116	이대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계동 340-3 한마로빌라 3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계동 340-3 한마로빌라 302	
			116	4.6	9.2	4.6/ 116	문미애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111-531 111-532 (11블록 15필트)	대	116	4.6	9.2	4.6/ 116	이대찬	서울 노원구 상계동 833(상계동) 덕계로 833(상계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833(상계동) 덕계로 833(상계동)	
			116	4.6	9.2	4.6/ 116	김교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39 상계동 112-39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39 상계동 112-39	
			116	9.82	19.6	9.82 /116	문미애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116	9.8	19.6	9.8/ 116	문미애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illegible]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번 호) 소재지(번 호) 소재지(번 호)	지목 (원상) (원상) (원상)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관리내용																																																																																																																																																																																																																																																																																																																																																																																																																																																							
11	계곡도로 111-569 (29블럭200㎡)	도	1164.0	1164.0	1620.61(450.3)	1620.61(450.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연번	소재지(면적) (원지(예정지))	지목 (원상적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 외의 관리내용	변경 없음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성 명																																																																																																																																																																																																																																																																																																																																																																																																																																																																																																																																																																																																																																																																																																																														
16	111-540 (10블럭 10필트)	대	119	9.5	81.9	12.4	63/119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74	정용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74		변경 없음																																																																																																																																																																																																																																																																																																																																																																																																																																																																																																																																																																																																																																																																																																																														
			119	8.5	72.8	11.0	56/119	서울 도봉구 방학동 507 우정아파트 103-1101	인선숙				서울 도봉구 방학동 507 우정아파트 103-1101		변경 없음																																																																																																																																																																																																																																																																																																																																																																																																																																																																																																																																																																																																																																																																																																																														
			119	18	154.7	23.4	소 계																																																																																																																																																																																																																																																																																																																																																																																																																																																																																																																																																																																																																																																																																																																																						
17	111-536 (10블럭 9필트)	대	177	9.0	49.3	10.55	42/177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13동 1105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진중화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13동 1105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변경 없음																																																																																																																																																																																																																																																																																																																																																																																																																																																																																																																																																																																																																																																																																																																														
			177	13.1	71.7	15.35	61/177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62, 1001동 704호 (공릉동태강아파트)	정광수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62, 1001동 704호 (공릉동태강아파트)		177 백남산 제외)																																																																																																																																																																																																																																																																																																																																																																																																																																																																																																																																																																																																																																																																																																																														
			177	22.1	121.0	25.9	소 계																																																																																																																																																																																																																																																																																																																																																																																																																																																																																																																																																																																																																																																																																																																																						
18	111-537 (10블럭 9필트)	대	111.0	14.1	77.5	16.6	66/11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37(논현동) 대표자 : 홍노순	세계기독교강 론회한빛교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37(논현동) 대표자 : 홍노순	이성숙	서울 노원구 덕릉로127길 25, 101동 903호(상계동, 성림아파트)	2017 카단 21028																																																																																																																																																																																																																																																																																																																																																																																																																																																																																																																																																																																																																																																																																																																														
			137.0	119.2	21.2	소 계																																																																																																																																																																																																																																																																																																																																																																																																																																																																																																																																																																																																																																																																																																																																							
			내도로 111-570 (10블럭 13필트)	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구역)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구 분		기 경										번 경										비 고
연번	소재지(번지) (원지(예정지))	지목 (현상적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9	계획도로 37-18 (53블럭28필트)	도	691.0	4,262.8	44.7		서울특별시 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39.0	3.3	16.9	4.7	3/10	백운옥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백운옥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39.0	3.3	16.9	4.7	3/10	정원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원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50-5 (13블럭 21필트)	대	39.0	2.2	11.2	3.2	2/10	정경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경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39.0	2.2	11.2	3.2	2/10	정선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선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39.0	11.0	56.2	15.8	소 계															
20			1.0	0.08	0.4	0.1	3/10	백운옥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백운옥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1.0	0.08	0.4	0.1	3/10	정원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원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50-18 (13블럭 21필트)	대	1.0	0.06	0.3	0.1	2/10	정경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경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1.0	0.06	0.3	0.1	2/10	정선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정선미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50-5				변경 없음			
			1.0	0.28	1.4	0.4	소 계															
	50-6 (13블럭 21필트)	대	66.0	18.6	95.1	26.8		이재룡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6	이재룡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6				변경 없음			
			374.0	7.8	175.0	7.25	1/2	이정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4층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2가)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권	변경 없음			
21	51-2 (13블럭 18필트)	임	374.0	7.8	175.0	7.25	1/2	이경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4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4층	이경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4층				변경 없음			
			374.0	15.6	350.0	14.5	소 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연번	소재지(번지) (원지(예정지))	지목 (현상지 이용 상용)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소유권자의 권리내용	소유권자의 권리내용							
21	50-3 (13블럭18필트)	대	43.0	0.9	20.1	0.85	1/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상계동 50-3 4층	서울시 중구 상계동 50-3 4층	근저당권	51(화현동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상계동 50-3 4층	변경 없음							
22	하천2 37-14	천	1,231.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23	공공의정사 (9블럭31필트)	대	2,324.4		2,324.4	0.3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래로 437 (상계동)						변경 없음							
24	계곡도로 5-20 (53블럭 23필트)	도	407.0		166.0	16.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변경 없음							
25	43-20 (5블럭24필트)	대	17.1	0.1	17.0	3.8		박광숙 (2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37길 20, 202동1006호 (봉선동, 봉선동아파트)	서울시 중구 상계동 51(화현동가)	근저당권	51(화현동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상계동 51(화현동가)	변경 없음							
			18.6	0.1	18.5	4.1		은중혁 (102)	서울시 중구 공릉로 38길 33, 401호	서울시 중구 공릉로 38길 33, 401호	근저당권	51(화현동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공릉로 38길 33, 401호	변경 없음							
			15.5	0.1	15.4	3.5		배용기 (103)	서울시 강남구 영재대로 33길 23-8 (1층)	서울시 강남구 영재대로 33길 23-8 (1층)	근저당권	51(화현동가)	근저당권	서울시 강남구 영재대로 33길 23-8 (1층)	변경 없음							
			23.9	0.1	23.8	5.3		기우백 (104)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27길 6, 비마호 (천호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홍재계곡길 212-27							
			17.1	0.1	17.0	3.8		박광숙 (2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37길 20, 202동1006호 (봉선동, 봉선동아파트)	서울시 중구 상계동 51(화현동가)	근저당권	51(화현동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상계동 51(화현동가)	변경 없음							
			18.6	0.1	18.5	4.1		이재현 (202)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서울시 강북구 경동로 27길 71, 에이동 402호 (영등포, 임오빌라)							
			15.5	0.1	15.4	3.5		최효숙 (203)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 62 11동 1109호 (서초동, 우정아파트)							
			23.9	0.1	23.8	5.3		박세은 (204)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서울시 성동구 경우로 137, 108동1103호 (성수동가, 성수동 아아파크)							
								민사원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목동)							

구 분	기 경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번 (원지예 정지)	지목 (원지예 상황)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분 면적 (㎡)	소유권 이외 권리내용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내용
연번												
43-20 25	43-20 (5블럭) 4(부트)		17.1	0.1	17.0	3.8	17.13 /366	이종혁 (301)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2길 10, 701동 704호 (우면동,서초네이처힐아파트)	노원 세마일테크	서울시 중랑구 영마산로 60길 36 (면목동)	근저당권 채무자
43-20 26	43-20 (5블럭) 3(부트)		18.6	0.1	18.5	4.1	18.61 /366	인형상 (302)	서울시 관악구 내부순환로226길 23-33, 401 (봉선동)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7가)	근저당권
43-20 27	43-20 (5블럭) 4(부트)		15.5	0.1	15.4	3.5	15.54 /366	김동원 (303)	서울시 노원구 종계로 16다길 13, 비02호 (종계동, 약수빌라)			
43-20 28	43-20 (5블럭) 4(부트)		23.9	0.1	23.8	5.3	23.92 /366	김형구 (304)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02동 301호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노원 세마일테크	서울시 중랑구 영마산로 60길 36 (면목동)	근저당권
43-20 29	43-20 (5블럭) 4(부트)		17.1	0.1	17.0	3.8	17.13 /366	장영도 (4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64, 103동 1304호 (보라동, 기흥상정신비 마을아파트)	노원 세마일테크	서울시 중랑구 영마산로 60길 36 (면목동)	근저당권
43-20 30	43-20 (5블럭) 4(부트)		18.6	0.1	18.5	4.1	18.61 /366	박영원 (402)	경기도 광명시 모래포 8, 716동 506호 (철산동,주공아파트)	도봉 세마일테크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87-1 (면목동)	근저당권
43-20 31	43-20 (5블럭) 4(부트)		15.5	0.1	15.4	3.5	15.54 /366	이상환 (403)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2길 14-19, 3층동 301호 (구의동, 테크노빌)			
43-20 32	43-20 (5블럭) 4(부트)		23.9	0.1	23.8	5.3	23.92 /366	문경준 (404)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 연세대학교우익학사-204			
43-20 33	43-20 (5블럭) 4(부트)		40.3	0.2	40.1	9.0	40.33 /366	김종성 (비01호)	노원구 한글비서로418-9, 401호 (상계동,동양빌라)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영마산로 60길 36 (면목동)	근저당권
43-20 34	43-20 (5블럭) 4(부트)		24.9	0.1	24.7	5.5	24.87 /366	윤옥희 (비02호)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1-2	신곡 세마일테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88-5	근저당권
43-20 35	43-20 (5블럭) 4(부트)		366.0	1.9	363.6	81.5	366.0	소 계	서울시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6동 604호 (죽전동,롯데캐슬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7가)	근저당권
43-20 36	43-20 (5블럭) 4(부트)		23.3	8.9	26.6	17.43	23.28	선우준호 (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6동 604호 (죽전동,롯데캐슬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7가)	근저당권
43-20 37	43-20 (5블럭) 4(부트)		23.3	8.9	26.6	17.43	23.28	고영규 (201)	서울시 강북구 양재대로 1340, 421동 705 (둔촌동, 주공아파트)			대지권 설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연번	소재지(번 (한자(영문)))	지목 (현장 측정 이용 상용)	공부 면적 단적 (㎡)	환지 면적 단적 (㎡)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 있는 권리내용	이해 관계 인	성명	주 소	소유권이 있는 권리내용			
26	43-19 (5블럭(23호))		23.3	8.9	26.6	23.28/166	홍아름 (30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 203호 203호 (문정동, 관악역(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화동동1가)	근저당권	편입 면적 변경 (신규 대지권 설정)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화동동1가)	근저당권							
27	43-17 (5블럭(27호))		166.0	63.5	189.9	72.6	도	내도로 43-17 (5블럭(27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28	내도로 5-12 (5블럭(25호))		24.0	9.2	27.5	17.9	24.04/16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변경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변경 없음							
29	계 획도 63-10 (53블럭(17호))		294.0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룡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룡로 11	변경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도룡로 11	변경 없음							
30	39-3 (1블럭(47호))		402.0	240.2	333.8	206.9	이희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산호파트 E동 1110호	우리은행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산호파트 E동 1110호	변경 없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산호파트 E동 1110호	변경 없음							
31	내도로 5-2 (1블럭(24호))		422.0	261.6	350.4	217.2	도	내도로 5-2 (1블럭(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변경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변경 없음							
32	계 획도 68-3 (53블럭(47호))		1,360.0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변경 없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변경 없음							
33	67-2 (28블럭(77호))		162	0.92	113.2	1.0	임	신한은행 세종대로21길 20 (태평로2가)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20 (태평로2가)	변경 없음					
								신한은행 세종대로21길 20 (태평로2가)	변경 없음							
33	67-2 (28블럭(77호))		353	2.03	246.6	2.2	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25-2707-202 (상동, 북송마을)	한영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25-2707-202 (상동, 북송마을)	변경 없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25-2707-202 (상동, 북송마을)	한영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25-2707-202 (상동, 북송마을)	변경 없음					
33	67-4 (28블럭(77호))		4	0.09	2.8	0.1	임	67-4 (28블럭(77호))	온금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0-9 (반배동)	온금숙	변경 없음				
								67-4 (28블럭(77호))	온금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0-9 (반배동)	온금숙	변경 없음				
			519	3.04	362.6	3.3		소 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연번	소재지(면적) (원지(영지))	지목 (현상적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관리내용
34	67	(28블럭77㎡)	임	162	0.37	62.3	0.31		신한은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25, 2707-202 (상동, 백송마을)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변경 없음
	67-2	(28블럭177㎡)	임	353	0.82	135.8	0.78		한영준						
	67-4	(28블럭77㎡)	임	4	0.01	1.5	0.01							채무자	
				519	1.2	199.6	1.1		소 계						
35	111-535	(20블럭177㎡)	대	10.0	4.0	46.2	18.56	10/34	민사원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236 (면북동)	최영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31, 118동201호		근저당권	(서울시 제외 (934) 종인표 제외 (1534))
											김주화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7-15,비03호 (잠실동)		근저당권	
36	계획도로 37-18 (53블럭277㎡)	도	691.0	204.0	6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변경 없음
37	계획도로 37-16 (53블럭187㎡)	도	2,607.0	61.6	31.9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변경 없음
38	하천1	천			415.3				국						변경 없음
39	계획도로 48-7 (53블럭437㎡)	도	304.0	1169.1	130.0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변경 없음
40	48-1	(22블럭1-177㎡)	전	86.0	2.5	60.83	1.7								변경 없음
	48-9	(22블럭1-177㎡)	전	51.0	1.5	36.07	1.0								
	48-15	(22블럭1-177㎡)	전	29.0	0.8	20.51	0.6		정태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01비트 106-605					
	48-16	(22블럭1-177㎡)	전	57.0	1.6	40.32	1.2								
	48-17	(22블럭1-177㎡)	전	63.0	1.8	44.56	1.3								
				286.0	8.2	202.3	5.8		소 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면적) (원지(영지) 상향)	지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 관리내용	
41	계곡도로 37-14 (53블럭26㎡)	도	1,231.0	223.9	126.7	223.9	126.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변경 없음
42	채비지 37-15 (11블럭1㎡)	채	28.0	88.7	88.7	88.7	88.7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변경 없음
43	47-4 (10블럭3㎡)	대	1514.0	144.8	1532.3	146.6	1532.3	성암교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7-4	성암교회	성암교회	성암교회	성암교회	성암교회	성암교회	변경 없음
44	47-1 (10블럭4㎡)	대	661	43.5	386.4	50.9	386.4	신동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동구	신동구	신동구	신동구	신동구	신동구	변경 없음
45	47-1 (10블럭2㎡)	대	661	103.3	245.9	120.82	722	홍동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39 노원로 209-1208	홍동표	홍동표	홍동표	홍동표	홍동표	홍동표	변경 없음
			661	19.7	46.8	23.02	12198	박미경	서울시 노원구 6구역10블럭2-가롯트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변경 없음
			661	13.1	31.2	15.32	8198	홍수연	서울시 노원구 6구역10블럭2-가롯트	홍수연	홍수연	홍수연	홍수연	홍수연	홍수연	변경 없음
			661	13.1	31.2	15.32	8198	홍예원	서울시 노원구 6구역10블럭2-가롯트	홍예원	홍예원	홍예원	홍예원	홍예원	홍예원	변경 없음
			661	13.1	31.2	15.32	8198	홍정욱	서울시 노원구 6구역10블럭2-가롯트	홍정욱	홍정욱	홍정욱	홍정욱	홍정욱	홍정욱	변경 없음
			661	162.3	386.3	189.8	386.3	189.8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목				공 부		환 지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면적) (원지(예정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자 (원지(예정지))	지목 (현상·계획·지정·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목 (현상지면 소매지예정지) (원지예정지)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분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성명	이해관계인 주 소	소유권이 의양전 내용	
43-5 (4블럭7부트)	전	소매지(예정지) (원지예정지)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면적 변경 (소유권 대지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43-5 (4블럭7부트)	전	소매지(예정지) (원지예정지)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면적 변경 (소유권 대지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서울시 강남구 구천동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명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로 51 (서초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43-5 (4블럭7부트)	전	소매지(예정지) (원지예정지)	27.4	27.4	26.7	27.38/345	김민서 (1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동로 74번길 53, 1층2호(고건동)	강북 세아물금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당권	면적 변경 (소유권 대지권)

구 분		기 정										변 경														
연번	소재지(변경지) (소재지(정지))	지목 (원래지)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공부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 면적 (㎡)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43-5 50 (4블럭7필트)			22.22	3.7	21.6	4.67	22.22 345	서울 성동구 마장로37길 7, 103동 2001호 (마장동,대성유니드아파트)	황봉래 (60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345	13.13	2.2	12.8	2.39	13.135/345	경인은행 (상계역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상계역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상계역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43-5 50 (4블럭7필트)			17.1	2.9	16.7	3.48	17.125/34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83-18, 102동304호 (양지파인빌)	서형일 (7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83-18, 102동304호 (양지파인빌)	서형일 (702)														
			345.0	58.1	336.1	56.6	소 계								소 계											
51	내도로 5-24 (4블럭13필트)	도	605.0		111.2	4.2		대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변경 없음											
52	채비지 5-24 (4블럭1필트)	체	605.0		170.6	1.6		대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변경 없음											
53	계획도로 63-13 (53블럭 19필트)	도	223.0		183.0	0.3		세종특별자치시 도림로 1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림로 11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물진조서

○ 사업명 : 상계제정비축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1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경				이 해 관 계 인				변 경				비 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49 (덕릉로 130길 3)	건축물	세면조	13.1㎡		이귀숙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0길 3			이귀숙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0길 3		변경없음 (무허가)	
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49 (덕릉로 130길 1)	건축물 (1층) 건축물 (2층) 부속 건축물	세면조 세면조 세면조 판넬조	34.2㎡ 32.0㎡ 4.1㎡		이주연	경기도 별내면 용암리 416-3						변경없음 (무허가)	
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0 (덕릉로 856)	건축물 (3층) 건축물 (복합) 부속 건축물	RC조 RC조 RC조 RC조 창제 (철입판) 판넬조 (모듈러 설계)	85.5㎡ 102.3㎡ 102.3㎡ 69.3㎡ 1식		윤상익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6 (상계동)						면적변경 및 부속 건축물 추가	
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1 (덕릉로 858-1)	건축물	세면조	54.7㎡		정미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1 (상계동, 수락파크빌@ 332-1006)						변경없음 (무허가)	
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1 (덕릉로 858)	건축물	세면조 (1층) 판넬조 등 (2층)	71.8㎡ 80.8㎡		김남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1 (상계동, 수락파크빌@ 106동202호)			김남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파크빌@ 106동202호		면적변경 (무허가)	
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49 (덕릉로 854)	건축물 부속건물	세면조 판넬조 등	37.4㎡ 15.2㎡		황옥선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4			황옥선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4		변경없음 (무허가)	
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7-4 (덕릉로 860)	부속 건축물	합판/ 슬레이트	1.8㎡		성임교 외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60			성임교 외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60		면적변경 및 간판 등 추가	
		부속 건축물	판넬/ 브릭조	7.3㎡										

(2구역)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고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실제 이용 상황	구조 및 종류	수량 (㎡)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종류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권 이전의 권리	
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상계로43길 6)	문천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관평로269길 18-1,222호(성일동)	30.8㎡ 30.8㎡	세멘조 (1층) 건축물 세멘조 (2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상계로43길 6)	건축물 세멘조 (2층)	30.8㎡ 30.8㎡	문천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관평로269길 18-1,222호(성일동)	변경없음 (유허가)
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덕릉로 831)	이철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60.3㎡ 25.4㎡	세멘조 (1층) 건축물 세멘조 (2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덕릉로 831)	건축물 세멘조 (2층)	60.3㎡ 41.3㎡	이철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2층 면적변경 (유허가)
1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덕릉로 831-1)	장재복	서울시 노원구 종재동 359-1 주공아파트 511-404	20.3㎡ 20.3㎡	세멘조 (1층) 건축물 세멘조 (2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3 (덕릉로 831-1)	건축물 세멘조 (2층)	20.3㎡ 20.3㎡	장재복	서울시 노원구 종재동 359-1 주공아파트 511-404	변경없음 (유허가)
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4 (덕릉로 829)	이봉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53.4㎡ 53.9㎡	세멘조 (1층) 건축물 세멘조 (2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4 (덕릉로 829)	건축물 세멘조 (2층)	53.4㎡ 53.9㎡	이봉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	변경없음 (유허가)
12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35 재민빌라 1차 301호	70.0/2㎡ 70.0/2㎡	건축물 (101호) RC조		건축물 (101호) RC조	70.0/2㎡ 70.0/2㎡	정병간 이미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35 재민빌라 1차 30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40-3 한마음빌라 302호	
13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 호	RC조	건축물 (102호)		건축물 (102호)	34.5㎡	문미애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11105801 호 (상계동,주공아파트)	
14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3(상계동) 103호	RC조	건축물 (103호)		건축물 (103호)	34.5㎡	이태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3(상계동),103호	서울시 종구 납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39	RC조	건축물 (20호)		건축물 (20호)	75.4㎡	김교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39	근저 당면
1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1 수암빌딩 (덕릉로 833)		서울 노원구 동일로22길 25 11105801 호(상계동,주공아파트)	RC조	건축물 (202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1 수암빌딩 (덕릉로 833)	건축물 (202호)	74.5㎡	문미애	서울 노원구 동일로22길 25 11105801 호 (상계동,주공아파트)	변경없음
1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43길 17, 501동(210호 개포동,주공아파트)	RC조	건축물 (301호)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31길)22 (상계동)	건축물 (301호)	75.4㎡	진주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43길 17, 501동(210호 개포동,주공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31길)22 (상계동) 백향순
18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3(상계동), 302호	RC조	건축물 (302호)	서울시 종구 납대문로2가 9-1	건축물 (302호)	74.5㎡	이태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3(상계동), 302호	서울시 종구 납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19			서울시 종재구 올림피로 99, 128동 2202호 (잠실동,잠원스)	RC조	건축물 (401호)		건축물 (401호)	151.8㎡	추은희	서울시 종재구 올림피로 99, 128동 2202호 (잠실동,잠원스)	
20			서울 강남구 역삼로 74길 13, 302호(대치동)	RC조	건축물 (402호)		건축물 (402호)	75.8㎡	강준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 74길 13, 302호(대치동)	
21			서울 강남구 인조로 153길 14, 501 호(신사동)	RC조	건축물 (502호)	서울시 종구 소공로 51(회현동)가	건축물 (502호)	74.3㎡	선우주 혜	서울 강남구 인조로 153길 14, 501 호(신사동) 우리은행	서울시 종구 소공로 51(회현동)가 근저 당면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2		건축물 (B01 호)	RC조	139/2㎡		이태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531	이태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531	윤희중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 면목동 173-135	채무자	
		건축물 (B01 호)	RC조	139/2㎡		정병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오봉로 52-7	정병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오봉로 52-7	김수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6구역15블럭3-2후트 성립@ 101-1909호	근저 당권	변경없음
2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1 수업빌딩 (덕릉로 833)	건축물 (총인구)	철제 등	4.4㎡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변경없음
24		건축물 (옥탑)	RC조	9.8㎡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변경없음
25		건축물 (주차장)	철제 빔 등	92.9㎡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정병간 외 9명 (공동소유)				수량변경
26		부속 건축물 (테라스)	천막조 등	2.9㎡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33, 1층 101호	김정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33, 1층 101호				변경없음 (세입자 소유)
27		부속 건축물 (양고)	판별조 등	1.7㎡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33, 1층 101호	김정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33, 1층 101호				변경없음 (세입자 소유)
28		건축물 (지하 출입구)	유리 등	6.1㎡			조광섭 외 11명 (공동소유)						
29		건축물 (101 호)	RC조	32.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1-4 302호	조광섭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1-4 302호				
30		건축물 (102 호)	RC조	32.5㎡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7 신성미소지음아파트 102-302	이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87 신성미소지음아파트 102-302				
31		건축물 (103 호)	RC조	32.5㎡			서울 은평구 불광로길14, 은혜빌라트 101호	윤주원	서울 은평구 불광로길14, 은혜빌라트 101호				
3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명동그라빌라 (덕릉로 835)	건축물 (104 호)	RC조	32.5㎡			경기도 하남시 신정동 569 대명강변타운아파트 116-1703	신정철	경기도 하남시 신정동 569 대명강변타운아파트 116-1703				변경없음
33		건축물 (201 호)	RC조	7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0, 201호	인근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0, 201호				
34		건축물 (202 호)	RC조	70/2㎡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5(상계동)	이태순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5(상계동)				
		건축물 (202 호)	RC조	70/2㎡			서울 은평구 불광로길14, 은혜빌라트 101호	윤주원	서울 은평구 불광로길14, 은혜빌라트 101호				
35		건축물 (301 호)	RC조	7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530, 301호	이영선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530, 301호				
36		건축물 (302 호)	RC조	7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0, 302호	윤랑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0, 3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행의 권리	
37			건축물 (401호)	RC조	70㎡		양재준	양재준	서울시 강남구 노원로22길 22, 303호(가동동 아람산마미빌)	서울시 강남구 노원로 51 (화현동7가)	근저 당권	변경없음
38			건축물 (402호)	RC조	70㎡		김주환	김주환	노원구 상계동 보림아파트 108동 1203호	서울시 강남구 노원로 51 (화현동7가)	근저 당권	변경없음
39			건축물 (501호)	RC조	70.05㎡		박찬	박찬	서울시 성동구 행당본 82, 108동203호 (행당동, 행당원현대타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 1508호(부산동)	이해 관계인 당권, 소유자 수소유권	변경없음
4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영동그린빌라 (덕릉로 835)		건축물 (502호)	RC조	70.05㎡		김사환	김사환	서울 강남구 영제대로39길 32(영제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로 149 (신림동)	근저 당권	변경없음
41			건축물 (501호)	RC조	130.3㎡		이태순	이태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근저 당권	변경없음
42			건축물 (501호)	RC조	130.3㎡		윤주환	윤주환	서울 은평구 불광로1길14, 은평빌라트 101호	서울 은평구 불광로1길14, 은평빌라트 101호	근저 당권	변경없음
43			건축물 (501호)	RC조	9.8㎡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수권변경	변경없음
44			건축물 (501호)	RC조	9.8㎡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조광성 외 11명(공동소유)	수권변경	변경없음
4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7 (상계로43길 20)		건축물 (501호)	RC조	45.2㎡		박향순	박향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7 (상계로43길 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7 (상계로43길 20)	근저 당권	변경없음
4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8 (상계로43길 20)		건축물 (501호)	RC조	15.2㎡		임병주	임병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8 (상계로43길 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8 (상계로43길 20)	근저 당권	변경없음
4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덕릉로 837)		건축물 (501호)	RC조	5.1㎡		김근희	김근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덕릉로 83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9 (덕릉로 837)	근저 당권	변경없음
4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127길 3)		건축물 (501호)	RC조	77.5㎡		백재원	백재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127길 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127길 3)	근저 당권	변경없음
4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839)		건축물 (501호)	RC조	23.4㎡		김상영	김상영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83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24 (덕릉로 839)	근저 당권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상세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43 (덕릉로 836)	건축물	세면조	1.9㎡		이흥희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6 신동아 115동 805호					이흥희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6 신동아 115동 805호						변경없음 (무허가)	
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41 (덕릉로 838)	건축물	세면조	4.3㎡		정영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74					정영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74						변경없음 (무허가)	
5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40 (덕릉로 838)	건축물	세면조	6.6㎡		김은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틀아래길 30-1, 102동 402호(드래네)					김은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틀아래길 30-1, 102동 402호(드래네)						변경없음 (무허가)	
5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7 (덕릉로 838-1)	건축물	세면조	8.3㎡		세계기독교 장로회한빛 교회	서울시 강남구 신릉로 737 (논현동)					세계기독교 장로회한빛 교회	서울시 강남구 신릉로 737 (논현동)						변경없음 (무허가)	
5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6 (덕릉로 840)	건축물 (1층)	세면조	18.7㎡		진선미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35-3 (임동)					진선미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35-3 (임동)						면적변경 (무허가)	
		건축물 (2층)	세면조	18.7㎡																

(6구역)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이 해 관 계 인				변 경				비 고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의의 권리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의의 권리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의의 권리					
5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5 (덕릉로 840-3)	문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지번 (도로명주소)	문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건축물 (1층)	RC조	53.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5 (덕릉로 840-3)	건축물 (1층)	RC조	53.1㎡		김간선	서울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114동 901호	김간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쌍용아파트 114동 901호	면적변경 (무허가)	
		건축물 (2층)	RC조	55.3㎡			건축물 (2층)	RC조	55.6㎡							
		부속 건물 (계단)	철제	1식			부속 건물 (계단)	철제	1식							
		부속 건물 (창고)	합판 등	1식		부속 건물 (창고)	합판 등	1식								
5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 (덕릉로840-5)	건축물	RC조	6.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 (덕릉로840-5)	건축물	RC조	37.8㎡		장진영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2길 40-39,101호 (양재동, 양재마을-3)			면적변경 (무허가)	
5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5 (덕릉로840-1)	건축물	RC조	0.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535 (덕릉로840-1)	건축물	RC조	34.7㎡		최병선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27길10, 918동204호 (인원동, 공무원아파트)			면적변경 (무허가)	
5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덕릉로 841)	건축물	세면 부록조	20.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3 (덕릉로 841)	건축물	세면 부록조	34.3㎡		백은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아파트 1404동 712호			면적 및 소유자 변경	
5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6 (덕릉로 12722-2)	부속 건축물 (담장)	세면 벽돌조	2.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0-6 (덕릉로 12722-2)	담장	목조	2.6㎡						담장 수량 누락분 추가 등	
		나무 나무 등		5주			담장	세면 벽돌조	10㎡		이재홍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2722-2				
60		건축물	RC조	8.0㎡		노원구 한글비서로 418-9, 401 (상계동, 동아빌라)	건축물	RC조	8.0㎡		김중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2길 401호				
61		건축물	RC조	4.9㎡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58길 33, 401호	건축물	RC조	4.9㎡		윤종혁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 담권	
62		건축물	RC조	21.9㎡		서울시 노원구 양재대로33길 23-8 (1층)	건축물	RC조	21.9㎡		배용기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33길 23-8 (1층)				
6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9-20, 쌍용빌라 (덕릉로 867)	건축물	RC조	14.8㎡		서울 강동구 상일로277길 6, 비01호(천호동)	건축물	RC조	81.3㎡		기우택	서울 강동구 상일로277길 6, 비01호(천호동)			면적변경	
		건축물	RC조	4.9㎡		서울시 서부구 정릉로277길 71, 에이동 402호 (정릉동, 임오빌라)	건축물	RC조	4.9㎡		이세영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근저 담권	
64		건축물	RC조	4.9㎡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62, 11동 1109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건축물	RC조	4.9㎡		최효숙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62, 11동 1109호(서초동, 우성아파트)			면적변경	
65		건축물	RC조	21.9㎡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62, 11동 1109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건축물	RC조	21.9㎡		최효숙	서울시 서초구 서원로62, 11동 1109호(서초동, 우성아파트)			면적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66		박세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37, 108동 110호 (성수동2가, 성수동 아이파크)	노원 세마빌딩	서울 노원구 한글비서로2길 7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북동)	박세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37, 108동 103호 (성수동2가, 성수동 아이파크)	노원세마빌 딩	서울 노원구 한글비서로2길 7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북동)	근저 당근
67		안형상	서울시 관악구 내부순환로228길 23-33, 401 (봉천동)	우리은행	서울시 관악구 내부순환로228길 23-33, 401 (봉천동)	안형상	서울시 관악구 내부순환로228길 23-33, 401 (봉천동)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 당근
68		김동원	서울시 노원구 종재로 16다길 13, 비02호 (종재동, 악수빌라)		서울시 노원구 종재로 16다길 13, 비02호 (종재동, 악수빌라)	김동원	서울시 노원구 종재로 16다길 13, 비02호 (종재동, 악수빌라)			
6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0 청일빌라 (덕운동 867)	김형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02동 301호 (목동, 북동신기자아파트)	세마빌딩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62길36 (면북동)	김형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02동 301호 (목동, 북동신기자아파트)	민사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2길 36 (면북동)	근저 당근
70		박영원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8, 716동 506호 (월산동, 주공아파트)	도원세마빌 딩	서울시 도봉구 도원로 87-1 (면북동)	박영원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8, 716동 506호 (월산동, 주공아파트)	도원세마빌 딩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길 36 (면북동)	근저 당근
71			서울시 광진구 아사신로82길 14-19, 3층동 301호 (구의동, 테크노빌)			이성환	서울시 광진구 아사신로82길 14-19, 3층동 301호 (구의동, 테크노빌)			
7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 연세대학교대학원학사-204			문경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 연세대학교대학원학사-204			
73		김정성	노원구 한글비서로 418-9, 401호 (상계동, 동방빌라)	중상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율리제2가 50	김정성	노원구 한글비서로 418-9, 401호 (상계동, 동방빌라)	중상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율리제2가 50	근저 당근
74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1-2	신국세마빌 딩	경기도 의정부시 신북동 588-5	안옥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1-2	신국세마빌 딩	경기도 의정부시 신북동 588-5	근저 당근
75			내용없음				내용없음			
76			내용없음				내용없음			
77			내용없음				내용없음			확대보상 으로 인한 평면세대
78			내용없음				내용없음			
79			서울시 송파구 죽전로 24, 203동 203호 (문정동, 올림피아힐링아파트)	홍이름	서울시 송파구 죽전로 24, 203동 203호 (문정동, 올림피아힐링아파트)	홍이름	서울시 송파구 죽전로 24, 203동 203호 (문정동, 올림피아힐링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 당근
8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19 영일빌라 (덕운동 869)		서울시 강북구 양재로 1340, 421동 705호 (문정동, 주공아파트)	고영구	서울시 강북구 양재로 1340, 421동 705호 (문정동, 주공아파트)	고영구	서울시 강북구 양재로 1340, 421동 705호 (문정동, 주공아파트)			
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8동604호 (죽전동, 꽃매미힐링타운)	성윤 준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8동604호 (죽전동, 꽃매미힐링타운)	성윤 준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8동604호 (죽전동, 꽃매미힐링타운)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 당근
82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63, 709동 411호 (별양동, 주공아파트)	이은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63, 709동 411호 (별양동, 주공아파트)	이은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63, 709동 411호 (별양동, 주공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 당근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실제 이용 상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권 이전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83					내용없음				건축물 (102호)	RC조	55.3㎡	조성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69, 102호 (상계동, 영화빌라)			
84					내용없음				건축물 (202호)	RC조	56.4㎡	김은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 115동 308호 (개포동, 주안아파트)			확대보상 으로 인한 판임세대
85					내용없음				건축물 (302호)	RC조	56.4㎡	권미경	서울시 송파구 세반로8길 12, 102동 809호 (문정동, 간영아파트)			
8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9-1 (덕릉로 139길 4)	가건물	컨테이너	1식	김영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9길 4										
8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8-1 (덕릉로 128길 48)	부대 시설	펜스, 시상 출입구	1식												
		건축물 (1층)	RC조	1.2㎡												
		건축물 (2층)	RC조	1.2㎡	정태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아파트 106동 605호										
		건축물 (3층)	RC조	1.2㎡												
		건축물 (4층)	RC조	1.2㎡												
88		건축물 (101호)	RC조	7.8㎡					건축물 (101호)	RC조	7.8㎡					
8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7-3 (덕릉로 134길 4)	건축물 (201호)	RC조	7.8㎡					건축물 (201호)	RC조	7.8㎡					
9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7-3 (덕릉로 134길 4)	건축물 (301호)	RC조	7.8㎡	신미경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4길 4, 302호 (상계동, 동현빌딩)			건축물 (301호)	RC조	7.8㎡	신미경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4길 4, 302호 (상계동, 동현빌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금암동)	근저 단권
91		건축물 (401호)	RC조	7.8㎡					건축물 (401호)	RC조	7.8㎡					
92		건축물 (옥탑)	RC조	6.2㎡					건축물 (옥탑)	RC조	6.2㎡					
9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7-1 (덕릉로 862-1)	아외 캐노피	철골조	80.4㎡	홍동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62-1			아외 캐노피	철골조	80.4㎡	홍동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62-1			변경없음 (7건물)
94		건축물 (지층)	RC조	41.3㎡	신정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8-126			건축물 (지층)	RC조	100.7㎡	신정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8-126			면적변경
9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6 (덕릉로 870)	건축물 (출입구)	RC조	4.2㎡		상계동 외 5명 (공동소유)										
96		건축물 (101호)	RC조	41.3㎡	신정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8-126			건축물 (101호)	RC조	72.6㎡	신정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8-126			면적변경
97		건축물 (201호)	RC조	42㎡	김진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건축물 (201호)	RC조	130.5㎡	김진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노원세마을 서원시 노원구 상계동 근저 단권	면적변경
98		건축물 (301호)	RC조	42㎡	손민호	서울시 서초구 방배진로 6길 11-13, 201호(방배동)			건축물 (301호)	RC조	57.2㎡	손민호	서울시 서초구 방배진로 6길 11-13, 201호(방배동)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회현동1가)	면적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구 조 및 종 류	수 량 (㎡)	실적 이용 영 용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99	간척물 (401호)	RC조 (401호)	37.7㎡		임소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8길 128-11, B101호(목동)	신정옥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70, 5층	이대희	변경대응
1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덕릉로 870)	간척물 (501호)	32.9㎡	0	이호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5길 29, 404호(도곡동)	한국양계 축산업 협동조합 천영철	서울시 강남구 사계동 367(면북동) 천영철	이대희	변경대응
111	간척물 (수답)	RC조	12.9㎡		신정옥 외 5명 (공동소유)			제외(해대보상으로 인한 소유주 지분별 편입)		
112					내용없음			서울 양천구 신목로2길, 555(신도림동) 101호 (신정옥, 대림아파트)	우리은행 (신도림동)	확대보상 편입세대
113	간척물 (수차장)	RC조	20.4㎡		김문식 외 13명 (공동소유)			제외(해대보상으로 인한 소유주 지분별 편입)		
114	간척물 (101호)	RC조 (101호)	20.7㎡	김문식	김문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려로747길 53, 1층2호(고강동)	강북 세마들고 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15	간척물 (102호)	RC조 (102호)	25.1㎡	김문식	김문식	서울시 강동구 구천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영일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상일동)	서울시 강동구 구천로 557, 1층 1008호 (상일동, 영일중앙아파트)	김자영	채무자
116	간척물 (201호)	RC조 (201호)	19.9㎡	김문식	김문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4번길 115-1, 라동 지(이호) (고강동, 우원빌라)	강북 세마들고 고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1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5 범하세라미 아파트 (덕릉로 872)	RC조 (202호)	25.1㎡	임은아	임은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210-1205	한국 스튜디오 채터드온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18	간척물 (301호)	RC조 (301호)	19.9㎡	박정미	박정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길 25-6, 402호(신림동)	한국 스튜디오 채터드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길 25-6, 402호(신림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19	간척물 (302호)	RC조 (302호)	25.1㎡	홍순주	홍순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5 6구역블록677호 범하세라미아파트 302호	중상기업 은행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20	간척물 (401호)	RC조 (401호)	19.9㎡	안기학	안기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5 6구역블록677호 범하세라미아파트 401호	우리은행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21	간척물 (402호)	RC조 (402호)	25.1㎡	오민호	오민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길 37, 30호(대치동)	강북 세마들고 고	서울시 강남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22	간척물 (501호)	RC조 (501호)	20.7㎡	정다은	정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곡로100번길 9, 102동 402호(아람동, 중앙아파트)	우리은행 (수유동)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123	간척물 (502호)	RC조 (502호)	25.1㎡	조남익	조남익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7길 36-4(사곡동)	우리은행 (수유동)	서울시 강남구 한천로 1045(수유동)	우리은행 (수유동)	근저 당근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124		간척물 (601호)	RC조 (601호)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 유 자	비 고
12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5 범해리마을(이마트 점) (덕릉로 872)	간척물 (602호)	RC조 (602호)	25.1㎡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회현동1가)	서울시 강남구 인주로30길 10, 2412호(도곡동 현대백화점1)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회현동1가)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126		간척물 (701호)	RC조 (701호)	12.9㎡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37길 7, 103동 2001호(마장동 대성유니드아파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127		간척물 (702호)	RC조 (702호)	18.6㎡		서형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83-18, 102동 304호(양지파인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83-18, 102동 304호(양지파인빌)	서형일			
12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4 호암그린힐(이마트 점) (덕릉로 876)	간척물 (101호)	RC조 (101호)	5.2㎡		오길영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92(현동)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6, 303동302호 (신도림동 신도림대림아파트)	서울경기 양도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92(현동)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간척물 (201호)	RC조 (201호)	5.2㎡		유태순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회현동1가)	서초구 마방동62길 8-23, 402호(양재동)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회현동1가)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간척물 (301호)	RC조 (301호)	5.0㎡		전재혁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50길 9번지	서울시 서초구 창계신로 251-27 (산원동)	서울경기 양도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92(현동)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간척물 (401호)	RC조 (401호)	5.0㎡		김영민	노원구 상계동 5-24 호암빌라 401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4 호암그린힐(이마트 점) (덕릉로 876)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용지동2가) (태릉역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용지동2가) (태릉역지점)	근저 당면	면적변경 (확대 보상)
12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6 (덕릉로 848)	간척물 (1호)	RC조 (1호)	74㎡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43 6구(현인블록웃트)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입류	면적변경
		간척물 (2호)	RC조 (2호)	74㎡		조원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6 금강배라 30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43 6구(현인블록웃트)	조원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6 금강배라 302	근저 당면	면적변경
		간척물 (3호)	RC조 (3호)	74㎡		조원호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파산자 도아 건설산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기입류	면적변경
		간척물 (4호)	RC조 (4호)	76.2㎡		조원호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파산자 도아 건설산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기입류	면적변경
		간척물 (5호)	RC조 (5호)	76.2㎡		조원호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파산자 도아 건설산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기입류	면적변경
		간척물 (6호)	RC조 (6호)	46.3㎡		조원호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파산자 도아 건설산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기입류	면적변경
		간척물 (7호)	RC조 (7호)	0.5㎡		조원호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파산자 도아 건설산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더1	기입류	면적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3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6 목향빌딩 (덕릉로 846)	건축물 (지상)	RC조	119.8㎡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 수락파크빌 507동1202호	정영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7 (상계동)	전세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6 목향빌딩 (덕릉로 846)	건축물 (지상)	RC조	119.8㎡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지상)	RC조	119.8㎡	구조 및 종류	RC조	119.8㎡	실제 이용 상황		이해관계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축물 (지상)	RC조	87.3㎡							건축물 (1층)	RC조	87.3㎡	건축물 (2층)	RC조	112.3㎡	건축물 (3층)	RC조	112.3㎡	건축물 (4층)	RC조	112.3㎡	건축물 (5층)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RC조	112.3㎡	건축물 (지상)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전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전의 권리	
13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6 청호빌딩 (덕릉로 850)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김종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22-1 면목두산아파트 502동 801호						김종태, 송금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22-1 면목두산아파트 502동 801호			2-5층 면적단정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13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3 (덕릉로 866)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김종태, 송금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3						김종태, 송금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3			면적단정 (확대보상)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06.7/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건축물 (지층)	RC조	110.6/2㎡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물간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물간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물간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13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	건축물	세면조	86.4㎡	배창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	건축물	세면조	87.2㎡	배창호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9 청학주공아파트 308동 405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영진하이츠빌라 302호	수용권 이동의 권리			
		건축물	세면조	10.9㎡			건축물	세면조	17.4㎡							
		건축물	관별조 등	8.6㎡			건축물	관별조 등	8.6㎡							
13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1)	건축물	세면조	29.9㎡	이만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1)	건축물	세면조	3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609동 904호 (고잔동,내오빌주공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0 우성아파트 (08층 1001호 (덕릉로 875-3))	면적변경			
		부속 건축물	블록조 등	1.5㎡			건축물	블록조 등	1.5㎡							
		건축물	세면조	4.5㎡			건축물	세면조	59.8㎡							
13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2)	건축물	세면조	9.0㎡	노연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2)	건축물	세면조	50.1㎡			서울시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파트 517-1303	면적변경			
139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7)	건축물	세면조	27.5㎡	전옥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7)	건축물	세면조	32.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141번길8 (태평동) 인천광역시 서구 간사로 404, 205동2602호 (가좌동,가좌한신휴플러스)	면적변경			
		건축물	세면조	18.5㎡			건축물	세면조	18.5㎡							
		건축물	세면조	42.5㎡			건축물	세면조	47㎡							
14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1)	건축물	세면조	0.7㎡	이학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1)	건축물	세면조	0.7㎡			이학수 (가좌동,가좌한신휴플러스)	면적변경			
14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21)	건축물	세면조 (화장실)	1.7㎡	유성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 (덕릉로 875-21)	건축물	세면조 (화장실)	1.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2(31/6) 유성덕	담장 가류 추가			
14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 (덕릉로 864)	나무	오토 나무 등	24주	심재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7-1 (덕릉로 864)	플라타너 스	동마리/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64 심재우	수목 추가			
		계근대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동마리/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향판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향판 (가건물)								
14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덕릉로 868)	건축물	세면조	62.8㎡	김지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덕릉로 868)	건축물	세면조	116.9㎡	김지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3-2 (덕릉로 868) (상계동, 현대2차아파트 201-902)	면적변경			
		건축물	세면조	15.3㎡			건축물	세면조	66.3㎡							
		건축물	세면조	4.8㎡			건축물	세면조	4.8㎡							
14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4 (덕릉로 874)	건축물	세면조	15.3㎡	조미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4 (덕릉로 874)	건축물	세면조	66.3㎡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74	면적변경			
14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 (덕릉로 141/2)	건축물	세면조	4.8㎡	고서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0905001호	건축물	세면조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증계로 233, 정구3차아파트 103-303	면적변경 소유주 대문추가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실제 이용 상황	수량 (㎡)	구조 및 종류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4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 (덕릉로 879)	건축물 (1층)					77.0㎡	RC조	건축물 (1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2 3층(331)	김충순					변경없음
		건축물 (주차장)					13.8㎡	RC조	건축물 (주차장)							
		건축물 (2층)					77.4㎡	RC조	건축물 (2층)							
		건축물 (3층)					77.4㎡	RC조	건축물 (3층)							
		건축물 (4층)					77.4㎡	RC조	건축물 (4층)							
147	111-583 (분양지) 2구역11블럭14호트 (분양지)	건축물 (옥탑)					12.3㎡	RC조	건축물 (옥탑)	서울 노원구 상계동 359-1 주공아파트 511-404	장재복 (미개약자)				변경없음	
		부속 건축물 (담장)					1식	블럭조	부속 건축물 (담장)							
		분양지					22.7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22.7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1.0	분양지	분양지							
148	111-583 (분양지) 2구역11블럭14호트 (분양지)	분양지					22.7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7-383	임병주				변경없음	
		분양지					22.7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1.0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23.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0.21	분양지	분양지							
149	상계동 5-12(분28) 6구역5블럭15호트 (분양지)	분양지					0.17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8 우암아파트 402-1402	인해람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0	62-7-37-21 (분양지) 6구역19블럭1호트 (분양지)	분양지					23.2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로 43길 21(상계동)	백재원				변경없음	
		분양지					23.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0.21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0.17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151	상계동 5-12(분27) 6구역5블럭15호트 (분양지)	분양지					0.21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5-12(316)	김중균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17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152	상계동 5-12(분28) 6구역5블럭15호트 (분양지)	분양지					0.17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로 108 우암아파트 402-1402	홍학수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3	상계동 5-12(분23) 6구역5블럭15호트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총복 영동군 배곡면 강진리 883	홍학수				소유주 개명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4	상계동 5-12(분23) 6구역5블럭15호트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5-12(316)	임순임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5	상계동 5-12(분28) 6구역5블럭12호트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5-12(316)	유상덕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6	상계동 5-12(분24) 6구역5블럭11호트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5-12(314)	이연주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157	상계동 5-12(분37) 6구역5블럭11호트 (분양지)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9-5	전욱미 (미개약자)				변경없음	
		분양지					0.23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38.38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66.52	분양지	분양지							
		분양지					82.57	분양지	분양지							

252

연번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종류	구 조 및 종 류	실적 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해 관계 인	주 소	
172	상계동 5-24 (분 520) 6구역블락4호트	분양지	분양지	0.4	김문식	김도연	김홍식	임은아	박정미	면적변경
173	상계동 5-24 (분 520) 6구역블락4호트	분양지	분양지	0.4	홍순주	안기학	오민호	정다운	조남욱	면적변경 (확대·노상)
174	상계동 5-24(분21) 6구역블락4호트	분양지	분양지	0.4	황봉래	정영실	이동욱	이동욱	이동욱	면적변경 (확대·노상)
175	상계동 5-24(분22) 6구역블락4호트	분양지	분양지	0.4	정영실	정영실	이동욱	이동욱	이동욱	면적변경 (확대·노상)
176	상계동 5-6 (분 520)(분 17) 6구역블락4호트	분양지	분양지	0.9	김문식	김도연	김홍식	임은아	박정미	면적변경 (확대·노상)

위 치 도

■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 은평구고시 제2017-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5(2011. 5.12.)호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고시로 의료시설의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21(2011. 7.28.)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8(2013.12.12.)호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고시로 의료시설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4(2014. 6. 5.)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78(2014.11.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료시설:가톨릭대학교 새병원(은평)】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4(2016.4.7)호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2(2016.9.8)호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15(2017.2.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은평구 진관동 93-6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저층 부 일부구간 건축물 내부 구조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3-6호 일대 (변경없음)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의료①용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 2) 명 칭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축공사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대표 염수정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명동2가)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12.01~2018.12.31. (변경없음)

마. 사업규모 (변경없음)

사업의 면 적	시 설 계 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용 도	
21,612.6㎡	11,186.05㎡ (51.76%)	179,403.62㎡ (388.69%)	7/17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3-6 일대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의료①용지)	21,612.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치공사	-	-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매매계약 (2013.12.31.)

사.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의제.

- 주요 건축계획 변경내용 : 지하1층~지상5층 일부구간 건축물 내부 구조변경(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고시 제2017-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로 결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4호(2014. 4.3)로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74호(2014. 4.24.)로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6-169호(2016. 12. 29)로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3)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 2) 명 칭 :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 20,843.60㎡

2) 규 모 : 연면적 증 296.33㎡(0.55%)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축	A블럭	4,129.47	4,129.47	47,606.26	47,902.59	지상17	지상17	복합시설동(판매/업무/숙박)
신축	B블럭	2,181.64	2,181.64	6,032.72	6,032.72	지상5	지상5	공공업무시설/주차장
신축	C블럭	150.55	150.55	300.11	300.11	지상2	지상2	자전거 서비스센터
합계		6,461.66	6,461.66	53,939.09	54,235.4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1) 당초

- 성 명 : (주)마포애경타운 대표이사 최영보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 변경

- 성 명 : (주)마포애경타운 대표이사 김동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1) 인가일로부터 ~ 2018. 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5호(2014.4.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5-54호(2015.4.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5-101호(2015.7.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7-909호(2017.6.15)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향동 149-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공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변경) : 1,100㎡ 중 570㎡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 명 : 구로구청장
 ㄴ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 : 따로 붙임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27,550	27,020						
1	변경 없음	항 동 149-2	대	520	520	국유지(캠코)	국유지				국유지
2	변경 없음	항 동 149-3	대	8,792	8,792	국유지(캠코)	국유지				국유지
3	변경 없음	항 동 149-1	공원	11,932	11,9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4	변경 없음	항동 산39-4	임야	3,003	3,0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5	변경 없음	항 동 146-1	대	2,203	2,2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6	변경	항 동 149-7	대	1,100	570	김호○(28/56) 현진○(14/56) 김휘○(7/56) 김용○(7/5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물건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1,920.79					
1	변경없음	향동 산39-4	건물	백회 블록조	1,855	김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기매수]
2	변경	향동 149-7	건물	연와조 1층	65.79	김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등

◆ 금천구고시 제2017-58호

가산동 148-9,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및 고시

우리 구 아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적정(조건)함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코자 하며,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보와 구보에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6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 가. 대지위치 : 금천구 가산동 148-9, 10호
 나. 사업주체 : 박래용, 정성훈, 고건식, 이선재, 서귀순, (주)삼락종합건설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건축규모 : 2동, 지상6층, 연면적 1,519.69㎡
 마.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32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건 폐 율 : 56.80%, 용 적 률 : 197.97%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면 허 세 : 67,500원
 자.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 신고, 급수공사신청

차. 각종 공과금

- 면 허 세 : 67,500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6,936,470원 (개략 금액 - 준공 전 납부 확인)

카. 준수사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며 사업계획승인처리 후 60일 이내 우리 구 교통행정과(☎2627-1687)에 세부사항 등 별도 협의 처리

◆ 서초구고시 제2017-5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1995.6.29.)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변경 결정된 서초동1446-1번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2(서초동144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명칭 : 서울남부터미널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엔티산업(주) 대표이사 지우중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2(서초동1446-1)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19,121.51㎡ / 3,899.54㎡ / 5,531.12㎡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규모 / 주차대수 : 지하1층, 지상2층 / 20.39%, 28.40%
- 주요변경사항

위 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용 도	면 적(㎡)	면 적(㎡)	
2층	주시설(사무소)	1,321.96	347.06	-974.90㎡
	부대시설(기숙사)	879.82	879.82	변경없음
	편익시설(일반음식점)	221.62	221.62	변경없음
	편익시설(근생시설)	0	+974.90	+974.90㎡
	계	2423.40	2423.40	

마.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년 10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 교통행정과(☎2155-7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서울남부터미널) 변경인가 내역

(단위:m²)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대 지 면 적	19,121.51	19,121.51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5,531.12	5,531.12	변경없음	
주시설	14,559.07	13,584.17	(-) 974.90m ²	
편익시설 (부대시설 포함)	2,244.05	3,218.95	(+) 974.90m ²	

◆ **강동구고시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95호(1990.10.19.)로 결정되고, 강동구고시 제2016-43호(2016. 4. 7.)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강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 일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2특별계획구역』 민영주택사업과 지하철 출입구 이설 등으로 발생한 시공오차 개선 및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 도 (5호선)	도시철도 (강동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48 일대	27	165	9,914.72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변경	철 도 (5호선)	도시철도 (강동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48 일대	27	165	9,902.3		감) 12.42

※ 구분지상권 설정은 시설물관리자인 도시철도공사 의견에 따라 도시철도 구조물 (출입구 캐노피 마감선 포함)로부터 상, 하, 좌, 우 0.50m(보호폭) 추가 확보하여 설정토록 함.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철 도 (5호선)	• 철도 면적변경 9,914.72㎡ → 9,902.3㎡ (감 12.42㎡)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2특별계획구역』 내 민영 주택사업(강동팰리스 신축공사)과 지하철 출입구 이설등으로 발생한 시공오차와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 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철 도 (5호선)	강동구 천호동 448 일대	길이 (m)	24.933	-0.633	24.3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 입체적 결정 범위 - 면적: 162.2㎡ (평면투영면적) - 높이: EL 110.2 ~ EL 134.1
			폭 (m)	7.403 ~ 15.073	-0.903~-0.473	6.5~14.6		
			높이 (m)	지상10.56m ~ 지하12.759m	지하 -0.541	지상10.56m ~ 지하13.3m		
			층	지하2층 ~ 캐노피		지하2층 ~ 캐노피		

※ 상기 층수는 C2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 기준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철 도 (5호선)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C2특별 계획구역 내 강동정거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2특별계획구역』 내 민영 주택사업(강동팰리스 신축공사)과 지하철 출입구 이설등으로 발생한 시공오차와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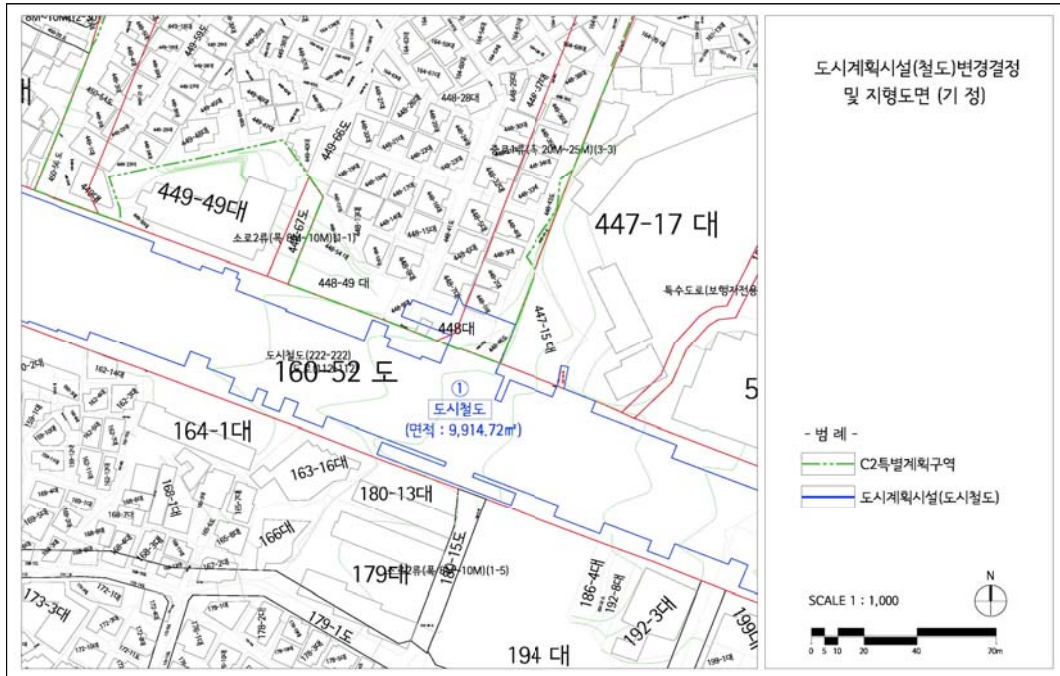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22)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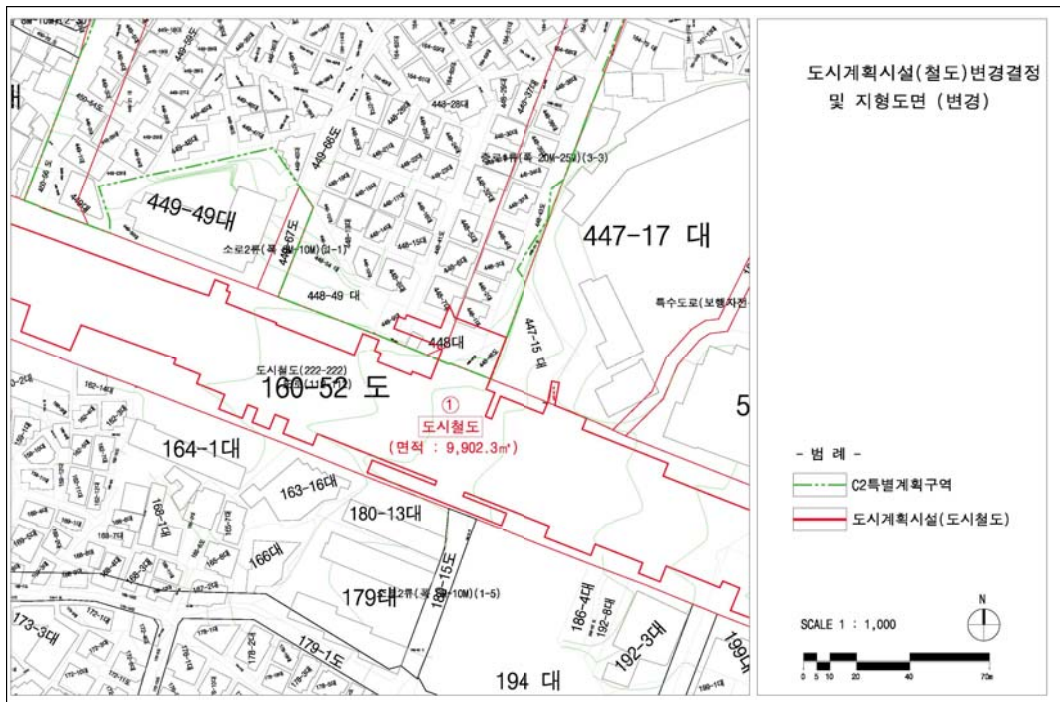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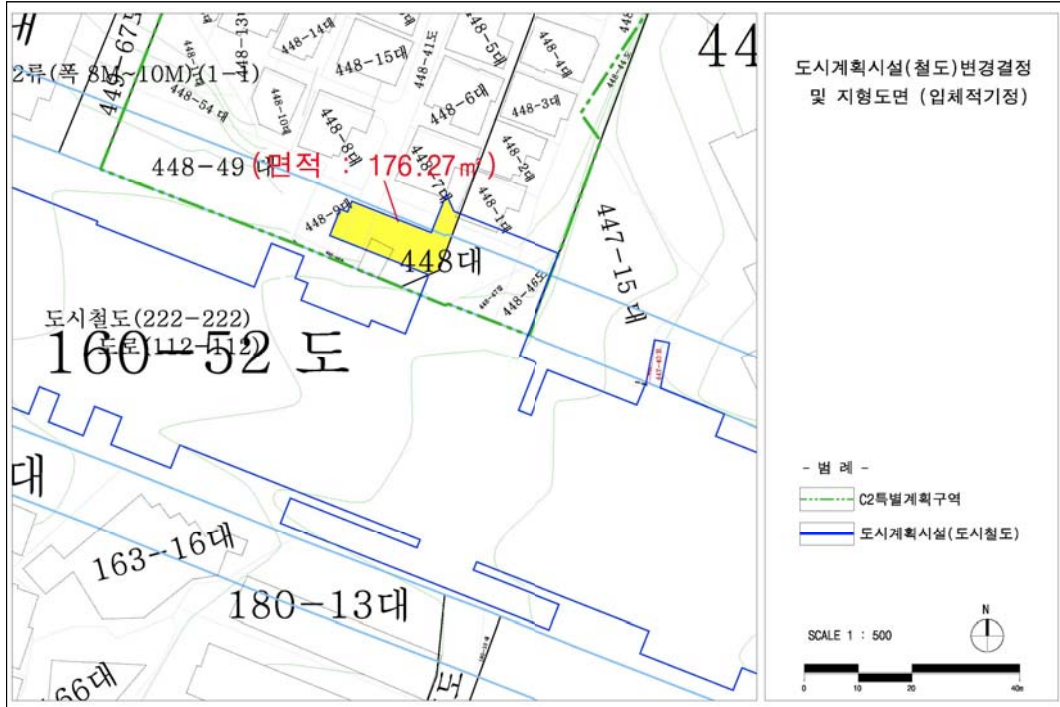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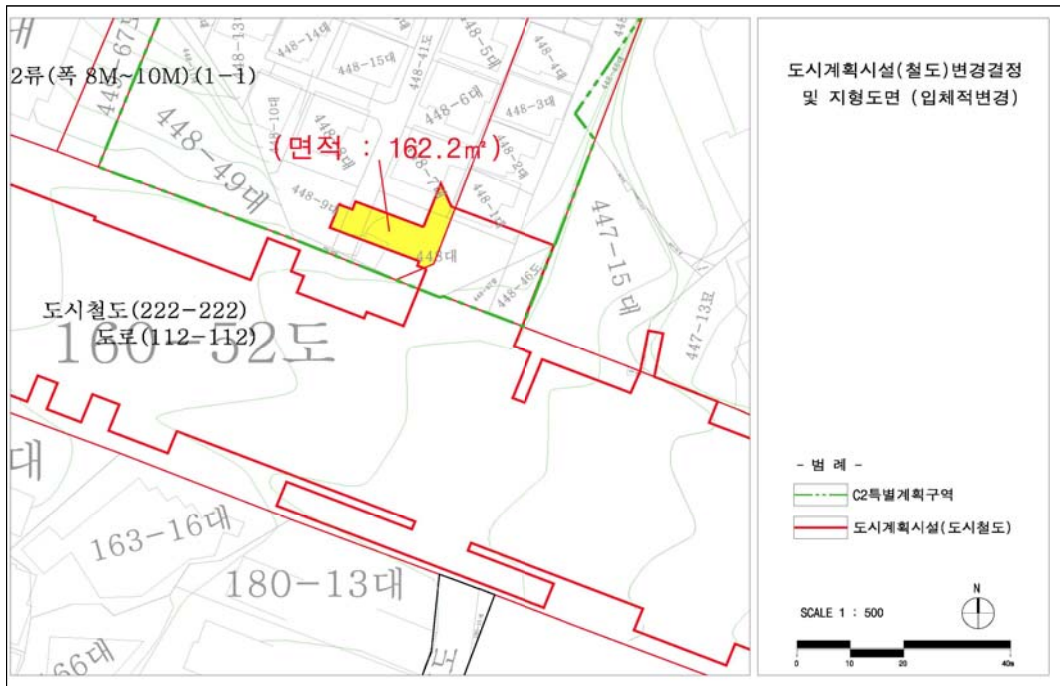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도(변경)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7-50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32호(1977.12.06.)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453호(2013.12.26.)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112호(2014.12.26.)로 변경 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9호(2015.02.05.)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도시설물(출입구, 환기구, 연결통로 등)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중 구 청 장

1.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사업의 명칭 : 을지로입구역(지하철2호선) 철도시설물(출입구, 환기구 등) 이설공사

다. 사업규모

- 시행면적 : 763.0㎡(사유지 : 300㎡, 국공유지 : 463㎡)
- 입체적 시설 : 447.0㎡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환기구 등)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15 KEB하나은행 본점신축

마. 사업기간 : 2015.09.01.~2017.06.30

◆ 중구공고 제2017-50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1호(2007.5.25.)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호(2017.01.04.)로 다동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24호(2017.04.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다동공원(소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중 구 청 장

1.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다동공원(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 3,936.2㎡ 중 427.3㎡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15 KEB하나은행 본점신축

마. 사업기간 : 2017.04.06~2017.06.30

◆ 성북구공고 제2017-846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주차장)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성북구고시 제2005-14호(2005.03.03.)로 결정된 서울시 정릉동 266-428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광장)폐지 결정(안) 및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83-40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성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신문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성북구청 마을재생기획단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64)

3.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폐지(안)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광장	교통광장	정릉동 266-428일대	1,313	감)1,313	-	-	성고 제2005-14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장위동 283-40호 일대	-	증)300	300	-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17-8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6-2번지 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21), 어르신장애인도과(☎2620-3365)
3.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조서
가) 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사회복지시설	1286-2	1,421.2	감 1,421.2	-	1997.03.26. (서고시 제76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변경 사유서

- 당초 사회복지시설 부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17-6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동작구고시 제2017-38호(2017.6.1)로 실시계획인가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당 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 등 2필지
 - 변 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7 등 2필지
- 면 적
 - 당 초 : 18,256㎡
 - 변 경 : 18,256㎡
- 내 용
 - 당 초 : 토지보상 18,256㎡
 - 변 경 : 토지보상 18,25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입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동작동 산28-1	계	임야	19,464	19,464	18,256	18,256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 ***호(명일동)	천귀*	13967/21058								
				16,208	1,208	0	15,000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110동1602호 (문촌동, 둔초푸르지오아파트)	안제*	7091/21058							
										15,000	15,000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 ***호(명일동)	천귀*	13967/21058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110동1602호 (문촌동, 둔초푸르지오아파트)	안제*	7091/21058			
2	동작동 산16-1	임야	3,256	3,256	3,256	3,256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 가길 23 ***동***호(문동래미안트윈파크)	고현*										

◆ 관악구공고 제2017-9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360호(2014.10.23)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관악산 신원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관악구고시 제2017-27호(2017.04.24)로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의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 신원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 2) 변경내용 :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붙임참조)
- 2) 면 적 : 2,7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합계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2,700					
당초	1	신림동 산159-5	임야	29,855	1,20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당초	2	신림동 산159-34	임야	33,481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변경	1	신림동 산159-43	임야	1,200	1,20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변경	2	신림동 산159-44	임야	750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변경	2	신림동 산159-45	임야	750	750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서초구공고 제2017-8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737-3일원 ~ 반포동118-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면	도면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간선 하수도	서초동 1737-3	반포동 118-14	서리풀 공원	1.28	9,646.44	중복결정 - 공공청사(1,188.40㎡) - 공 원(4,176.50㎡) - 도 로(469.40㎡) - 철 도(245.80㎡)

■ 결정사유

- 저지대 침수 예방 등 수해방지 능력을 향상과 공원 등의 하부에 배수터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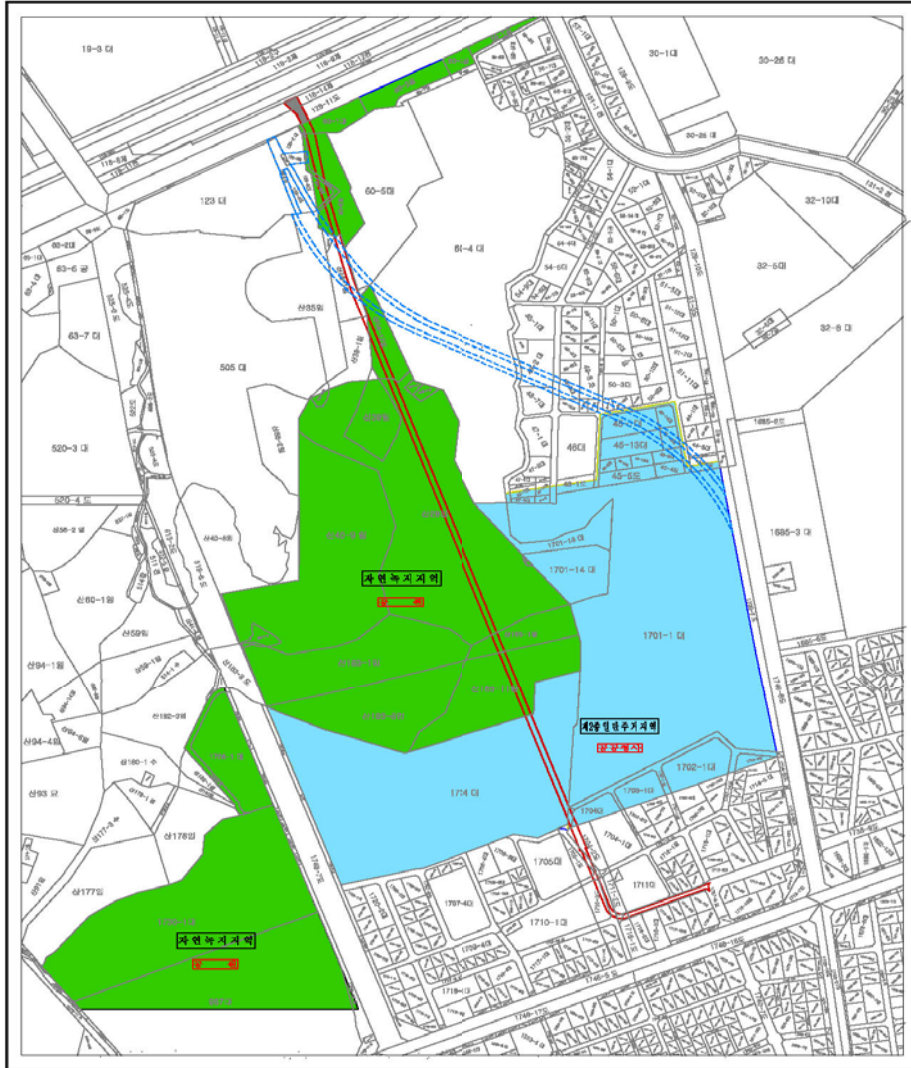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

4.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도



- 범 례
- 도시계획시설(간선하수도)
 -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공형사)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철도)



[축 척]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기원	종원	도면 주요경과거리 (km)	연장	면 적 (㎡)	비 고
신설		간선 하수도	서초동 1737-3	반포동 118-14	서리릉 경향1.26		9,646.44	증액결정 - 공공형사(1,168.40㎡) - 공 원 (4,176.50㎡) - 도 로 (408.40㎡) - 철 도 (245.80㎡)

◆ 서초구공고 제2017-8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338-7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서초동 1338-7	1,387.9	감) 1,387.9	-	서고 제117호 (1978.3.23)	

※ 서초동 1339-9번지 건축허가 시 서초동 1338-7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효력 발생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 작은도서관 404.53㎡(지상2층, 공용면적 포함), 주차장 1면(지하1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1,387.9㎡	- 서초동 1339-9번지 신축시 해당 필지내 부설주차장을 확보함 - 으로써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시설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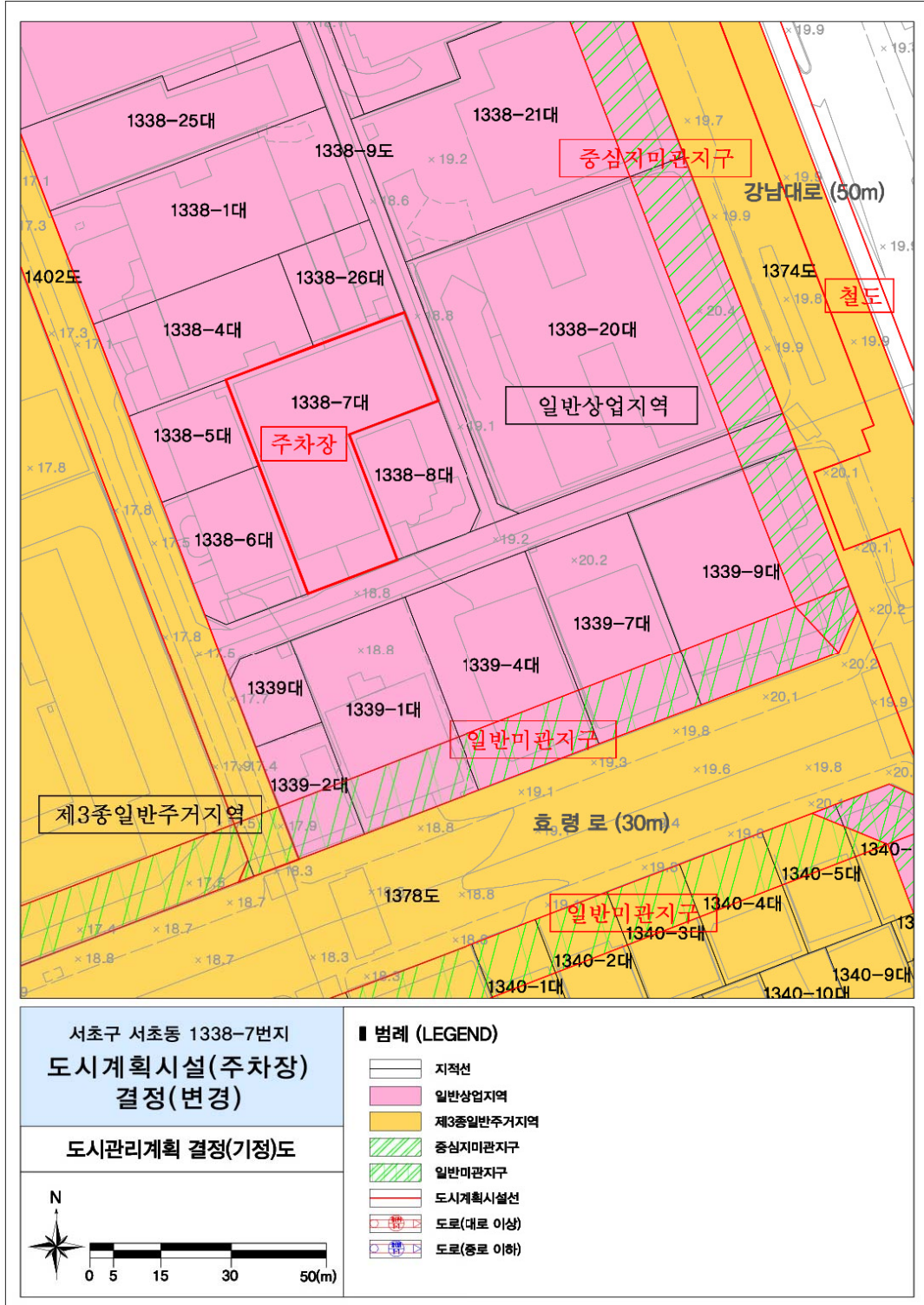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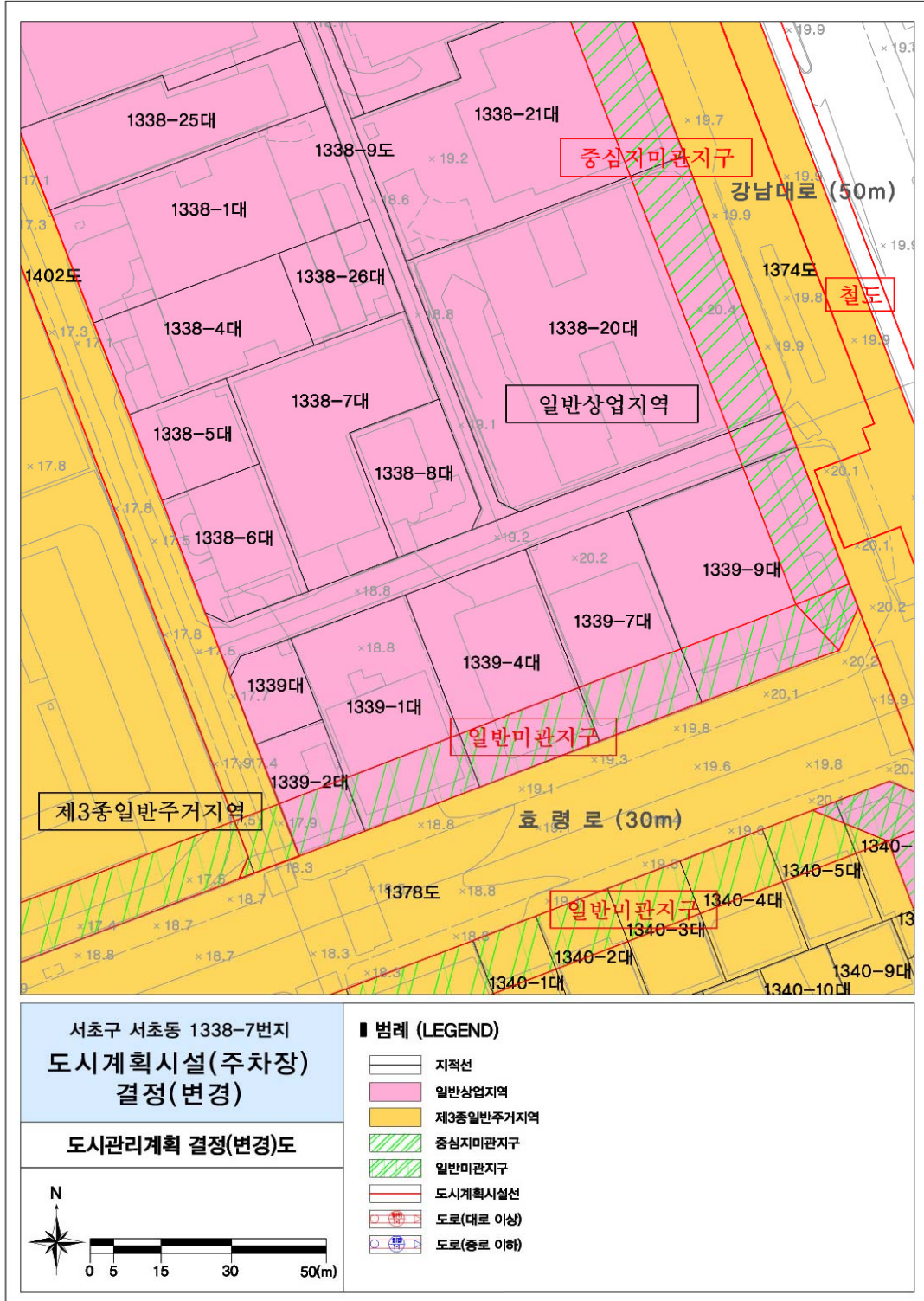
4.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번지	노량대교	선박 2척	노량대교 정밀점검	2017.06.28.~ 2017.07.09.	2017. 6.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0척 (기선 10척, 부선 20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7.01. ~ 2017.07.31.	2017.6.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8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시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아라갑문 ~ 망원 한강공원	선박 4척	한강함상공원 조성 관련 함정예인	2017.06.27.~ 2017.07.31.	2017. 6.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4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조양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 가양대교 임시물량장)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포천발전소 중량물 해상운송	2017.07.05. ~ 2017.07.10.	2017. 6.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세방(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3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 서울북합발전소)	선박 4척 (기선 3척 부선 1척)	중량물 운송	2017.07.05. ~ 2017.12.31.	2017. 06.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광장티 엔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강동구 고덕동 73-2번지상 한강	선박 8척 (기선 1척, 부선 7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7.01. ~ 2017.12.31.	2017. 06.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광장티 엔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강서구 개화동 657번지상 한강	선박 14척 (기선 2척, 부선12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7.01. ~ 2017.12.31.	2017. 06.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동력선 3척(66㎡) - 파워보트 2척 - 수상오토바이 1척	수상레저사업	2017.7.1. ~ 2017.10.31.	2017. 6.30.

사업소공고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동대문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 서울 (동대문) 2017-0001호 (2017.06.26.)	금성방재기술 주식회사 (801-88-00279)	황 선 우 (1956.01.05.)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42 동보빌딩 2층 (신설동)	02-2231-0119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2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225,(도화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54번지~양천구 목동 518번지
 - 면 적 : 영구 921㎡, 임시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수관로 설치
 - 내 역 :
 - 도수관로 설치 419m(직경 1,800mm, 압입추진) 및 도달구 1개소
5. 공사기간 : <당초>2016.02.17.~2017.06.05.
 <변경>2016.02.17.~2019.02.2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2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81-11번지
- 면 적 : 15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설치 등
 - 내 역 :
 - 배모양 조형물 및 돛대형 배너폴(총 1개소) 설치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2022.6.25.(허가일로부터 9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2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케이티 구로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길 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22번지선
 - 면 적 : 영구 185㎡, 일시 3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관로 이설(굴착)
 - 내 역 :
 - 통신관로 L=344.6m
 - 맨홀 4개소
5. 점용기간 : 허가일~2017.7.14.(허가일로부터 2주간 일시허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